

國民法意識調查研究(Ⅲ)

# '94 國民法意識調查研究

研究責任者 朴相哲 (首席研究員)

共同研究者 崔星根 (先任研究員)  
裴承希 (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 發 刊 辭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법질서의 확립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 제정된다(Hominum causa jus constitutum est)'라는 법언처럼 법은 지킬수록 편리함과 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현실은 기초적인 법질서마저 그 유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법은 국가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의 지배'는 법치국가가 지니는 강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합니다. 수많은 법규범들이 일정한 입법 및 집행과정을 거쳐 제정 내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법제도들이 정당한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법의식의 반영으로서 법제도와 법질서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동시에 그 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에 따라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의 향배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1991년에 국민법의식과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진단하고자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국민의 법생활·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법생활은 상당히 선진화되고 보다 철저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1국민법의식조사 이후 불과 3년만에 '94국민법의식조사를 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

가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91조사 이후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와 '91조사에서 한국인의 법의식의 특징으로 나타난 국민법의식의 전반에 걸친 재검증을 통하여 향후 당분간의 국민법의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1994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91조사와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의 법의식의 주요 특징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조사의 영역은 달리하고 있지만 외국의 법의식조사와의 비교를 시도한 것은 우리의 법의식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인의 법의식 및 법률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하고 법의식 제고 및 법치주의 확립방안을 찾게 하며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원리가 정착하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참다운 법치사회를 구현하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담당자와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준 특수법제연구실의 관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4년 10월 27일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張明根

# 目 次

I. 序論 .....	13
1. 法意識과 法治主義 .....	13
1) 法意識調査研究의 目的 .....	13
2) 法意識과 法治主義의 關係 .....	16
2. '94國民法意識調査의 内容 · 方法 · 過程 .....	20
1) 調査의 内容 .....	20
2) 調査의 方法 및 過程 .....	21
3) 調査의 限界 .....	28
3. 國民法意識調査의 擴張方向 .....	31
1) 特定法令에 대한 國民의 反應調查 .....	31
2) 法關係者의 法意識 및 立法意見調查 .....	31
3) 주요 法令 制定시 非公式的인 次元에서의 事前輿論調查 .....	32
II. 韓國人の 法意識과 그 特徵 .....	34
1. '91國民法意識調査와의 比較 .....	34
1) 價値觀 變化의 比較 .....	35
2) 國民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의 比較 .....	37
3) 國民의 法生活 比較 .....	38
4)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의 比較 .....	51
5)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의 比較 .....	53

2. 外國의 法意識調査와의 比較 .....	59
3. 韓國人 法意識의 特徵 .....	63
<b>III. 社會變動과 價值觀의 變化 .....</b>	<b>66</b>
<b>IV. 國民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b>	<b>73</b>
1. 法에 대한 印象 .....	74
2. 法規範力의 座標와 法의 存在價值에 대한 判斷 .....	77
3.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法의 選擇 .....	79
4. 脫法行爲者에 대한 評價 .....	81
<b>V. 國民의 法生活 .....</b>	<b>83</b>
1. 法生活과 法的 經驗 .....	84
1) 法認知 經路 .....	85
2) 法認知 欲求 .....	88
3) 法教育 .....	94
4) 法的 經驗 .....	96
5) 法知識 .....	102
2. 遵法精神과 權利意識 .....	105
1) 遵法精神 .....	107
2) 告發精神 .....	112
3) 權利意識 .....	118
3. 法의 使用能力 및 紛爭의 解決方法 .....	123
1) 法의 使用能力 .....	124
2) 紛爭의 解決方法 .....	125

<b>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b>	<b>128</b>
1.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	129
2. 司法權의 獨立 .....	132
<b>VII.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 .....</b>	<b>134</b>
1. 現實에 맞지 않는 法 .....	135
2. 政治改革과 政治關係法 .....	140
3. 勞使關係法 違反의 責任所在 .....	143
4. 環境汚染의 規制方向 .....	145
<b>VIII. 結論 : 綜合的 評價 .....</b>	<b>149</b>

## 【 부 록 】

I. 조사의 개요 .....	155
II. 응답자의 특성 .....	160
III. 기본빈도표 .....	165
IV. 교차집계표 .....	179
V. 설문지 .....	237

## 표 목 차

【 표 1 】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 .....	22
【 표 2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7
【 표 3 】 설문조사 기간 이전 및 기간 중의 주요 사건 .....	29
【 표 4 】 가치관 변화의 비교 .....	36
【 표 5 】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비교 .....	37
【 표 6 】 법생활과 법적 경험의 비교 .....	39
【 표 7 】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비교 .....	43
【 표 8 】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비교 .....	50
【 표 9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비교 .....	51
【 표 10 】 사법권의 독립 비교 .....	53
【 표 11 】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비교 .....	54
【 표 12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연령·학력·직업· 지역규모별 반응 .....	71
【 표 13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7. 직장질서 .....	72
【 표 14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1. 법에 대한 인상 .....	75
【 표 15 】 법에 대한 연령·학력·소득·성향별 인상 .....	76
【 표 16 】 법규범력의 좌표에 대한 학력·직업·소득별 반응 .....	78
【 표 17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4. 분쟁해결방법 으로서의 법의 선택 .....	80
【 표 18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5.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82
【 표 19 】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범인지 경로 .....	87
【 표 20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1. 은행저축시 통장약관 .....	90

【 표 21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18.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보는가 .....	91
【 표 22 】 법률용어 난해도에 대한 연령·학력·직업·소득·종교·성향·지역규모별 반응 .....	92
【 표 23 】 소송에 대한 성·연령·학력·성향별 반응 .....	99
【 표 24 】 연령·학력·직업·소득·지역규모별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행태 .....	100
【 표 25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2.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방법 .....	101
【 표 26 】 연령·학력·직업·소득·지역규모별 법지식 .....	103
【 표 27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40. 누가 더 많은 상속분을 갖는가 .....	104
【 표 28 】 기초질서위반 단속에 대한 연령·학력·성향별 반응 .....	114
【 표 29 】 범죄에 대한 성·연령·학력·소득·성향별 반응 .....	116
【 표 30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3. 부당한 법이 있다면 .....	120
【 표 31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4. 불량품을 샀을 경우 .....	121
【 표 32 】 불량품을 샀을 경우 연령·학력·소득·성향별 반응 .....	121
【 표 33 】 입법과정에 대한 연령·학력·직업별 일체감 .....	131
【 표 34 】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연령·학력·소득·종교·성향별 반응 .....	137
【 표 35 】 정치관계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연령·학력·소득·종교·성향·지역규모별 반응 .....	142
【 표 36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대한 연령·학력·소득·성향·지역규모별 반응 .....	147

## 그 림 목 차

【 그림 1 】 가족구조의 변화 .....	68
【 그림 2 】 직장질서 .....	69
【 그림 3 】 여성의 지위 .....	69
【 그림 4 】 법에 대한 인상 .....	74
【 그림 5 】 법규범력의 좌표 .....	77
【 그림 6 】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77
【 그림 7 】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79
【 그림 8 】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81
【 그림 9 】 범인자 경로 .....	85
【 그림 10 】 범인자 욕구 .....	88
【 그림 11 】 법교육 .....	94
【 그림 12 】 법적 경험 .....	96
【 그림 13 】 법지식 .....	102
【 그림 14 】 준법질서 .....	107
【 그림 15 】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준수 .....	110
【 그림 16 】 분야별 법준수도 .....	111
【 그림 17 】 고발정신 .....	112
【 그림 18 】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	115
【 그림 19 】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 .....	118
【 그림 20 】 권리의식 .....	119
【 그림 21 】 법의 사용능력 .....	124
【 그림 22 】 분쟁의 해결방법 .....	125
【 그림 23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129
【 그림 24 】 사법권의 독립 .....	132

【 그림 25 】 현실에 맞지 않는 법 .....	135
【 그림 26 】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	140
【 그림 27 】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	143
【 그림 28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145



# I. 序 論

## 1. 法意識과 法治主義

### 1) 法意識調査研究의 目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야말로 참다운 법치사회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法의 支配’는 법치국가가 지니는 강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다. 법은 그 사회의 생활 조건과 가치기준의 반영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현실을 질서지우는 규범력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사실적인 것에 규범력을 인정하려는 풍토가 만연될 때<sup>1)</sup> 법치주의 원리의 정착은 요원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사회의 작동장치로서의 수많은 법제도들은 일정한 입법과 정을 거쳐 제정되지만 그것의 정당한 사회적 가치의 유지는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인식과 노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법치주의라는 원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양축 외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法治主義’라는 마차가 달리기 위하여는 ‘合法性’과 ‘正當性’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잘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法意識’이라는 마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법의식은 결국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동시에 그 힘인 것이다.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

---

1) 이러한 현상을 규범적·법치국가적 법률이 정치적·결단주의적 법률에 의해 구축 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C.Schmitt, *Verfassungslehre*; Belin, 1928, S.146f), 이에 대하여 ‘법의 지배’에는 정치적인 법(*political law*)의 지배와 실질적인 법(*material law*)의 지배라는 이중적인 개념이 대체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F.Neumann, *The Rule of Law*; Berg Publishers Ltd., 1986, p.45).

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의 정착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국민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 비롯된다. 만약 법의식의 현주소와 변화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다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입법 및 법집행 방향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法意識이란 法制度와는 달리 급변하지 않으며 역사와 사회변동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특성을 갖는다. 법제도의 근대화 내지 선진화는 그 유도가 가능하나 법의식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법제도와 법의식 간의 괴리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법의식조사연구의 제일차적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법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불가결하다. 가정 및 학교 교육은 물론 대중언론매체·국가기관의 입법 및 법집행·법선언 등도 각각 법의식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도 결국 그 사회의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1國民法意識調査에서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 동안의 평가와 기존조사 결과<sup>2)</sup>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 유교적 문화유산과 전통, 일제식민화과정, 해방과 민족분단, 60년대 이후 근대화과정과 70년·80년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둔 법의식조사로서 法意識의 現在性을 도외

2)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1968, 11); 이태재, “우리나라 법의식에 관한 소고”, 『최해태박사화갑기념논문집』(사회과학 1, 1969. 3);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국제문화재단, 1975. 12);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학교, 1982); 이근식 외 3인,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의식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연구논총』(새마을연구회, 1982); 차용석 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2); 어인의 외 6인, “법의 민주화와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김영철, “농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조』(1973. 5. 6). 기타 문헌은 '91조사 보고서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시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법의식 형성과정은 근대법제의 도입 및 발전과정과 비교할 때 그 속도나 발전방향에 있어서 동일한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의식 조사가 법제도적 측면에서와 같이 固有性과 近代性의 비교에 집착한 나머지 法意識의 社會性 조명에 소홀한 점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94國民法意識調査에 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91조사 이후 3년이라는 너무 짧은 경과기간이었다. 그러나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법의식의 현재성과 사회성의 중요함을 감안할 경우 '94본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하였다.

첫째,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경과이지만 '文民政府'라는 새로운 정치체제는 일반국민에게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적 인식체계에 많은 전환점을 주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 경우 일반국민의 가치관과 법의식에도 적지 않은 동요와 변화가 일게 된다. 특히 국가기관(입법 및 법집행기관)과 국민간의 혼연일체는 법치사회 실현에 그 요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은 필수적이다. 정치체제의 전환기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여부는 국정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80년대 후반 권위주의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일련의 민주화과정이 유교적 전통과 일제식민화과정 그리고 과행적이었던 현정사의 경험 등을 토대로 형성된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91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다. '91조사에서의 한국인의 법의식은 과거와는 달리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권리의식이 확산·신장되고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높아진 권리의식은 국민법의식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시대성의 반영과 한국인의 법의식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사회변혁은 특정한 계기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제도적 착근은 구조적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순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1조사 중 높아진 권리의식은 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권리주장에 국한되지 않고 누적되어 왔던

피해의식과 법에 대한 협오감의 반영으로 이해관계가 애매모호하고 비타협적인 정서적 차원의 권리주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법의식 중 권리의식 부문이 한층 높아졌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한국인의 법의식적 특징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91조사에서 나타난 법의식 변화의 전반에 걸친 재검증을 통하여 향후 당분간의 국민법의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상의 현실적인 동기를 차지하더라도 어느 사회나 그 시기의 가치관은 법의식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포착하여 우리 사회의 국민법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의 법감정 및 법생활과 현행 법제도와의 괴리정도에 대한 측정은 법의식 및 법률문화 이론의 정립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하고 법의식 제고와 법치주의 확립방안을 찾게 하며 나아가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정책 수립방향의 큰 줄기를 잡아줄 것이다.

## 2) 法意識과 法治主義의 關係

法意識(legal consciousness, Rechtsbewußtsein, conscience juridique)에 관한 개념은 용어 자체가 지니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개념인 法感情(legal feeling, Rechtsgefühl), 法文化(legal culture, Rechtskultur)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는 입장과<sup>3)</sup> 그렇

3)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의식 개념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cognitive) · 평가적(evaluative) · 감정적(emotional)인 심리상황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 1981), 355면 ; 최석, “한국인의 권리 및 법의식”, 『성대논문집』 제17집(성균관대, 1972), 120면 ; 이수성,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학』 제25권 2 · 3호(서울대 법학연구소, 1984), 68면 등】 , 법적 인식 · 법적 가치판단 내지 평가 · 법감정 등을 총칭한다.

여기에서 법적 인식이란 법규범 · 법제도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행위결정의 좌표로서 인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법적 가치판단은 법규범 · 법제도에 대하여 내리는 일정한 가치판단과 그 기준을 말하며, 법감정은 법에 대

지 않은 입장<sup>4)</sup>이 나누어져 있어서 개념정의에 있어서 정론적인 입장은 없

한 호감 내지 협오감 등과 같은 비합리적 또는 비논리적인 성격을 지닌 감정을 의미한다 【양승두, 앞의 글, 356면; 최식, 앞의 글, 121면; 그러나 법감정 (Rechtsgefühl)이라는 개념의 정의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념정의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법감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Rehbinder, (최종고 역), “법감정의 사회과학적 진단”, 『법학』, 제22권 4호(서울대법학연구소, 1981); M.Rehbinder, "Fragen an die Nachbarwissenschaften zum sog. Rechtsgefühl", (JZ, 1982) ; K.Obermayer, "Über das Rechtsgefühl", (JZ, 1986) ; M.Bihler, *Rechtsgefühl, System und Wertung*, (1979)등의 문헌 참조】.

영미 법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문화를 ‘법 및 법체계와 관련된 태도·가치관 및 견해’라고 정의하여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R.M.Friedman, *Law and Society*, (1977). p.121 ; 로렌스 M. 프리드만(박남규 역), 『법과 사회』 (법문사, 1990), 125면;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89), 207면】, 이 경우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문화라는 용어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Setsue Miyazawa, "Taking Kawashima Seriously: A Review of Japanese Research on Japanese Legal Consciousness and Disputing Behavior", *Law and Society Review*, Vol.21, No.2,(1987), p.221.】. 법문화 즉, 법의식을 이렇게 정의할 때 언제·왜·어디서 법 또는 법적 과정을 사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법문화이며,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법이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가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독일의 경우도 법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법문화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법과 관련된 가치관, 규범, 제도, 절차규정과 행동양식 등의 총체개념’으로 이해하여 법과 법생활(Rechtsleben)의 모든 현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의식은 법문화의 하나의 요소, 특히 법현상의 심리적 측면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Raiser, *Rechtssoziologie*, (1987), S.316)】.

일본의 경우도 법의식의 개념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六本佳平, “日本人の法意識研究概観”, 「法意識の研究」, 「法社會學」 第35號(有斐閣, 1983), 14~23面; 廣中 교수는 법의식이라고 할 때의 法이 실정법이냐 법체계 전반이냐에 따라 전자를 법의식, 후자를 법관념이라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廣中俊雄, “現代の法意識”, 『法社會學論集』 (東京大學出版會, 1976).】 , 통설적인 견해는 법의식을 법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의 방식 내지 태도로 이해하는 광의설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 4)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문화·법감정 등의 개념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의하면 법의식은 무엇이 법이고, 법이어야 하며, 법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입장과 행동양식을 말하며 【T.Würtenberger, "Schwankungen und Wandlungen im Rechtsbewußtsein der Bevölkerung", *NJW*(1986), S. 2281.】 , 이 경우 법현상 중 인지적 요소가 지배할 경우에는 법의식,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의 뒷전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법감정이라고 하

다. 법이론상 법의식과 법감정·법문화를 구분하는 의의가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고, 또한 법의식의 형성과정의 순간순간마다 법감정과 법문화의 작용이 침투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국민법의식조사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법의식변화의 양상과 이에 따른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의식과 법감정 또는 법문화를 개념상 구분짓는 것은 조사의 목적상 별 의미가 없다. 법의식의 개념을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인 심리상황 즉,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이 무난하다. 이 경우 법의식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의 인지를 기초로 하여 실정법 및 일반적 법상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계층상황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견해의 채색판<sup>5)</sup>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식은 정치적 공개작업에 의하여, 입법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사회제도에 의하여, 대중매체에 의하여, 그리고 집단적 계층문화의 구성원에 의하여 표현됨과 동시에 법적 공동체의 합의의 중심축 내지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광범위하게 공감하는 법의식이 존재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법치주의의 원리<sup>6)</sup>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

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M.Rehbinder, (이영희·최종고 공역), 「법사회학」(법문사, 1984), 172면】. 이 때에 법의식에 있어서는 합리적 정신현상이 우세하고, 법감정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정신현상이 지배적이다.

법감정이 개별적 사태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주관적 반응임에 반하여, 법의식은 인간이 사회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 관념이며 어느 정도의 사고를 경유한 反省的 意識에 붙인 명칭이다 【최종고, 「법과 인간과 종교」(삼영사, 1989년), 288면】. 때때로 법의식은 법지식·법적 가치판단·법정신으로, 법감정은 법적 직관·법적 양심, 법성향 등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법감정과 법의식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언어의 뉘앙스에 있어서 법의식이라고 하면 법적 세계관이 전면에 나타나므로 倫理性과 局面性이 강조되어 직접적 색채가 짙게 나타날 뿐이다. 양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의식의 형성과정에는 순간순간마다 법감정의 작용이 침투하여 들어간다.

5) Von András Sajó, "Rechtsbewußtsein oder Meinungen vom Recht?", *Rechtstheorie* 12 (1981) S.30f.

6) 영국의 다이시(A.Y.Dicey)에 의하면 법의 지배(rule of law)란 보통법의 절대적

과 자유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인간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정의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강조된다.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法律(lex)’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法(jus)’을 조화하는 것이 오늘날 법치주의의 핵심과제<sup>7)</sup>이다.

이러한 법치주의 이념의 실현은 법제도와 법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즉, 국민법의식은 법제도가 작용하기 위한 배경 또는 여건을 형성한다. 특히 서구적인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국민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법의식의 현대화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국민의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다. 요컨대 법의식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법치주의의 실현여부가 좌우되며, 법치주의는 국민의 법의식수준과 비례관계를 맺으면서 실현될 것이다.

---

우위와 법앞의 평등을 의미하며 헌법도 국가의 보통법의 결과라고 한다  
【A.V.Dice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1885), 10th ed.(1971), pp.202~203】.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원리는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내지 사법부 우위로 전개되었다. 독일의 오토 마이어(O.Mayer)나 칼 슈미트(C.Schmitt)의 법치국가론은 법의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으나, 제2차 대전이후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든가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원리를 뜻한다.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4) 143면.

## 2. '94國民法意識調査의 内容·方法·過程

### 1) 調査의 内容

본 연구는 '한국인'의 '1994년' '법의식'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94본조사의 설문내용은 그 항목이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sup>8)</sup>를 제외하고는 '91조사와 대체로 일치하므로 그 동안의 법의식의 변화추이 및 양상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94본조사의 조사영역은 크게 1)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2)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3) 국민의 법생활, 4)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5)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 다섯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동과 한국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그 대표성과 적실성을 간직한 것으로서 가족구조의 변화·직장질서·여성의 지위 등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국민법의식에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및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인상·법규범력의 좌표 및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몇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국민법의식의 행동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생활화의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법생활과 법적 경험(법인지경·법인지욕구·법교육·법적 경험·법지식),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준법정신·고발정신·권리의식),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이다.

---

8)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로서 '91조사 내용 중 삭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94본조사의 설문내용으로서 시의성을 잃은 경우  
: 문항14(미등기전매사법), 문항39(재산권행사의 사회적제약)
2. '94본조사의 설문내용으로서 보다 적절한 문항이 채택된 경우  
: 문항9(농촌에서의 수박·무 서리), 문항20(법적 경험), 문항35(현실에 맞지 않는 법)

넷째,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국회와 행정부를 법정립기관, 행정관청·경찰서·검찰청·법원 등을 법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현행법령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환경오염의 규제방향 등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 2) 調査의 方法 및 過程

설문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원이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식을 철칙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4년 3월 17일 본원의 직원 44명과 서울의 특정지역(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주민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 일간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본원의 연구진과 지방대학 법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심층조사원으로, 해당 조사지역의 대학생들이 면접조사원으로 수고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6개의 특별·직할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8개도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을 하위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자수를 할당하였다. 각 지역은 다시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균등하게 표본에 대표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한국행정구역분류」에 근거하여 시·군단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군 단위지역에서 계층표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읍·면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무작위 표집방법에 의하여 동과 리를 최종단위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집락에 속하고 있는 지역과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는 【 표 1 】과 같다.

【 표 1 】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

지 역	인구비례	표본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할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서 울	25.1	301	32		종로구(38) 중랑구(38) 노원구(38) 마포구(37) 영등포구(38) 동작구(38) 서초구(37) 송파구(37)	가회동(10) 사직동(10) 창신동(9) 혜화동(9) 면목1동(10) 상봉1동(10) 중화1동(9) 망우1동(9) 월계1동(10) 공릉1동(10) 하계1동(9) 상계1동(9) 아현1동(10) 공덕1동(9) 합정동(9) 망원1동(9) 영등포1동(10) 당산1동(10) 신길1동(9) 대림1동(9) 노량진1동(10) 상도1동(10) 흑석1동(9) 사당1동(9) 서초1동(10) 잠원동(9) 반포1동(9) 방배1동(9) 풍납1동(10) 마천1동(9) 방이1동(9) 송파1동(9)

지 역	인구비례	표본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할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부 산	8.9	107	12		서구(27) 동래구(27) 부산진구(27) 남구(26)	동대신1동(9) 서대신1동(9) 부용동(9) 명륜1동(9) 사직1동(9) 연산1동(9) 부전1동(9) 연지동(9) 전포1동(9) 대연1동(9) 용호1동(9) 문현1동(8)
대 구	5.2	63	8		중구(32) 달서구(31)	동인1동(8) 동성동(8) 삼덕동1가(8) 대신1동(8) 성당1동(8) 송현1동(8) 두류1동(8) 성서1동(7)
인 천	4.6	54	6		동구(27) 북구(27)	만석동(9) 송현1동(9) 송림1동(9) 부평1동(9) 산곡1동(9) 효성1동(9)
광 주	2.7	33	4		서구(17) 광산구(16)	방림1동(9) 월산구(8) 송정1동(8) 우산동(8)
대 전	2.5	30	4		중구(15) 서구(15)	선화1동(8) 중촌동(7) 도마1동(8) 갈마동(7)

지 역	인구비례	표본수	조사지역수	조사지역(할당표본수)			
				시·군	구·읍·면	동·리	
경 기	14.4	173	21	수원시(50) 의정부시(25) 성남시(30) 동두천시(19) 강화군(17) 용인군(16) 남양주군(16)	장안구(25) 권선구(17) 팔달구(8) 수정구(15) 중원구(15) 강화읍(17) 용인읍(16) 진건면(16)	팔달동(9) 화서1동(8) 정자1동(8) 매교동(9) 세류1동(8) 매탄1동(8) 의정부1동(9) 호원동(8) 가능1동(7) 신흥1동(8) 태평1동(7) 성남동(8) 은행1동(7) 생연1동(10) 광암동(9) 관청리(9) 국화리(8) 금양장리(8) 삼가리(8) 용정리(8) 배양리(8)	
강 원	3.6	43	5	강릉시(23) 원주군(20)	홍업면(20)	교동(8) 포남동(8) 옥천동(7) 송계리(10) 매지2리(10)	
충 북	3.2	38	4	청주시(19) 진천군(19)	진천읍(19)	우암동(10) 내덕1동(9) 읍내리(10) 송두리(9)	
충 남	4.4	52	6	천안시(12) 공주군(20) 천안군(20)	계룡면(20) 성환읍(20)	남산동(6) 청룡동(6) 월암리(10) 기산리(10) 성환리(10) 매주리(10)	

지 역	인구비례	표본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활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전 북	4.7	57	8	전주시(30) 덕진구 (15) 신태인읍(14) 북면(13)	완산구(15) 완산구(15)	태평1동(8) 종로송1동(7) 진북1동(8) 인후1동(7) 신태인리(7) 연정리(7) 한교리(7) 마정리(6)
전 남	5.4	65	6	순천시(20) 곡성군(23) 나주군(22)	해남읍(23) 세지면(22)	영옥동(10) 장천동(10) 해리(12) 읍내리(11) 오봉리(11) 내정리(11)
경 북	6.6	80	7	안동시(31) 예천군(25) 청도군(24)	예천읍(25) 매전면(24)	명륜동(11) 대신동(10) 법상동(10) 노화리(13) 백전리(12) 동산리(12) 당호리(12)
경 남	8.7	104	11	울산시(31) 진주시(30) 하동군(22) 양산군(21)	중구(16) 동구(15) 하동읍(22) 물금면(21)	학성동(8) 태화동(8) 방어동(8) 화정동(7) 칠암동(10) 장대동(10) 상봉동동(10) 읍내리(11) 광평리(11) 물금리(11) 가촌리(10)
합 계	100	1200	134			

본 조사의 설문지에서는 설문문항별 교차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독립변수로서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성·연령·학력·직업·본인 및 가족의 한달평균소득·혼인여부·종교·성장지(만20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및 지역 및 규모·생활수준·성향·거주지역·지역 규모 등을 설정하였다.<sup>9)</sup> 여기에서 수집된 설문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별 교차분석에 무가치한 문항은 버리고 일부조정이 필요한 변수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는데<sup>10)</sup> 이는 본 조사에 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 표 2 】와 같다.

응답자의 특성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성·연령·거주지역·지역규모별 항목과 학력·직업·소득·종교·성향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항목으로 구분된다.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연령·거주지역·지역규모별 표본설계는 국민 전체의 대표성을 잃지 않도록 거주지역별·지역규모별 안배와 인구비례의 원칙에 충실히 따를 경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수준의 분포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층간의 법의식을 분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므로, 어느 한 계층에 편중하지 않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면접조사원의 통일된 조사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접조사원조사지침」을 정하여 심층연구원의 일일점검에 철저를 기하였다.

9) 부록Ⅱ 응답자의 특성을 참조할 것.

10) - 부록Ⅱ. 응답자의 특성 항목에 있어서 4. 가) 한달평균소득 중 응답자 본인의 소득, 5. 혼인여부, 7. 성장지, 9. 생활수준 등은 교차분석이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결과를 집계표에서 배제하였다.

- 2. 연령, 3. 학력, 5.(나) 한달평균소득 중 가족의 소득, 8. 직업 등은 구분이 무의미한 세부사항을 통합·조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개인적 문제에 대해 2개 문항과 성향에 대한 자기진단의 1개 문항으로 응답자의 성향을 판단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한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①진보 ②중도 ③보수로 분류하여 각각의 응답에 1·2·3의 점수를 부여하고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점수를 합계하여 3~5는 진보, 6은 중도, 7~9는 보수로 응답자의 성향을 구분하였다.

【 표 2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단위 : %(명)

항목 특성	구 분							합 계	
	분 포								
성	남 자				여 자			100.0 (1,199)	
	53.0(635)				47.0(564)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0.0 (1,200)	
	28.0(336)	26.3(316)	21.8(262)	23.8(286)					
학력	국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재 이상				100.0 (1,198)	
	10.0(120)	13.8(165)	41.9(502)	34.3(411)					
직업	전문 · 관리직	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생산 직	농어업	학생	주부	100.0 (1,200)	
	10.3 (124)	16.9 (203)	24.3 (291)	8.4 (101)	7.2 (86)	6.7 (80)	19.8 (238)		
가구 소득	70만원 미만		70~119만원		120~199만원		200만원 이상		
	14.6(174)		33.3(396)		35.2(419)		16.8(200)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무종교	기타		100.0 (1,200)	
	28.5(342)	21.5(258)	10.1(121)	2.3(27)	36.8(442)	0.8(10)			
성향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100.0 (1,198)	
	17.9(215)		51.7(619)		30.3(363)				
거주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100.0 (1,200)	
	25.1(301)	19.5(234)	3.6(43)	10.0(120)	12.9(155)	28.9(347)			
지역규모	대 도 시		중 · 소도시		읍 · 면 이하			100.0 (1,200)	
	49.0(588)		28.3(340)		22.7(272)				

### 3) 調査의 限界

여론조사의 창시자인 갤럽(G.Gallup)은 인간세계에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를 평가하는 작업은 가정주부가 수프의 맛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sup>11)</sup>한 바 있다. 그러나 규범과 의식의 영역을 수치 및 통계화과정을 거쳐 사실과 현실의 지표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특히 법이라는 가치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본 설문조사의 속성상 완전한 가치중립적인 조작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의 보완을 위하여는 폐쇄형 질문(closed question)방식의 사용을止揚하여야 하나 코딩의 자동화없이 조사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조사방법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이 부분적인 편차를 보일 수는 있으나 연구의 적합성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이 설문조사가 갖는 내재적 한계라면, 조사기간 선정과 관련하여 언론동향에 따른 여론 변화가 응답자의 반응에 주는 영향은 외재적 한계이다. 설문조사기간 이전 또는 조사기간 중에 국민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연구원이 제공하는 언론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한겨레신문·한국일보 등 8대 일간지의 1994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보도내용을 톱기사와 준톱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표 3】과 같다.

설문조사기간 이전('94. 3. 1~'94. 3. 31) 또는 조사기간 중 언론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는 탁명환씨 피살사건(계속~3. 3), 농협회장 거액 횡령사건(3. 5~3. 23), 종로5가 광케이블 화재사고(3. 5~3. 12), 상문고 성적조작·뇌물제공사건(3. 15~3. 31), 조계사 폭력 및 정치자금 수수사건(3. 29~계속)이다. 이들 사건 이외의 주요 사건을

11) 조지 갤럽, (박무의 역), 「갤럽의 여론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9), 62면.

【 표 3 】 설문조사 기간 이전 및 기간 중의 주요 사건

구분 내용	설문조사기간 이전		설문조사기간 중
	1994. 3. 1~1994. 3. 20	1994. 3. 21~1994. 3. 31	1994. 4. 1~1994. 4. 10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제의 (3.1~3.2)</li> <li>• 정치개혁법 국회 통과 (3.5)</li> <li>• 여야 정치개혁 협력합의 (3.12)</li> <li>• IAEA 북한핵 재사찰 관련 특별이사회 (3.17)</li> <li>• 남북특사 실무접촉 완전결렬 (3.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문제 · 팀스파리 트 훈련 재개 등 (3.21~계속)</li> <li>• 선관위 서울4개구 구청장 사전선거운동 고발 (3.21)</li> <li>• 예비판사제 도입 등 법조직법 개정안 (3.22)</li> <li>• 선관위 인천시장 등 사전선거운동 고발 (3.24)</li> <li>• 경찰관 수뢰비리 (3.26)</li> <li>• 체포영장제 도입 등 법개정안 (3.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문제 · 안보태세등 (4.1~계속)</li> <li>• 경찰관 홍신소 등에 개인정보 유출 (4.1)</li> <li>•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계속적 감시 (4.4)</li> <li>• 일본 호소가와 총리 비리 사임 (4.9)</li> </ul>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상승유발 담합 · 매점매석 구속수사 (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칙유통 수입소세지 전량 폐기 (3.23)</li> <li>• UR이행서 대폭 수정 · 추가양보 (3.25~계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 및 한·미 협상의 대응 미흡 (4.1~계속)</li> </ul>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명환씨 피살사건 수사 (계속~3.3)</li> <li>• 공군참모총장 탐승헬기 추락 (3.4)</li> <li>• 농협회장 거액 횡령수사 (3.5~3.23)</li> <li>• 대법원 생수시판 금지 무효판결 (3.9)</li> <li>• 천주교 성직자 소득세 납부 결정 (3.9)</li> <li>• 종로5가 광케이블 화재 사고 (3.11~3.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임금협상시 무리한 요구 지양 추세 (3.25)</li> <li>• 조계사 폭력사건 및 정치자금 수수의혹 (3.29~계속)</li> <li>• 가정의례준칙법 입법 예고 (4.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계사 폭력사건 및 정치자금수수 수사 ('94.4.1~계속)</li> <li>• 개통 과천선 전철 연일 사고 (4.4~계속)</li> </ul>
문 화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96년부터 대학 업무 자율화방침 (3.1)</li> <li>• 16개 전문대 840명 부당 증원 (3.10)</li> <li>• 상문고 특별감사 착수 (3.15~계속)</li> <li>• 전국 52개고 특감 착수 (3.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문고 성적조작 · 금품 제공 (계속~계속)</li> <li>•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권 확보안 마련 (3.26)</li> <li>• 일부고교 교육비리 특감 (3.29)</li> </ul>	

분야별로 보면, 먼저 정치분야에서는 남북특사 실무접촉 완전결렬(3. 30), 북한핵 문제·팀스피리트 재개 등(3. 21~계속), 정치개혁법 국회 통과(3. 5), 여야 정치개혁 공동노력 합의(3. 12), 선관위 공직자 사전선거운동 고발(3. 21.~3. 24 등), 경찰관 비리 사건(3. 26.~4. 1), 예비판사제·체포 영장제 등 도입 결정(3. 21, 3. 29), 일본 호소가와 총리 비리 사임(4. 9) 등이 있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물가상승유발 담합·매점매석 구속수사(3. 8), 변칙유통 수입소세지 전량 폐기(3. 23), UR이행서 대폭 수정 추가양보, 한·미 협상 대응 미흡(3.25~계속) 등이 주요 기사였다. 사회분야에서는 공군참모총장 탑승 헬기 추락사고(3. 4), 대법원 생수시판매금지 무효판결(3. 9), 천주교성직자 소득세 납부결정(3. 9), 노사임금협상시 무리한 요구 지양 추세(3. 25), 가정의례준칙법 입법예고(4. 6), 개통 과천선 전철 연일 사고(4. 4~계속) 등이 주요 기사였다. 또한 문화·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주요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상문고 성적조작·뇌물제공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52개 고교 특감(3. 19, 3. 29), 16개 전문대 840명 부당 증원(3. 10), 교육부 대학정원 등 자율권 부여 방침(3. 1, 3. 26) 등이 그것이다.

조사기간 중 발생한 사건 중 상문고 성적조작 뇌물제공사건·전문대학 부당증원 등과 조계사폭력 및 정치자금수수사건은 설문내용 중 교육계와 종교인의 법준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정치개혁법 국회 통과, 노사임금협상시 무리한 요구 지양 추세 등은 각각의 관련부문에서 응답자들의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집중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이외에도 선관위 공직자 사전선거운동 고발, 경찰관 비리, 가정의례준칙법 입법예고, 개통과천선 전철 연일사고 등은 국민법의식조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닐지라도 그 개연적 관련성은 인정된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시·공간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외재적 한계라고 보며, 설문조사의 기간을 선정함에 신중을 기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이들 사건에 의한 응답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외재적 한계가 갖는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3. 國民法意識調査의 擴張方向

법의식조사연구는 국민법의식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이외에도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정법령에 대한 국민의 반응조사, 법관계자의 법의식 및 입법의견조사, 주요 법령 제정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사전여론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1) 特定法令에 대한 國民의 反應調查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정법령에 대한 개정요구가 비등할 때, 그 법령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졸속개정을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판의 대상이 된 특정법령이 과연 법령입안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지(입법기술상의 문제 포함), 법적용 및 시행과정에서 비롯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에 대한 진단을 먼저 내리는 것이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기법을 수정·보완하여 원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sup>12)</sup>

#### 2) 法關係者の 法意識 및 立法意見調查

국민의 법의식 못지 않게 법관계자(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부처 법제담당자, 법학도, 기타 법률종사자)의 법의식 또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관건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입법·법적용·법해석의 방향은 주로 이들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sup>13)</sup> 비로소 국민법의식의 조사가 완결된다. 이를 위하여

12) 1992년에 본원에서 실시하였던 「선거관계법제와 국민법의식조사연구」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13) 법조인의 법의식과 관련된 기존조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법관계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들의 입법과정 및 법집행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반국민에 대한 법관계자의 요망사항과 입법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다. 설문구성시 주로 폐쇄형질문방식을 택한 본 연구의 조사기법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sup>14)</sup>

### 3) 주요 法令 制定시 非公式的인 次元에서의 事前輿論調查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 내지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혀 국가정책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3년 5월 1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제정된 바 있고, 그 동안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 6월 28일 개정된 국회법 제82조의 2를 근거로 의원입법의 경우도 입법예고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입법참여제도의 모색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많은 개선이 있었고 입법예고제의 활용도 시행 초기에 12건(83년), 72건(84년) 등에 머물렀던 것이 최근 들어 매년 300여건을 상회<sup>15)</sup>하는 등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법령 제정시 공청회 등에 의하여 입법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사전여론조사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령을 제정할 때 입법예고제

---

들은 법관계자의 사회적 배경이나 속성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Yi Chang-Hyon, "Sociological Approaches on Lawyers in Korea", *Korea Journal* (October, 1972) ; 유상호, "한국판사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사법행정』 (1971. 3~5); 이석진, "한국법관의 실태조사", 『사법연구자료』, 제3집(1976. 2).

14) 『법관계자의 법의식 및 입법의견조사』는 향후 본원의 연구과제로서 선정될 예정이다.

15) 90년 269건, 91년 258건, 92년 239건, 93년 393건, 94년 309건(8. 2 현재) 등.

와는 다른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사전여론조사가 요청된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예상되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sup>16)</sup> 입법의 민주화나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비공식차원에서의 사전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으나 조사의 결과가 객관성을 유지할 경우 법치국가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제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차원의 법의식 조사비교 연구분야<sup>17)</sup>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남북한 주민간의 법의식 비교조사나 해외동포의 법생활 내지는 법의식에 관한 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법의식조사의 본질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생활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태도 등 전반적인 법의식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법의식의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변혁 이후의 변화된 법의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후자의 예로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나 통일시기를 전후하여 예상될 수 있는 법의식의 변화양상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16) 일본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앞두고 여러번의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飽戶弘 外, 「現代日本人の法意識」(第一法規社, 1982), 103 ~105面 ; 김원주, "일본의 행정절차법", 「현대공법론-김이열교수화답기념논문집」(삼영사, 1989), 116~117면에서 재인용).

17) 본 보고서 59~62면을 참조할 것.

## II. 韓國人の 法意識과 그 特徵

### 1. '91國民法意識調査와의 比較

1991년의 국민법의식조사연구는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그 동안의 일반적인 평가와 기존의 법의식조사결과<sup>18)</sup>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조사당시 우리 사회는 80년대 후반 이후(소위 6·29 민주화선언 전후) 民主化의 轉換地帶에 들어서고 참여적 시민문화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민주화과정은 유교적 문화유산과 전통, 일제식민화과정, 해방과 민족분단, 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 못지 않게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혁을 일으켰으며, 이는 국민법의식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양승두교수의 1965년 조사, 임희섭교수의 1972년 조사, 그리고 이근식교수와 3인의 1981년 조사<sup>19)</sup>와 '91조사를 비교·검토한 결과 특징적

- 
- 18)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1968, 11); 이태재, “우리나라 법의식에 관한 소고”, 『최해태박사학갑기념논문집』(사회과학 1, 1969. 3);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국제문화재단, 1975. 12);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학교, 1982); 이근식외 3인,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의식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연구논총』(새마을연구회, 1982); 차용석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2); 어인의외 6인, “법의 민주화와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김영철, “농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조』(1973. 5. 6).
- 19)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기존의 조사와 '91조사의 비교에 있어서 변화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전국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할 것, ② 설문내용이 법의식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물음일 것, ③ 시대변천에 따른 법의식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위의 세 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91조사 보고서 45~51면을 참조할 것.

인 것은 첫째,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둘째, 권리의식이 신장된 반면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며 셋째,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법치주의 실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고 권리의식의 신장은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이어질 때 사회의 탈·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되어 법치주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준법정신의 결여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민법의식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후기산업사회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법경시풍조와 기존제도 및 질서에 대한 부정 일변도 현상과 맞물릴 경우 사회혼란은 증폭되고 법치국가 실현은 요원하여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시민의 건전한 비판정신의 소생과 활성화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것이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과 조화를 이룬다면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예상과 진단이 가능하였다.

'91조사에 있어서 그 진단항목으로 크게 1)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2)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3) 국민의 법생활, 4)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5) 협행법령에 대한 견해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문내용과 응답의 단순빈도를 '94본조사와 비교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價値觀 變化의 比較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한 가족구조의 변화, 직장질서, 여성의 지위 등의 세 가지 문항은 '91조사와 동일하며, 단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긍정 및 부정의 응답구분을 추가하였다.

기본빈도의 분포는 '91조사에 비하여 '94본조사의 경우 직장내 질서의 민주화와 여성의 취업 및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항목에 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재산상속의 불평등에 관하여는 다소 개선되어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 】 가치관 변화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기족구조의 변화	<p>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u>최종적으로</u> 어떻게 이루어집니까?</p> <p>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24.5(490)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1.6(32)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30.6(612)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42.2(844)      5) 기타 1.0(20)</p>	<p>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u>최종적으로</u> 어떻게 이루어집니까?</p> <p>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24.3(291)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1.5(18)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32.3(387)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40.8(489)      5) 기타 1.3(15)</p>
직장 질서	<p>7. 직장의 상사가 <u>보당한</u>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무조건 들어 준다 1.5(30)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33.9(676)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49.9(997)      4) 무조건 거절한다 14.7(294)</p>	<p>7. 직장의 상사가 <u>보당한</u>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무조건 들어 준다 0.8(10)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31.2(374)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52.1(625)      4) 무조건 거절한다 15.8(190)</p>
여성의 위치	<p>8.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참여 11.0(219)      2) 재산상속 10.2(202)      3) 취업 및 승진 60.3(1198)      4) 가정에서의 역할 15.7(311)      5) 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 4(27)      6) 기타 1.5(30)</p>	<p>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그렇다 61.8(740)      2) 그렇지 않다 38.2(457)</p> <p>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u>가장</u>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참여 8.8(65)      2) 재산상속 5.6(41)      3) 취업 및 승진 69.3(511)      4) 가정에서의 역할 14.0(103)      5) 기타 2.3(17)</p>

## 2) 國民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의 比較

'91조사는 법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으로 알고 이를 생활화하려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 태도에 대한 설문으로서 법에 대한 인상, 법규범력의 좌표,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의 다섯 가지 문항을 선택하였는데 '94본조사에서도 동일하다.

기본빈도의 분포에서 '94본조사는 '91조사와 약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법의 사회질서유지기능의 선택이 줄어들고 약자보호기능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 강해지고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한층 더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 표 5 】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에 대한 인상	<p>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공평하다 13.4(267)      2) 민주적이다 11.1(221)      3) 엄격하다 18.9(378)      4) 편파적이다 24.7(494)      5) 권위적이다 32.0(640)</p>	<p>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공평하다 13.0(156)      2) 민주적이다 12.8(153)      3) 엄격하다 19.1(229)      4) 편파적이다 24.9(298)      5) 권위적이다 30.3(363)</p>
법규범력의 좌표	<p>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7.5(150)      2)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76.7(1532)      3)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8.8(176)      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8)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3.2(64)      6)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1.9(38)</p>	<p>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가통치를 위하여 8.2(98)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70.9(849)      3) 사회개혁을 위하여 1.2(14)      4) 분쟁해결을 위하여 2.2(26)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4.2(50)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3.4(161)</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의 존재가 치에 대한 판단	<p>3.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차라리 나을 것이다 3.3(66)      2) 마찬가지일 것이다 7.5(149)      3) 불편할 것이다 89.3(1785)</p>	<p>3. 만약 우리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차라리 나을것이다 1.3(16)      2) 마찬가지일 것이다 3.4(41)      3) 불편할 것이다 21.7(260)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73.6(882)</p>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p>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바람직하다 16.8(336)      2) 합리적이다 32.3(645)      3) 물인정하다 23.9(478)      4) 불쾌하다 26.9(538)</p>	<p>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p> <p>1) 바람직하다 21.0(251)      2) 합리적이다 30.4(364)      3) 물인정하다 24.5(293)      4) 불쾌하다 24.2(290)</p>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p>1) 전적으로 동의한다 9.4(187)      2) 대체로 동의한다 22.5(450)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6.0(520)      4)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843)</p>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p> <p>1) 전적으로 동의한다 9.7(116)      2) 대체로 동의한다 20.4(245)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0.8(369)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9.1(469)</p>

### 3) 國民의 法生活 比較

#### ① 法生活과 法的 經驗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관한 '91조사와 '94본조사의 문항은 법인지 경로, 범인지 욕구 등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범인지 경로에 정부 홍보물을 추가하고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인한 법생활의 적응에 관한

문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적 경험 중 각종 소송, 보증·상속·양육문제 등으로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91조사의 문항21의 삭제는 일상생활 중 국민의 법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는 요즈음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보았는지에 대한 설문은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문항으로서 이미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기본인도의 분포에 있어서, '91조사와 달라진 점은 법인지의 경로가 신문·TV 등 대중매체에 의한 일반적인 인지경로에서 책·정보홍보물 등 다양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약관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소송회피심리가 많이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에서의 단순민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생활에서 법생활이 보다 철저해지는 적극적인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비록 하나의 문항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반국민의 높아진 법지식을 엿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법령에 대한 친숙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 중 새로이 신설된 법교육 실태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대체로 비판적이었고 적절한 법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금융실명제를 예시하여 새로운 법제 도입으로 인한 일반국민의 법생활 적응도를 측정하였는데 대부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 표 6 】 법생활과 법적 경험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 인 지 경	<p>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p> <p>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4.9(1497)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2(184)  3) 책을 보고서 6.2(124)  4) 학교에서 배워서 4.1(81)  5) 사건을 겪고 나서 5.6(112)</p>	<p>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p> <p>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0.9(850)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1(109)  3) 책을 보고서 9.8(118)  4) 학교에서 배워서 3.4(41)  5) 사건을 겪고 나서 4.9(59)  6) 정부홍보물을 통하여 1.8(22)</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 인 지 구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21.2(423) 2) 대충 본다 59.6(1192) 3) 거의 보지 않는다 14.6(291) 4) 전혀 보지 않는다 4.7(94)	1) 자세히 본다 22.2(266) 2) 대충본다 55.6(667) 3) 거의 보지 않는다 16.0(192) 4) 전혀 보지 않는다 6.3(75)
	19. 귀하는 행정관청의 민원 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 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1) 자주 있었다 2.9(57) 2) 가끔 있었다 20.9(417) 3) 한번은 있었다 18.8(376) 4) 전혀 없었다 57.5(1148)	1) 자주 있었다 2.8(34) 2) 한 두 번 있었다 33.0(396) 3) 전혀 없었다 64.1(769)
	21.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법 교 육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79.5(1587) 2) 그렇지 않다 7.8(155) 3) 읽어본 적이 없다 12.7(253)	1) 그렇다 80.3(963) 2) 그렇지 않다 8.0(96) 3) 읽어본 적이 없다 11.7(140)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 교 육		<p>1) 매우 잘되고 있다 1.8(22)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29.4(352)      3)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59.6(713)      4)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9.2(110)</p> <p>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15.7(187)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 규 25.4(303)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7(68)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2.1(622)      5) 기타 1.1(13)</p>
법적 경험	<p>20. 다음은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p> <p>1) 있다 28.9(578)      2) 없다 71.1(1422)</p> <p>나) 만약 가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p> <p>1) 행정소송 11.1(64)      2) 형사문제 25.9(149)      3) 즉심 11.5(66)      4) 증인 15.1(87)      5) 재산문제 17.4(100)      6) 보증문제 9.6(55)      7) 상속문제 1.2(7)      8)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 4.9(28)      9) 기타 3.3(19)</p> <p>34.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을 빌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p>	<p>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신지요?</p> <p>1) 전혀 불편하지 않다 46.4(556)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32.2(386)      3) 약간 불편하다 18.5(222)      4) 매우 불편하다 2.9(35)</p> <p>3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재판</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법적 경험	<p>2) 범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다 13.8(275)</p> <p>3) 나의 권리를 위해서는 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9.6(590)</p> <p>4) 재판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19.1(382)</p> <p>5) 기타 0.5(9)</p> <p>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원칙대로 하면 된다 66.3(1323)</p> <p>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18.5(369)</p> <p>3) 압력을 넣어야 한다 2.8(55)</p> <p>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11.3(226)</p> <p>5) 기타 1.1(22)</p>	<p>다 32.5(389)</p> <p>2) 소송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1.5(258)</p> <p>3)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35.6(427)</p> <p>4)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9.3(112)</p> <p>5) 기타 1.0(12)</p> <p>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원칙대로 하면 된다 74.6(895)</p> <p>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15.1(181)</p> <p>3) 압력을 넣어야 한다 1.8(21)</p> <p>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7.0(84)</p> <p>5) 기타 1.5(18)</p>
	<p>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6.3(1125)</p> <p>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3.1(262)</p> <p>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3(166)</p> <p>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4.0(280)</p> <p>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8.3(166)</p>	<p>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0.9(611)</p> <p>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4.6(175)</p> <p>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7.8(93)</p> <p>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6.3(196)</p> <p>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10.4(125)</p>
법지식	<p>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p> <p>1) 시집간 딸 0.6(11)</p> <p>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74.9(1497)</p> <p>3) 똑같다 19.9(398)</p> <p>4) 잘 모르겠다 4.7(93)</p>	<p>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p> <p>1) 시집간 딸 0.2(2)</p> <p>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66.1(793)</p> <p>3) 똑같다 29.1(349)</p> <p>4) 잘 모르겠다 4.7(56)</p>

## ② 違法精神과 權利意識

국민의 법생활 중 준법정신과 고발정신 및 권리의식에 관한 '91조사와 '94본조사는 설문 및 응답문항의 자구수정과 순서의 재배치 외에는 거의 유사하나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관한 물음에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요청되는 방안을 추가조사하였으며, 사회의 준법질서를 깨뜨리는 주요 집단의 예시에 있어서 항목조정과 선택방법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91조사에서의 미등기전매에 관한 문항14는 이미 1가구 1주택의 주택공급질서가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시의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기본빈도의 분포를 보면, 준법질서와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준수는 개선되었고, 기초질서 위반이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 및 법집행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의 수단으로서 높은 신고정신을 요구한 반면, 권리의식은 '91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시급히 퇴치할 범죄로서 부정부패와 성폭행을 주로 지적하였고 분야별 법준수도에 있어서는 교육계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표 7 】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준법질서	<p>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p> <p>1) 그렇다                          17.6(352)      2) 그렇지 않다                    82.4(1645)</p> <p>1) 법이 불공평하므로            19.9(326)      2)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2.6(206)</p>	<p>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p> <p>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2.5(305)      2) 법이 불공평하므로    21.3(200)</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준법질서	<p>3)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3.2(544)</p> <p>4)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1(395)</p> <p>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0.4(170)</p> <p>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인 61.8(1043)</p> <p>2) 공무원 11.0(186)</p> <p>3) 기업가 15.6(263)</p> <p>4) 지식인 2.4(41)</p> <p>5) 종교인 1.1(1)</p> <p>6) 근로자 1.2(21)</p> <p>7) 대학생 2.8(47)</p> <p>8) 농어민 4.0(67)</p>	<p>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9(234)</p> <p>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1.5(108)</p> <p>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9.8(92)</p> <p>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인 42.6(800)</p> <p>2) 공무원 14.2(267)</p> <p>3) 법조인 9.0(184)</p> <p>4) 교육자 4.8(86)</p> <p>5) 기업인 20.0(375)</p> <p>6) 근로자 1.0(18)</p> <p>7) 종교인 4.5(84)</p> <p>8) 대학생 2.2(42)</p> <p>9) 농어민 1.1(21)</p>
분야별 법준수도	<p>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가) 정치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4(27)</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6.0(316)</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8.6(1160)</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24.1(477)</p> <p>나) 행정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7(74)</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2.7(84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5.6(901)</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8.0(158)</p> <p>다) 경제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40)</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6.0(51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6.8(1119)</p>	<p>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가) 정치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3(15)</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9.2(229)</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67.5(803)</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2.0(143)</p> <p>나) 행정분야</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4.1(49)</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9.0(583)</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3.7(519)</p> <p>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2(38)</p> <p>다) 경제계</p> <p>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7(20)</p> <p>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3.7(398)</p> <p>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7.5(680)</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5.2(299)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7.1(84)
	<b>라) 노사관계</b>	<b>라) 노사관계</b>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39)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8.7(565)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5.0(1081)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4.3(282)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4.0(47)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3.3(513)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5(550)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3(74)
분야별 법준수도	<b>마) 교육계</b>	<b>마) 교육계</b>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8.2(163)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1.7(1028)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3.4(661)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6(130)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3(39)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8.7(460)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1.1(608)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7.0(83)
	<b>바) 교통질서</b>	<b>바) 교통질서</b>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0(59)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2.9(652)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7.6(942)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6.6(328)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3(28)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0.3(361)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3.9(642)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3.5(161)
	<b>사) 행락질서</b>	<b>사) 행락질서</b>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7(34)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8.6(368)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9(928)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2.8(649)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0.7(8)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5.9(190)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1.8(618)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1.6(377)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사적 모임에 서의 규칙준 수	<p>12. 다음은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52.9(1053) 2) 그렇지 않다 47.1(939)</p> <p>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친한 사이라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0.2(378) 2) 별칙이 약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16.5(155) 3) 이익이 없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9.3(275) 4) 생활이 바빠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6.8(64) 5) 의식이 부족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0(28) 6) 기타 4.3(40)</p>	<p>12.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60.5(723) 2) 그렇지 않다 39.5(473)</p> <p>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친한 사이라서 16.2(76) 2) 별칙이 약해서 6.8(32) 3) 이익이 없어서 12.0(56) 4) 생활이 바빠서 59.0(276) 5) 기타 6.0(28)</p>
고발정신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표 5】참조)</p> <p>13. 귀하는 길거리에서 침을 뺏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p> <p>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54.9(1098)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1.4(227)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33.7(674)</p>	<p>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표 5】참조)</p> <p>13.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p> <p>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63.5(762)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16.9(203)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19.6(235)</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고발정신	<p>14. 집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더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그럴 수도 있다 15.4(307)      2)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56.1(1121)      3) 탈세(양도소득세의 포탈)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28.6(571)</p> <p>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언제나 신고한다 48.6(971)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24.0(480)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5.1(101)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3.0(59)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19.4(388)</p> <p>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지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가)      1) 부정부패 56.0(1116)      2) 탈세 3.4(68)      3) 부동산투기사범 24.1(481)      4) 공해사범 16.0(318)      5) 기타 0.5(10)</p> <p>나)      1) 성폭행 18.9(377)      2) 가정파괴범 50.0(997)      3) 조직폭력배 21.3(425)      4) 마약사범 8.8(176)      5) 기타 0.9(18)</p>	<p>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당연히 신고한다 65.2(782)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17.1(205)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3.8(46)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2.5(30)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11.4(137)</p> <p>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지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가)      1) 부정부패 61.7(740)      2) 탈세 6.2(74)      3) 부동산투기사범 11.3(136)      4) 환경사범 13.2(158)      5) 경제사범 7.2(86)      6) 기타 0.4(5)</p> <p>나)      1) 성폭행 36.0(431)      2) 조직폭력배 26.1(313)      3) 마약사범 8.3(99)      4) 강·절도사범 25.0(300)      5) 음주운전 4.2(50)      6) 기타 0.4(5)</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고발정신		<p>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u>가장</u>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p> <p>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24.2(290)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6) 기타 0.6(7)</p>
권리의식	<p>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7.7(353)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1.3(425)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6(989)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11.4(227)</p> <p>24. 불량품(TV,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0.6(41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8(975)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9.7(593)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1.0(19)</p>	<p>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8.1(217)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2.3(267)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9(598)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9.8(117)</p> <p>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16.4(197)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9(587)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3.8(406)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8(10)</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권리의식	<p>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8(136)</p> <p>2) 치료비만 받는다 25.2(502)</p> <p>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2(861)</p> <p>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4.8(494)</p>	<p>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3(75)</p> <p>2) 치료비만 받는다 26.6(318)</p> <p>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3(517)</p> <p>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3.8(285)</p>

### ③ 法의 使用能力 및 紛爭의 解決方法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조사는 국민법의식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91조사와 '94본조사의 설문문항의 변화로는 한국인의 법생활의 관용성을 묻는 문항9의 상황설정을 농촌에서의 수박·무서리에서 같은 또래의 자녀들간의 다툼으로 바꾸었다. 이는 농촌에서의 서리문제가 변화된 농촌경제구조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법생활상의 관용성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문항27의 응답문항의 예시를 '91조사의 '고위층인사'를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으로, '면·읍이나 구청직원'을 '담당행정공무원'으로 수정하였다.

기본인도의 분포에 있어서 '94본조사 결과는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법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행정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중요시하는 응답이 많아졌다.

【 표 8 】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분쟁의 해결방법	<p>4) 법의 해결에 맡긴다 6.0(120)</p> <p>27. 귀하는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고위층 인사 27.3(542)      2) 변호사 33.2(658)      3) 판·검사 21.3(423)      4) 면·동이나 구청직원 5.0(99)      5) 경찰관 9.1(181)      6) 도움되지 않는다 2.0(40)      7) 기타 2.0(39)</p>	<p>4) 법의 해결에 맡긴다 7.3(87)</p> <p>27.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고위공무원 8.6(103)      2) 변호사 26.3(314)      3) 판·검사 25.4(303)      4) 담당행정공무원 22.3(267)      5) 경찰관 10.0(120)      6) 정치인 4.7(56)      7) 기타 2.7(32)</p>

#### 4)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의 比較

##### ①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는 법관련기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를 묻는 것으로서 '91조사와 '94본조사의 설문내용은 동일하다.

'94본조사 결과 입법관련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으며, 특히 입법과정에서의 소외감은 '91조사 당시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단순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검찰의 법집행 및 법원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여전히 높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

【 표 9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비교

'91 조 사	'94 본 조 사
10.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표 7 ] 참조)	10.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표 7 ] 참조)
10.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7 ] 참조)	10.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7 ] 참조)

'91 조사	'94 본 조사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1) 공정하다 5.8(115) 2) 대체로 공정하다 42.7(848)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39.4(782) 4) 공정하지 않다 12.1(240)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1) 공정하다 2.8(33) 2) 대체로 공정하다 40.5(483)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51.7(616)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5.0(60)
나) 행정 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1) 공정하다 6.8(135) 2) 대체로 공정하다 50.0(991)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5.1(696) 4) 공정하지 않다 8.0(159)	나) 행정 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1) 공정하다 3.4(40) 2) 대체로 공정하다 52.4(624)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1.7(497)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2.5(30)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1) 공정하다 4.6(92) 2) 대체로 공정하다 40.8(809)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41.7(827) 4) 공정하지 않다 12.9(255)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1) 공정하다 5.4(64) 2) 대체로 공정하다 45.7(544)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4.6(531)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4.3(51)
라) 경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1) 공정하다 11.5(227) 2) 대체로 공정하다 50.4(996)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30.1(595) 4) 공정하지 않다 8.1(160)	라) 경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1) 공정하다 8.3(99) 2) 대체로 공정하다 54.2(645)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34.3(408)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3.1(37)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 공정하다 19.7(391) 2) 대체로 공정하다 55.0(1090)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19.6(389) 4) 공정하지 않다 5.6(111)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 공정하다 11.7(139) 2) 대체로 공정하다 59.1(703)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26.6(317) 4) 공정하지 않다 2.6(31)
28.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5.2(303) 2) 조금은 그렇다 30.8(614) 3) 별로 그렇지 않다 40.6(810) 4) 전혀 그렇지 않다 13.5(269)	28.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1.7(140) 2) 대체로 그렇다 26.1(313) 3) 별로 그렇지 않다 49.8(597) 4) 전혀 그렇지 않다 12.4(148)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6 】 참조 )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6 】 참조 )

## ② 司法權의 獨立

'94본조사의 사법권독립에 관한 설문내용은 '91조사와 동일하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증가하였다.

【 표 10 】 사법권의 독립 비교

'91 조 사	'94 본 조 사
<p>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40.3(805)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3.9(1076)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93)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24)</p>	<p>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6.4(437)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6.9(682)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59)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21)</p>
<p>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바람직하다 78.8(1575)      2) 바람직하지 않다 21.2(423)</p>	<p>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바람직하다 76.6(918)      2) 바람직하지 않다 23.4(280)</p>

## 5) 現行法令에 대한 見解의 比較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하여 '91조사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민법상 동성동본금혼규정·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구성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정치·사회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관한 설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묻는 '91조

사의 문항35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91조사의 문항39는 삭제하였다. 또한 응답항목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확한 견해를 알기 위하여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의 선택을 가급적 배제하였다.

'94본조사 결과 현행법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견해는 해당 법분야마다 각각 요구되어지는 법규범력의 제고방향에 관심을 두고 응답하였다. 정치관계법의 경우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사전예방과 복구책임에 치중하여 응답하였다. 그외의 설문에 관하여는 '91조사와 '94본조사간의 큰 변화는 없었다.

【 표 11 】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비교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현실에 맞지 않는 법	<p>35.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치에 관한 법 25.2(500)      2) 행정에 관한 법 6.5(130)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7.6(150)      4) 경제에 관한 법 8.8(175)      5) 조세에 관한 법 16.3(324)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9.6(190)      7) 농어촌에 관한 법 17.9(355)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6.8(135)      9) 기타 1.4(27)</p> <p>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현실에 맞지 않는 법	<p>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0(580)</p> <p>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2.5(250)</p> <p>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52.3(1046)</p> <p>4) 판단이 서지 않는다 6.2(123)</p> <p>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 31.4(628)</p> <p>2)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61.5(1230)</p> <p>3) 판단이 서지 않는다 7.1(141)</p>	<p>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2(362)</p> <p>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3.1(157)</p> <p>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43.7(524)</p> <p>4)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13.0(156)</p> <p>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3.8(45)</p> <p>2)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 35.2(422)</p> <p>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42.2(506)</p> <p>4) 법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18.9(227)</p>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p>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 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 개혁과 높은 준법정신 50.0(599)</p> <p>2)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 13.1(157)</p> <p>3) 유권자의 의식 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 36.2(434)</p> <p>4) 기타 0.8(9)</p>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p>38. 만약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경영진</td><td>27.1(542)</td></tr> <tr><td>2) 근로자</td><td>2.5(50)</td></tr> <tr><td>3) 정부</td><td>11.8(236)</td></tr> <tr><td>4) 재야 및 운동권학생</td><td>4.8(95)</td></tr> <tr><td>5)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td><td>52.0(1039)</td></tr> <tr><td>6) 요즈음은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td><td>1.8(36)</td></tr> </table>	1) 경영진	27.1(542)	2) 근로자	2.5(50)	3) 정부	11.8(236)	4) 재야 및 운동권학생	4.8(95)	5)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2.0(1039)	6) 요즈음은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8(36)	<p>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p> <p>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td><td>2.7(32)</td></tr> <tr><td>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td><td>57.4(686)</td></tr> <tr><td>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td><td>37.1(444)</td></tr> <tr><td>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td><td>2.8(34)</td></tr> </table> <p>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tr><td>1) 사용자</td><td>24.3(116)</td></tr> <tr><td>2) 근로자</td><td>2.5(12)</td></tr> <tr><td>3) 정부</td><td>16.1(77)</td></tr> <tr><td>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td><td>57.1(273)</td></tr> </table>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7(32)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7.4(686)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7.1(444)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8(34)	1) 사용자	24.3(116)	2) 근로자	2.5(12)	3) 정부	16.1(77)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7.1(273)
1) 경영진	27.1(542)																													
2) 근로자	2.5(50)																													
3) 정부	11.8(236)																													
4) 재야 및 운동권학생	4.8(95)																													
5)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2.0(1039)																													
6) 요즈음은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8(36)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7(32)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7.4(686)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7.1(444)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8(34)																													
1) 사용자	24.3(116)																													
2) 근로자	2.5(12)																													
3) 정부	16.1(77)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7.1(273)																													
재산권행사 의 사회적 제약	<p>39. 중동의 걸프만전쟁 당시 실시되었던 차량 10부제 운행이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p> <table> <tr><td>1) 차량소지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해제조치를 환영한다</td><td>9.0(180)</td></tr> <tr><td>2) 비상사태(걸프만 전쟁)가 끝났으므로 해제조치는 당연하다</td><td>11.9(238)</td></tr> <tr><td>3)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계속 시행할만 했다</td><td>16.3(325)</td></tr> <tr><td>4)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계속 시행할 만한 조치였다</td><td>54.7(1092)</td></tr> <tr><td>5) 5부제운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td><td>8.1(162)</td></tr> </table>	1) 차량소지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9.0(180)	2) 비상사태(걸프만 전쟁)가 끝났으므로 해제조치는 당연하다	11.9(238)	3)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계속 시행할만 했다	16.3(325)	4)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계속 시행할 만한 조치였다	54.7(1092)	5) 5부제운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8.1(162)																			
1) 차량소지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9.0(180)																													
2) 비상사태(걸프만 전쟁)가 끝났으므로 해제조치는 당연하다	11.9(238)																													
3)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계속 시행할만 했다	16.3(325)																													
4)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계속 시행할 만한 조치였다	54.7(1092)																													
5) 5부제운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8.1(162)																													

구 분	'91 조 사	'94 본 조 사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p>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69.8(837)</p> <p>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24.4(293)</p> <p>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4.8(57)</p> <p>4) 기타 1.1(13)</p>

이와 같이 '91조사와 '94본조사를 단순비교할 때 일반국민의 가치관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측면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로서 사회질서유지기능에 집중되어진 현상과 인식이 다양해져 가고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을 선택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으며, 국민의 법생활 중 법령정보를 알게 되는 경로가 세분화되고 인지욕구 또한 강해졌고, 법의 사용능력이나 분쟁의 해결방법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의 목표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나 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여서 동양적인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소외감이나 입법관련 기관의 입법작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여 국민의 입법참여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선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94본조사에 있어서 사회전반에 만연된 준법정신의 실종현상이 많이 개선되고 고발정신과 권리의식 또한 여전히 높아 법질서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법집행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법

의 규범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법보다는 잘 지켜지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94본조사의 이러한 결과는 '91조사에서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기준의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평가에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 유효하였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주는 것이며, 향후 한국사회에서의 법의식제고와 법치주의 확립에 한 차원 높은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 2. 外國의 法意識調査와의 比較

'91조사 당시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의 기존조사들이 비교연구가 힘들 만큼 단편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과 외국의 법의식조사에 관한 자료는 그나마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의 법의식 비교가 가능해질 경우 그 동안의 비교법연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갈 것이며, 法系간의 法繼受 실태가 명확해지고 법제도 운영의 전반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각국 국내법의 국제화와 국제질서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간의 동일차원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 및 통계수치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들은 한국 법학계의 또 하나의 과제로 추가된다.

여기에서는 '94본조사와 그 조사영역을 거의 달리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나카(田中成明)교수의 일본인의 법의식조사에 관한 논문<sup>20)</sup>과 미국과 일본에서의 법과 법률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적 비교를 시도한 가토(加藤雅信)교수의 보고서<sup>21)</sup> 등 두 가지 외국의 법의식조사를 소개함으로써 법의식조사에서의 국제적 비교의 유용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나카교수는 일본인의 권리주장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지고는

20) 田中成明, “日本人の法意識とその研究の現況について”, 「法意識の現状をめぐって」(有斐閣, 1985) 25~38面.

21) Masanobu Kato, "The Role of Law and Lawyer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in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1987, N. 2)pp.627~698. 가토교수와는 본원의 '91조사의 설문내용을 원문 그대로 일본과 중국·태국·베트남 등에서 동시에 조사하여 동아시아 법의식을 비교분석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94~'95년이다. 이 조사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국제간 법의식 비교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있지만 그 권리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권리를 「法律學的 權利概念」과 「通念的 權利感覺」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통념적 권리감각이 상당히 애매하고 막연한 이익요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 권리조정에 대하여는 본래 그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의견의 차이와 대립도 생겨나기 쉽고 또 단순한 이익주장과 비교하여 본다면 자칫 비타협적이고 정서적으로 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나카교수의 주장은 다음의 법의식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 i ) 최근 일본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가(그렇다 75.4%)
- ii ) 이러한 풍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이기적인 주장이 있다 42.8%, 모두가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 36.9%)
- iii )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그렇다 76%)
- iv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다소 희생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견해에 동의하는가(그렇다 57.9%)

이외에 다나카교수는 일본인의 권리주장이 적극적으로 되어 왔으나 소송회피심리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소송을 다른 채널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의 법의식의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다나카교수의 평가는 다음의 법의식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 i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법원에 소송할 것을 생각하는가(중대한 것이 아닌 한 생각하지 아니한다 60.6%)
- ii )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가(그렇다 37.7%, 그렇지 않다 11.5%)
- iii ) 국정을 움직이는 기관과 조직 중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법원 46.0%, 지방자치단체 7.0%, 대중매체 4.0%, 중앙관청 3.6%, 국회 3.6%, 기업 0.9%, 모르겠다 34.9%)

이상에서 다나카교수가 지적한 권리주장의 ‘법률학적 권리개념’과 ‘통념적 권리감각’의 구분은 우리의 법의식조사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높아진 권리의식 중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관념의 확산’이 아닌 ‘통념의 권리감각’적 성격을 띤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내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법치사회 실현은 자기의 권리주장과 타인의 권리존중의식이 양립하는데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인의 소송회피심리는 매우 일본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의 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 지나친 소송이용이 우려될 때가 오리라 예견된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법과 법률가의 역할의 차이점을 비교한 가토교수는 양국의 문화적 요인보다는 사법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차이와 효율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미·일 양국에서의 법과 법률가의 역할이 다른 연유를 찾고자 법조인 인구수·소송제기율의 다소·사법제도의 효율성과 법관인사정책·변호사 업무영역·법학교육의 차이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일본에서의 법교육이 강의식이고 법이론을 중시하여 법규해석에 치중한 점, 법관인사정책이 관료적이고 사회와의 격리를 조장한다는 점, 일본의 경우 회사의 법무담당·사법서사·행정서사·변리사·세리사 등이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너무 적다는 점, 미국에 비해 변호사의 주업무가 기소에 한정된 점, 그리고 소송제기를 일본에서는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쟁선포(declaration of war)로 간주하나 미국의 경우 심각한 일이 아닌 한 최후통첩(an ultimatum)으로 최후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사법현실에도 매우 시사적이다. 가토교수의 보고서와 '94본조사를 비교검토하면 법의식의 변화와 특성을 합리적인 행동양식보다는 전통적 문화요인에서 찾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님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전자가 이질

적인 법제도와 운영에, 후자는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의식조사의 국제적 비교는 각국의 법제도 및 운영실태와 법문화는 물론 사회운영원리를 동시에 고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국제간 이해와 교류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이는 법의식조사의 국제적 확장방향으로서 지향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3. 韓國人 法意識의 特徵

한국법제의 근대화<sup>22)</sup>는 갑오개혁을 그 기점으로 할 경우 10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구적인 법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의미 할 뿐 서구의 근대법제가 갖는 법정신 내지 법의식까지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법제의 근대화는 전통적인 법의식과의 갈등에서 시작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유교적 규범문화로 말미암아 ‘法의 支配’보다는 법과 도덕의 중간영역에 자리잡은 ‘禮의 支配’의 발달이 과잉형성 되었고 이는 근대법제의 도입에 대응될 만한 전통법제의 기반을 매우 취약하게 하였으며 향후 우리의 법현실에서 법의식과 법제도간의 괴리 가 심할 수 밖에 없는 토양을 낳았다.

전통적 법의식은 사회의 가치관변화에 의하여 일대 수정을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조선총독부가 서구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일본법을勅令형식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서구의 법제도가 들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서구의 법제도를 탄생케 한 서구사회와는 사회구조 자체가 판이하였다. 일제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시민사회로서 발전할 수 없었고 근대 서양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시민의식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일제식민통치는 한국전통사상이 스스로 근대적 자각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서구적 법의식과 봉건적 법사상 내지 법의식은 내재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60년대 이후 근대화 및 서구화과정에서 법제도와 전통적 법의식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권위주의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국민의 자발적인 법의식 제고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민주화과정에서 참여적 시민문화가 형성되면서 국

22) 근대화의 개념은 인간화·공업화·서구화·탈봉건화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가 곤란하다. 여기에서의 근대화는 서구화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민의 가치관은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신분상승의 노력은 이 전보다 소극적으로 되었고 의무감이나 질서에의 복종의식이 줄어들었으며 정치적 참여요구가 다양화되었다. '대중민주주의'가 '참여형민주주의'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은 상승된 반면 질서에의 복종의식이 저하되어 법과 질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법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었다. 그러나 참여의식 내지 권리의식의 신장은 시민의 비판정신을 고양시켜 작금의 준법정신의 부재상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감지울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민의 법의식의 변화와 동요는 언제나 존재한다. 단기간의 조망에 의하여 변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일정시간 관찰할 때 법의식의 변화가 아닌 동요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법의식 변화추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은 법치주의 실현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91조사와 '94본조사간의 단순한 통계수치의 변화를 3년동안의 국민법의식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두번의 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의 법의식 특징을 결론지우는 것도 무리이며 속단이다. 단순한 동요인지와 변화의 최근현상인지를 구별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는 단편적 이지만 외국의 법의식조사의 분석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한국인의 법의식의 특징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법의식의 대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대한 친근감이 부족한 편이다.

둘째, 법을 알아야 한다는 관념은 강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이 별로 없는 편이다.

셋째, 권리를 찾는 것을 매우 좋게 보는 편이고 시간과 비용만 허락한다면 소송이라는 수단을 쉽게 이용할 것이나 법에 호소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편이다.

넷째, 타인의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나 타인의 권리존중의  
식이 취약하다.

다섯째, 자연법적 사고 보다는 실정법적 사고가 강해져 가고 있다.

여섯째, 금전관계와 무관한 사건에는 관용적이다.

일곱째, 국가기관과의 일체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여덟째, 입법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

아홉째, 바람직한 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쉬운 법의 제정을 원한다.

### III. 社會變動과 價值觀의 變化

국민법의식의 변화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가정 및 학교교육은 물론 대중언론매체, 국가기관의 입법 및 법집행·법선언 등도 각각 법의식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요인들도 결국 그 사회의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되어 지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결코 편협한 접근방법은 아니다.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발전 및 그 전개과정을 주도한다. 가치관은 그 특성상 쉽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및 변화양상에 있어서 後天性과 狀況被拘束性을 갖는다.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전환시대에 들어섰고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조성된 상황에서 그 민주화과정은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화 및 그 제도화과정은 조선시대 집권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한 주자학이 남긴 유교적 문화유산과 전통, 일제식민화과정, 해방과 민족분단, 60년대 근대화과정과 70·80년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에 못지 않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 역사적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일제의 지배는 한국의 전통사상을 정리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억제하고 전통사상을 부정하여 한국사상으로 하여금 자기소외를 강요하며 근대적 자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70·80년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또한 근대화의 정치발전론적 인식하에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의 상위개념으로 근대화의 개념을 구축하여 국민대중의 참여의식을 원천봉쇄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인의 가치관은 비타협적이고 규범적인 사고유형과 무주체적이고 적응적인 사고유형이라는 이중구조로 틀지워졌다.

그러나 권위주의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기존의 정치·경제구조에서 소외된 집단을 정치과정속으로 편입하려는 민주화과정은 무엇보다 참여적 시민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한국사회는 조용한 혁명기<sup>23)</sup>에 접어들고 있다.

능동적 참여의식과 자아실현의 욕구증대, 계층문화의 집단적 정치화, 에너지보다는 정보·기술의 강조, 2차산업 노동력의 점진적 축소와 서비스산업부문의 확산, 여가문화의 발달 등 후기산업사회의 정후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특히 능동적 참여의식과 자아실현의 욕구증대는 민주화 및 그 제도화과정에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자제와 절약의 원리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개인의 자유확대 일변도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반제도적·반도덕적 상황으로 가는 문화를 냉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존재론적으로 후기산업사회라고 규정짓는 것은 속단이다. 아직도 산업화가 필요한 전근대적인 부문과 산업사회의 병폐현상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전산업사회·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가 그 상대적 범주에 있어서 달리할 뿐이다. 전산업사회·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 마다 각각 그 가치관의 모습과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같이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산업사회 및 후기산업사회적 가치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규범적 질서가 경직되고 완고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거나 발전을 가져오기가 힘들다. 여러가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전형화속의 개성유지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지표이며 이는 곧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의 지배'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어느 사회나 그 시대의 가치관은 법의식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와 그 변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수많은 법규법을 매개로 하여 작동되는 현대사회에서 규범력의 실효성

23) R.Inglehart는 *The Silent Revolution*(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7)라는 저서에서 후기산업사회에 나타난 중산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의식변화를 통계자료로 입증하였는데 그는 의식의 엄청난 전도현상에 대하여 '조용한 혁명'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을 담보하는 법의식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의 현주소를 진단하기에 앞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대표성과 적실성을 떠는 1) 가족구조의 변화, 2) 직장질서, 3) 여성의 지위 등에 관한 세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가족구조의 변화

1.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직장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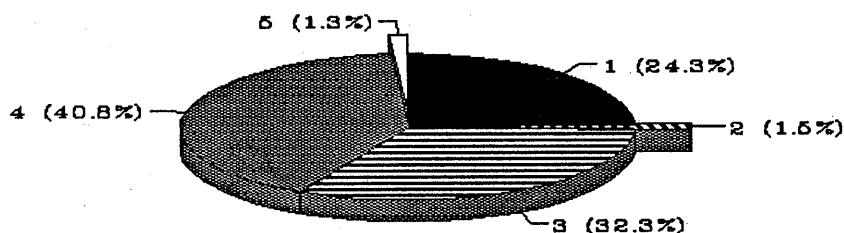
2.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 여성의 지위

3. 어떠한 경우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가

### 【 그림 1 】 가족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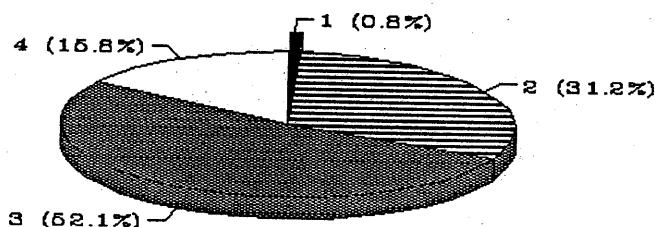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5. 기타

### 【 그림 2 】 직장질서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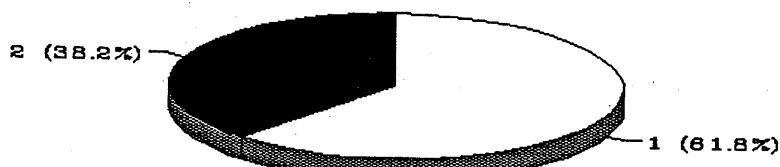
1. 무조건 들어준다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2. 가능한 한 들어준다  
4. 무조건 거절한다

### 【 그림 3 】 여성의 지위

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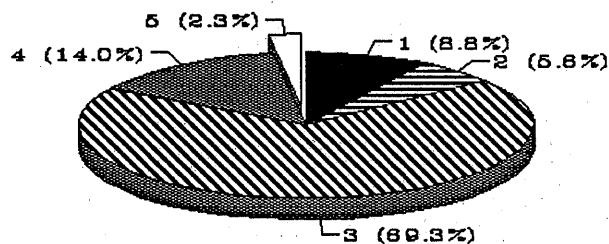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참여 2. 재산상속 3. 취업 및 승진 4. 가정에서의 역할 5. 기타

조사결과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로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40.8%)’ 또는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32.3%)’ 이루어지고, 직장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67.9%가 가능한 한 거절하거나 무조건 거절하고 있으며,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 중 69.3%가 취업 및 승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체가 과거 유교적 가족윤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서열의식과 禮 중심의 가족구조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합리성과 민주성이 존중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도 과거 가부장적 운영방식하에서 직장내 상명하달의 의사전달방식은 당연한 것이었고 다소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도 그 지시에 따랐던 것이 관례이며 종래의 직장질서의 풍토였던 반면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의 권위주의체제의 붕괴 조짐은 직장 및 사회생활에도 파급되어 직장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그것이 그대로 관철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91조사와 비교할 때<sup>24)</sup> 직장내의 민주화 내지는 개인화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민주화 및 그 제도화과정에서 표면화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관하여 응답자의 61.8%가

24) 본 보고서 36면을 참조할 것.

이를 인정하고 있고 취업 및 승진시에 그 차별과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는 크게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수용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나 의식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거주자일수록 그리고 학생의 경우 취업 및 직장에서의 승진시 불평등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취업욕구가 강한 20대 고학력 여성에게 고용상의 불평등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91조사와 비교할 때<sup>25)</sup>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는데 사회적 여건에 비하여 여성의 취업과 승진에의 욕구와 주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의식을 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1991년 개정된 민법상 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동등해진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 표 12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연령·학력·직업·지역규모별 반응**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정치참여	② 재산상속	③ 취업 및 승진	④ 가정에서 의 역할	⑤ 기타
연령	① 20대	254	7.5	2.0	79.1	9.1	2.4
	② 30대	211	10.9	3.8	66.8	15.2	3.3
	③ 40대	156	9.6	7.7	63.5	17.3	1.9
	④ 50대 이상	116	6.9	13.8	60.3	18.1	0.9
학력	① 국졸 이하	42	7.1	21.4	35.7	33.3	2.4
	② 중졸	80	10.0	10.0	56.3	23.8	-
	③ 고졸	331	10.0	6.3	66.8	15.1	1.8
	④ 대재 이상	283	7.1	1.1	81.3	7.1	3.5
직업	① 전문 관리직	79	6.3	1.3	81.0	6.3	5.1
	② 사무직	128	5.5	3.9	80.5	10.2	-
	③ 판매 서비스직	165	7.9	7.3	64.2	17.0	3.6
	④ 생산직	57	15.8	7.0	68.4	7.0	1.8
	⑤ 농어업	31	16.1	19.4	38.7	25.8	-
	⑥ 학생	60	5.0	-	83.3	8.3	3.3
	⑦ 주부	181	9.4	6.6	61.3	20.4	2.2
	⑧ 기타·무직	36	16.7	2.8	72.2	8.3	-
지역규모	① 대도시	364	8.8	4.9	72.8	11.5	1.9
	② 중·소도시	220	9.1	5.0	69.5	14.1	2.3
	③ 읍·면 이하	153	8.5	7.8	60.8	19.6	3.3

25) 본 보고서 36면을 참조할 것.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가정 및 직장생활 그리고 여성문제 등에서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참여욕구가 강한 것이 그 특징으로서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교적 전통을 한국인의 가치관으로 전제하고 국민법의식을 진단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국민의 법의식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를 들어 직장질서에 있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자는 권리의식이 매우 높아 부당한 입법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불량품을 샀을 때 고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의 능력과 용의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치관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영에 있어서 양자간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이다.

【 표 13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7. 직장질서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23. 부당한 법이 있다면	들어줌	1) 악법도 법 2) 제재가 두려워 48.7% 3) 시정을 요구 4) 지키지 않음 51.3%	
	거절함	1) 악법도 법 2) 제재가 두려워 36.4% 3) 시정을 요구 4) 지키지 않음 63.5%	
24. 불량품을 샀을 경우	들어줌	- 1) 어쩔 수 없음	21.4%
	거절함	- 1) 어쩔 수 없음	14.1%
34. 금전관계소송	들어줌	1)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 29.9% 2) 정의 · 질서를 찾기 위해 소송 21.6% 3) 시간 · 비용이 많이 들어 안함 37.8% 4) 법정에 서는 것은 불명예임 9.9%	
	거절함	1)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 33.7% 2) 정의 · 질서를 찾기 위해 소송 21.5% 3) 시간 · 비용이 많이 들어 안함 34.6% 4) 법정에 서는 것은 불명예임 1.1%	

## IV. 國民의 法에 대한 認識과 情緒

법의식이란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 심리상황으로서 법을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규범으로 알고 이를 지키고 생활화하려는 태도라고 넓게 정의내릴 수 있다.<sup>26)</sup> 이 경우 법의식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법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적 측면은 분쟁해결과정, 법관계 기관에서의 경험, 현행법령과의 충돌 등 실제적인 법생활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나지만 이와는 관계없이도 일정한 형태의 법의식을 유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국민법의식의 조사와 진단은 국민에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진단하기 위하여 1) 법에 대한 인상,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다섯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법에 대한 인상

1.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 ◇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6) 법의식의 개념규정에는 법감정과의 구분여하에 따라 협의 혹은 광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광의의 법의식개념을 따를 경우 이와 같은 개념규정을 내리게 된다. 본 보고서 16~17면을 참조할 것.

3.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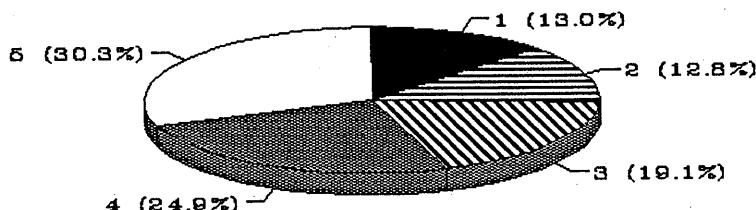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 1. 法에 대한 印象

‘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어지는 단어나 느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권위적(30.3%)이거나 편파적(24.9%)이라는 응답을 하여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였다.

【그림 4】 법에 대한 인상

1. 귀하는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공평하다 2. 민주적이다 3. 엄격하다 4. 편파적이다 5. 권위적이다

법에 대한 인상은 법적 문제 내지는 법적 경험과는 무관하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자의 법생활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위규범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들은 법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탈법행위자에 대한 비난도가 낮으며 법대로 사는 것이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못지 않게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과의 친분 관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조사결과의 문항간 교차분석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4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1. 법에 대한 인상**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4.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의 느낌	긍정적	1) 바람직	2) 합리적	63.1%
		3) 물인정	4) 불쾌	36.8%
5. 법을 어기고도 잘 살면 능력	부정적	1) 바람직	2) 합리적	42.9%
		3) 물인정	4) 불쾌	57.1%
22.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방법	긍정적	- 1) 2) 동의함		25.2%
	부정적	- 1) 2) 동의함		32.9%
27. 누구와의 친분이 법적 문제에 도움	긍정적	2) 법대로만 하면 됨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김	19.6% 7.2%
	부정적	2) 법대로만 하면 됨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김	11.2% 12.5%
	긍정적	1) 고위공무원	6) 정치인	8.1%
		2) 변호사		32.3%
	부정적	1) 고위공무원	6) 정치인	16.8%
		2) 변호사		22.5%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30. 관청에서의 일처리	긍정적 - 1) 원칙대로 하면 됨		82.4%
	부정적 - 1) 원칙대로 하면 됨		68.9%
32. 권력이나 재력의 재판 결과 영향	긍정적	1) 2) 영향을 미침 3) 4) 영향을 미치지 않음	89.6% 10.4%
	부정적	1) 2) 영향을 미침 3) 4) 영향을 미치지 않음	96.2% 3.8%

특히 연령이 낮거나, 학력 또는 소득이 높고 진보적일수록 법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민법의식에 있어서 계층간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국민법의식 제고의 방향 설정에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다.

【 표 15 】 법에 대한 연령·학력·소득·성향별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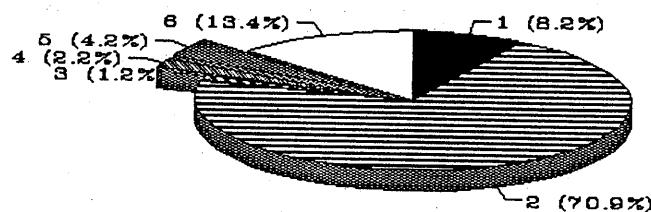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공정하다	② 민주적 이다	③ 엄격하다	④ 편파적 이다	⑤ 권위적 이다
연령	① 20대	336	7.7	13.1	17.0	23.5	38.7	
	② 30대	316	9.5	8.9	21.5	28.8	31.3	
	③ 40대	262	12.6	10.7	24.0	23.3	29.4	
	④ 50대 이상	285	23.5	18.6	14.4	23.5	20.0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23.3	15.8	14.2	27.5	19.2	
	② 중졸	165	14.5	17.0	26.7	20.0	21.8	
	③ 고졸	501	13.2	12.6	19.0	26.1	29.1	
	④ 대재 이상	411	9.2	10.5	17.8	24.3	38.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16.2	16.2	22.0	24.3	21.4	
	② 70~119만원	396	14.1	13.6	19.4	24.5	28.3	
	③ 120~199만원	419	12.6	11.0	18.1	24.3	33.9	
	④ 200만원 이상	200	9.0	11.5	17.5	27.5	34.5	
성향	① 진보적	364	9.3	14.6	16.5	23.9	35.7	
	② 중도적	327	13.5	11.9	20.2	25.4	29.1	
	③ 보수적	506	15.2	11.9	20.4	25.3	27.3	

## 2. 法規範力의 座標와 法의 存在價值에 대한 判斷

【그림 5】 법규범력의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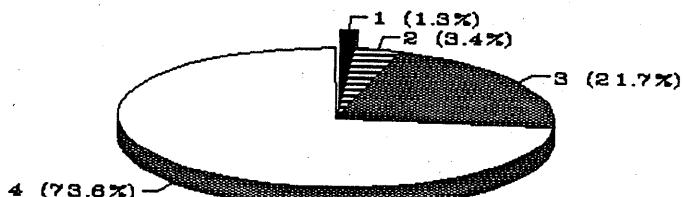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통치를 위하여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3. 사회개혁을 위하여  
4. 분쟁해결을 위하여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림 6】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3. 만약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2. 마찬가지일 것이다  
3. 불편할 것이다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법규범력의 좌표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대부분(70.9%)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을 통치나 형벌의 수단으로 여겼던 과거의 전통적 법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사회 계층 간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조건 및 가치가 '법의 지배'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유지·발전하여가는 것에 대한 공통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고소득·전문직일수록 법의 사회질서유지기능을 더욱 중히 여기고 있어서 중산계층 이상의 안정희구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저학력·저소득·생산직일수록 법의 약자보호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이 분포되어 있어 법규범력의 좌표가 결코 특정하게 고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91조사와 비교할 때<sup>27)</sup> 법의 사회질서유지기능에 대한 선택이 감소한 것도 '91조사 당시 급격한 민주화과정속에서 사회안정의 염원이 커졌던 양상이 '94본조사에 와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 표 16 】 법규범력의 좌표에 대한 학력·직업·소득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국가 통치를 위하여	②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③ 사회 개혁을 위하여	④ 분쟁 해결을 위하여	⑤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11.8	47.9	1.7	0.8	14.3	23.5
	② 중졸	165	9.1	57.0	3.0	1.2	5.5	24.2
	③ 고졸	502	7.0	75.3	1.0	2.0	4.0	10.8
	④ 대재 이상	410	8.3	77.8	0.5	3.2	1.0	9.3
직업	① 전문 관리직	124	6.5	83.9	0.8	1.6	3.2	4.0
	② 사무직	203	7.9	76.8	0.5	1.5	2.0	11.3
	③ 판매·서비스직	291	8.9	70.4	1.7	2.1	4.5	12.4
	④ 생산직	101	5.0	66.3	-	2.0	5.0	21.8
	⑤ 농어업	85	8.2	58.8	2.4	3.5	8.2	18.8
	⑥ 학생	80	8.8	71.3	-	7.5	-	12.5
	⑦ 주부	238	6.3	66.8	1.3	1.7	7.1	16.8
	⑧ 기타·무직	76	18.4	67.1	2.6	-	-	11.8
가구 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8.1	60.1	2.3	2.3	8.7	18.5
	② 70~119만원	395	9.1	69.9	1.8	1.5	3.3	14.4
	③ 120~199만원	419	8.1	74.7	0.5	2.4	2.4	11.9
	④ 200만원 이상	200	6.0	75.5	0.5	3.0	4.5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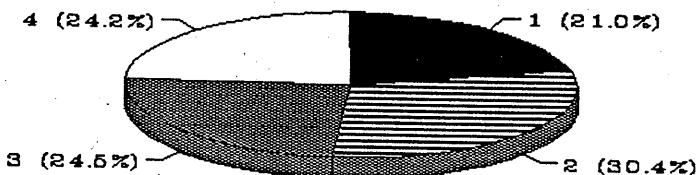
27) 본 보고서 37면을 참조할 것.

문항3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질 경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였지만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95.3%) 또한 법의 사회질서유지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91조사의 89.3%를 상회하고 있는 결과에 대하여는 법의 유용성과 가치를 더욱 인정한 경향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3.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法의 選擇

【그림 7】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바람직하다    2. 합리적이다    3. 물인정하다    4. 불쾌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합리적(30.4%)이거나 바람직하다(21.0%)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호소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국인의 소송회피문화가 불식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법의식 제고와 법치주의 실현에 매우 고무적이랄 수 있다. ‘바람직하다’ 또

는 ‘합리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의식이 높고 법적인 해결방법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의 선택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때가 아니라 불명확하면서도 비타협적 권리주장과 같은 ‘정서적 권리감각’<sup>28)</sup>에서 비롯된다면 결코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법에 의한 번번한 호소가 반드시 법치사회의 이상적인 모습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 표 17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4.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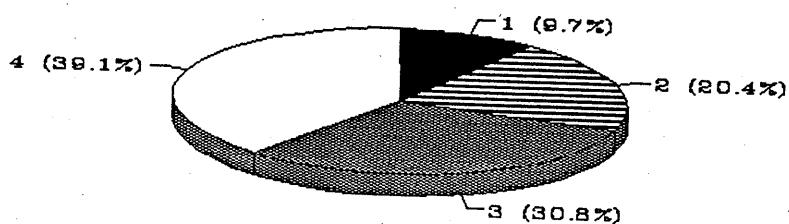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24. 불량품을 샀을 경우	바람직 · 합리적 -3) 고발함 4) 재판함 불인정 · 불쾌 -3) 고발함 4) 재판함	39.2% 29.4%	
25.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바람직 · 합리적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 불인정 · 불쾌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	29.9% 17.6%	
30. 관청에서의 일처리	바람직 · 합리적 1) 원칙대로 하면 됨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함 3) 압력을 넣음 4) 뇌물을 줌  불인정 · 1) 원칙대로 하면 됨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함 3) 압력을 넣음 4) 뇌물을 줌	78.2% 13.1% 1.5% 5.9%  71.7% 16.9% 1.9% 7.9%	
34. 금전관계소송	바람직 · 합리적 -1) 권리실현 2) 정의 · 질서 불인정 · 불쾌 -1) 권리실현 2) 정의 · 질서	62.2% 46.2%	

28) 본 보고서 61, 105면을 참조할 것.

#### 4. 脫法行爲者에 대한 評價

【그림 8】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불용적인 태도는 사회전반에 걸친 준법정신의 실종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의식이다. 특히 불법행위자에 대한 비판 및 고발정신은 이기적 권리의식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69.9%에 이르러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행태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위공무원·정치인 등 보다는 변호사를 찾고, 행정관청의 원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높게 표현되기 때문에 법의식의 제고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표 18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5.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27. 누구와의 친분이 법적 문제에 도움	동의함	1) 고위공무원	6) 정치인	16.5%
		2) 변호사		21.7%
	동의하지 않음	1) 고위공무원	6) 정치인	12.2%
30. 관청에서의 일처리	동의함	2) 변호사		27.7%
	동의함	1) 원칙대로 하면 됨		69.0%
		4) 뇌물을 줌		11.6%
	동의하지 않음	1) 원칙대로 하면 됨		77.0%
		2) 뇌물을 줌		5.4%

'91조사 당시 민주화과정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법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탈법행위자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은 법치주의 실현과 법의식 제고를 위한 청신호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적·정서적 차원의 전반적인 변화는 '94 본조사에 와서야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 듯하다.

법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특히 이에 대한 계층간의 이질감마저 보여 법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높이기 위하여는 매우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법을 선호하는 경향은 좋은 현상이나 법적 권리의식이 아닌 이기적 권리주장과 정서적 권리감각에 기인된 형태에 대하여는 계도·지양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법기능의 다양화 조짐과 법의 유용한 가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진 태도 등은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착근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 V. 國民의 法生活

현대사회에서 '법의 지배' 여부는 그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표식이기도 하다. 국가사회의 작동장치로서 수많은 법규범들은 오늘날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 그 자체를 법생활화하며 그 때마다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마치 정설인 양 받아들여져 왔다. 그 주요한 요인으로는 유교적 전통과 일제식민통치 및 파행적이었던 헌정사의 경험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사회전반적인 구조적 변화와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정치적 민주화과정 등으로 대량소비·대량생산·정보화 등 다원사회로서의 사회변동이 이루어지고 참여적 시민문화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그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전형화 속의 개성유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사회지표로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의 지배와 법생활의 철저화가 요구되어진다. 특히 참여적 시민문화는 참여의식 내지 권리의식을 고양하고 법생활을 활성화시키는 풍토를 조성하여 국민법의식의 제고에 긍정적인 기능을하게 된다.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준법정신 및 권리의식을 포함한 국민의 법생활화의 실태와 수준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조사내용은 크게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으로 요약된다.

## 1. 法生活과 法的 經驗

법의 생활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의식적·법제도적·사회적 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분쟁해결의 방법이나 권리주장의 형식으로서 법을 선택하거나 활용하는데 주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치주의로의 지향이 불가피한 우리 사회에서 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법과의 충돌은 종국적으로 개인의 집단생활에서 갈등을 가져오고 사회적 평화를 해치기 쉽다.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을 조사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사회의 안정성과 법치주의의 정착 가능성을 확보하는 작업과 직결된다.

일반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에 대한 평가는 크게 법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적 경험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위하여 1) 법인지 경로, 2) 법인지 욕구, 3) 법교육, 4) 법적 경험, 5) 법지식 등의 내용을 담은 몇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법인지 경로

1.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 ◇ 법인지 욕구

2.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는가
3.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해 본 적이 있는가
4.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의 약관을 보는가
5.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 법교육

6.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의 실태는 어떠하며보다 적절한 법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 법적 경험

7.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인가
8.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
9.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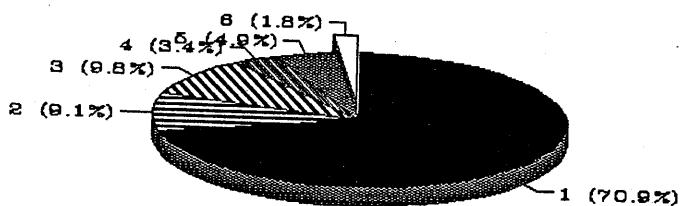
## ◇ 법지식

11. 현행민법상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 1) 法認知 經路

【그림 9】 법인지 경로

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5. 사건을 겪고 나서

2.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4. 학교에서 배워서  
6.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조사결과 응답자의 70.9%가 신문·TV 등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생활법률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로 확대되어가는 대중언론매체의 사회적 기능을 감안할 때 입법관계기관의 입법활동의 홍보는 신문이나 TV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생활과 법의식 수준을 높히고 나아가서 법치사회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행생활법률의 내용을 인지시키는 것은 법의 무지로 인한 위법 및 탈법 행위를 막게 되어 법의 규범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법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대중언론매체에서 생활법률의 소개에 할애하는 시간과 지면이 증가되었고, 정부를 비롯한 입법관계기관의 입법홍보활동도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일례로서 입법과정 중 입법전단계인 입법예고제의 경우 국민의 입법참여와 다양한 입법의견 반영을 통한 법의 민주성 내지는 합리성 확보에 기여하게 되는 우리나라 특유(외국에서의 그 사례를 찾기 힘든)의 제도였지만 과거에는 실제 운영면에서 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서 관보의 낮은 보급율은 입법예고제의 채택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입법관계기관의 입법홍보활동이 주효하여 일반국민의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입법예고의 인지가 많이 향상되었다. 향후 입법홍보활동을 위한 예산배정에 더욱 노력하여 생활법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높혀가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인지도는 법치주의의 확보에 있어서 입법과정의 민주성이나 법집행의 공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91조사와 비교할 때<sup>29)</sup> '94본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범인자 경로가 신문·TV 등 대중매체에 의한 일반적인 인지경로에서 책이나 잡지·정부홍보물 등 다양화<sup>30)</sup>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

---

29) 본 보고서 39면을 참조할 것.

30) 범인자경로에 있어서 향후 법령정보전산망은 매우 중요한 매체로 등장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는 필수적이며 법령정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본원에서 금년 7월1일부터 현행법령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KOLD)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어서 이를 더욱 촉각화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의 법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중요한 범인지 경로로서 컴퓨터전산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히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법인지 경로는 더욱 다양하여 소득이 높거나 또는 연령층이 낮은 경우, 그리고 관리직·생산직 등 법적 문제와의 접촉이 많은 직업일수록 학교교육이나 책이 생활법률의 중요한 인지경로가 되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계층에게는 주위사람들과의 대화나 정부홍보물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법인지 경로로서 그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활법률에 대한 다양한 문헌이나 강좌설정 그리고 농어촌에서의 담당행정공무원의 생활법률지도와 적극적인 정부홍보물의 배포가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 표 19 】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법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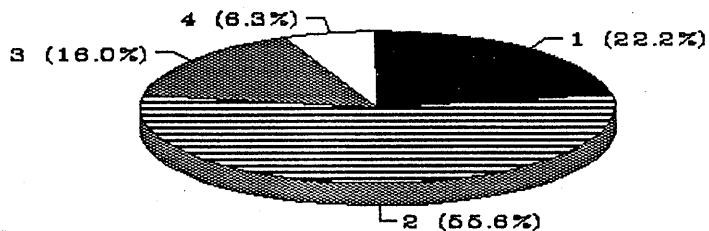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듣고서	② 주위사람들로부터 부터 듣고서	③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④ 학교에서 배워서	⑤ 사건을 겪고 나서	⑥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연령	① 20대	336	62.5	7.4	15.2	7.1	6.3	1.5
	② 30대	315	72.7	9.2	8.6	1.6	6.0	1.9
	③ 40대	262	73.7	8.0	11.1	1.5	4.2	1.5
	④ 50대 이상	286	76.2	11.9	3.8	2.8	2.8	2.4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65.0	16.7	3.3	2.5	5.0	7.5
	② 중졸	165	74.5	12.7	3.6	1.2	5.5	2.4
	③ 고졸	501	77.0	7.8	7.8	2.4	4.2	0.8
	④ 대재 이상	411	63.5	7.1	16.8	5.8	5.6	1.2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71.8	6.5	14.5	1.6	4.8	0.8
	② 사무직	203	63.1	8.9	15.8	5.9	4.9	1.5
	③ 판매·서비스직	290	73.8	8.6	10.3	1.4	4.8	1.0
	④ 생산직	101	75.2	9.9	5.0	1.0	7.9	1.0
	⑤ 농어업	86	58.1	18.6	4.7	2.3	7.0	9.3
	⑥ 학생	80	58.8	7.5	15.0	12.5	6.3	-
	⑦ 주부	238	78.6	10.1	4.2	2.5	2.5	2.1
	⑧ 기타·무직	77	76.6	2.6	9.1	5.2	5.2	1.3
가구 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71.3	11.5	7.5	2.3	4.6	2.9
	② 70~119만원	396	74.0	8.1	8.1	3.5	4.5	1.8
	③ 120~199만원	418	68.2	8.9	12.0	4.8	4.5	1.7
	④ 200만원 이상	200	71.0	9.0	11.0	1.5	6.5	1.0

## 2) 法認知 欲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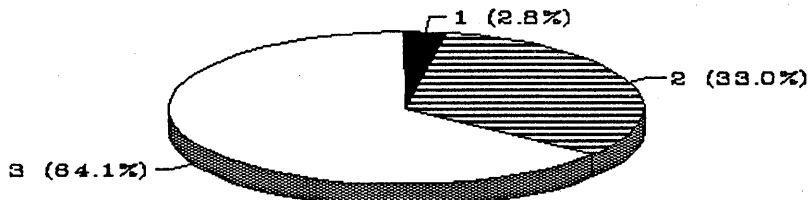
【 그림 10 】 법인지 욕구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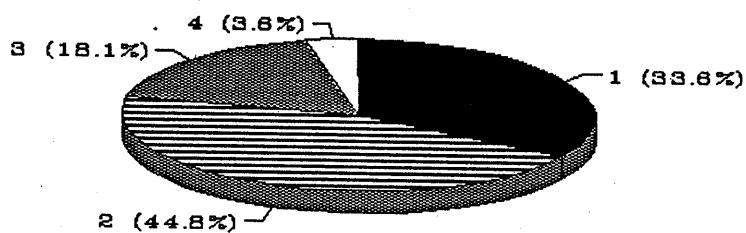
1. 자세히 본다 2. 대충 본다 3. 거의 보지 않는다 4. 전혀 보지 않는다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당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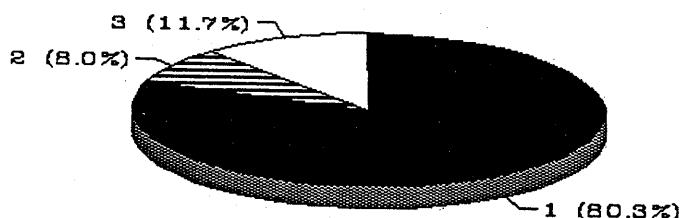
1. 자주 있었다      2. 한 두 번 있었다      3. 전혀 없었다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안본다
-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 읽어본 적이 없다

법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법생활의 철저화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며 법인지의 욕구가 강한 자는 고발정신이 높고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보장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참여적 시민문화가 정착된 사회일수록 법인지욕구는 강하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높아진 권리의식이나 고발정신에 비하여 법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다. 조사결과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본다'와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자세히 본다'는 응답이 각각 22.2%와 33.6%에 지나지 않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4.1%가 '전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권리주장에 있어서 아직은 '법적 권리개념'보다는 '정서적 권리감각'<sup>31)</sup>이 강한 한국인의 법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표 20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1. 은행저축시 통장약관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24. 불량품을 샀을 경우	자세히 본다	1) 어쩔 수 없음 3)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11.9% 40.4%
	대충 본다	1) 어쩔 수 없음 3)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13.0% 34.6%
	안본다	1) 어쩔 수 없음 3)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29.5% 22.6%
	있었지 모른다	1) 어쩔 수 없음 3)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34.9% 18.6%
	자세히 본다	1)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 3)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안함	33.6% 32.6%
	있었지 모른다	1)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 3)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안함	16.3% 46.5%
34. 금전관계소송			

31) 본 보고서 61, 105면을 참조할 것.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주장이 지배적인 경우 법치주의 확립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일반국민의 법생활과 법의식이 보다 확고해지고 높아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인지도와 그 욕구 그리고 법과의 친숙도 내지는 일체감이 강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범인지 욕구가 강할수록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사실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 표 21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18.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보는가**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4.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table> <tr> <td>본다</td> <td>1) 바람직 2) 합리적 3) 물인정 4) 불쾌</td> <td>55.3% 44.7%</td> </tr> <tr> <td>보지 않는다</td> <td>1) 바람직 2) 합리적 3) 물인정 4) 불쾌</td> <td>43.4% 56.7%</td> </tr> </table>	본다	1) 바람직 2) 합리적 3) 물인정 4) 불쾌	55.3% 44.7%	보지 않는다	1) 바람직 2) 합리적 3) 물인정 4) 불쾌	43.4% 56.7%
본다	1) 바람직 2) 합리적 3) 물인정 4) 불쾌	55.3% 44.7%					
보지 않는다	1) 바람직 2) 합리적 3) 물인정 4) 불쾌	43.4% 56.7%					

그러나 일반국민의 법조문과 법률용어에의 친숙도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3%(읽어보지 않았다는 경우 포함)가 법조문이나 법률용어의 난해성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나 직업에 있어서 법조문이나 법령용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20대 내지 40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과 학생 중에 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행법령이 접할수록 그 법조문과 법령용어의 난해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아예 ‘읽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데 이는 법령의 홍보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법조문과 법령용어의 난해성에 대한 압도적인 지적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법조 및 법학계는 국민 법생활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표 22 】 법률용어 난해도에 대한 연령·학력·직업·소득·종교·성향·지역규모별 반응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읽어본 적이 없다
연 령	① 20대	336	88.7	7.1	4.2	
	② 30대	316	84.5	7.0	8.5	
	③ 40대	262	79.4	7.6	13.0	
	④ 50대 이상	285	66.7	10.5	22.8	
학 력	① 국졸 이하	120	63.3	8.3	28.3	
	② 중졸	164	67.1	7.3	25.6	
	③ 고졸	502	81.5	8.8	9.8	
	④ 대재 이상	411	89.3	7.3	3.4	
직 업	① 전문·관리직	124	88.7	8.1	3.2	
	② 사무직	203	86.7	8.4	4.9	
	③ 판매·서비스직	291	77.0	8.9	14.1	
	④ 생산직	101	83.2	4.0	12.9	
	⑤ 농어업	86	58.1	16.3	25.6	
	⑥ 학생	80	92.5	3.8	3.8	
	⑦ 주부	238	78.2	6.3	15.5	
	⑧ 기타·무직	76	77.6	9.2	13.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69.0	9.2	21.8	
	② 70~119만원	396	78.5	9.3	12.1	
	③ 120~199만원	419	84.5	6.0	9.5	
	④ 200만원 이상	200	85.5	8.0	6.5	
종 교	① 불교	342	75.1	9.4	15.5	
	② 기독교	258	82.9	7.4	9.7	
	③ 천주교	121	86.0	0.8	13.2	
	④ 유교	27	77.8	11.1	11.1	
	⑤ 무종교	441	81.2	9.3	9.5	
	⑥ 기타	10	90.0	-	10.0	
성 향	① 진보적	364	83.5	6.0	10.4	
	② 중도적	328	82.6	9.8	7.6	
	③ 보수적	506	76.7	8.1	15.2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85.2	6.6	8.2	
	② 중·소도시	340	78.2	8.5	13.2	
	③ 읍·면 이하	272	72.4	10.3	17.3	

이에 법제처에서는 법제의 민주화 및 법의 생활화를 위한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순화·정비하여야 할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용어를 입법부·사법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정비의견을 제출케 한 후 이 정비의견을 종합하여 국어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제처내에 둔 「법령용어심의회」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법령용어순화편람』을 펴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1차(1985)·제2차(1986)·제3차(1990)에 걸쳐 편람이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수록된 용어는 모두 1,820여개이다.

그러나 1991년 말에 「행정용어바르게쓰기에관한규정」의 제정에 따라 법령용어를 포함한 행정용어 전반에 걸친 순화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기존 법령용어순화작업을 통폐합하여 총무처와 법제처, 그리고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행정용어순화작업을 하였는데 1992년 12월에 발간된 『행정용어순화편람』<sup>32)</sup>은 국어심의회,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등의 심의조정을 거친 용어가 8,637개로 확정되었다. 이 중 법령용어가 1,000여개이고, 기존 제1·2·3차의 『법령용어순화편람』까지 합하면 2,9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법생활화를 위한 법령용어순화작업은 법령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우리의 법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부문이라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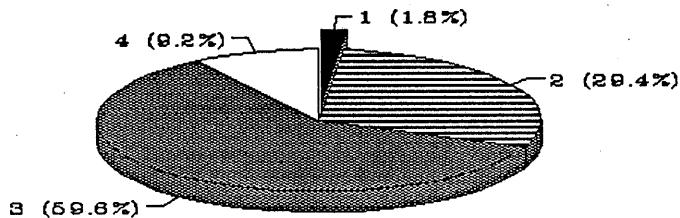
32) 대한민국정부, 『행정용어순화편람』(총무처, 1992).

### 3) 法教育

【그림 11】 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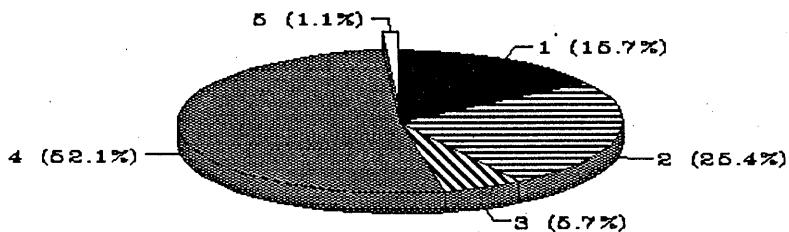
20. 다음은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되고 있다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3.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4.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 기타

조사결과 현재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실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68.8%) 비판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sup>33)</sup>을 분석하면, 국민학교에서는 ① 학교생활·이웃생활에서의 규칙, ② 우리들의 모습, ③ 고장의 공동생활과 질서, ④ 사회규범과 준법정신, ⑤ 국가와 올바른 국민생활, ⑥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등이 그 주요골자로 이루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① 사회생활과 규범·국가입법·민주주의와 법·준법정신과 사회발전, ③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① 법의 의의와 준법정신, 국가생활과 법·개인생활과 법·사회 속에 생활과 법, ② 우리나라의 헌법 등이 주요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초·중·고등 교육단계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헌법교육과 공동생활에서의 준법정신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의 정립(52.1%)’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25.4%)’에 대다수의 응답이 집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교육과정 개편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올바른 인간상 정립’은 국민 법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법교육적 측면의 한 지표로서 동양적인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중 법교육 부문이 지나치게 헌법내용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과 국가적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과거 법교육이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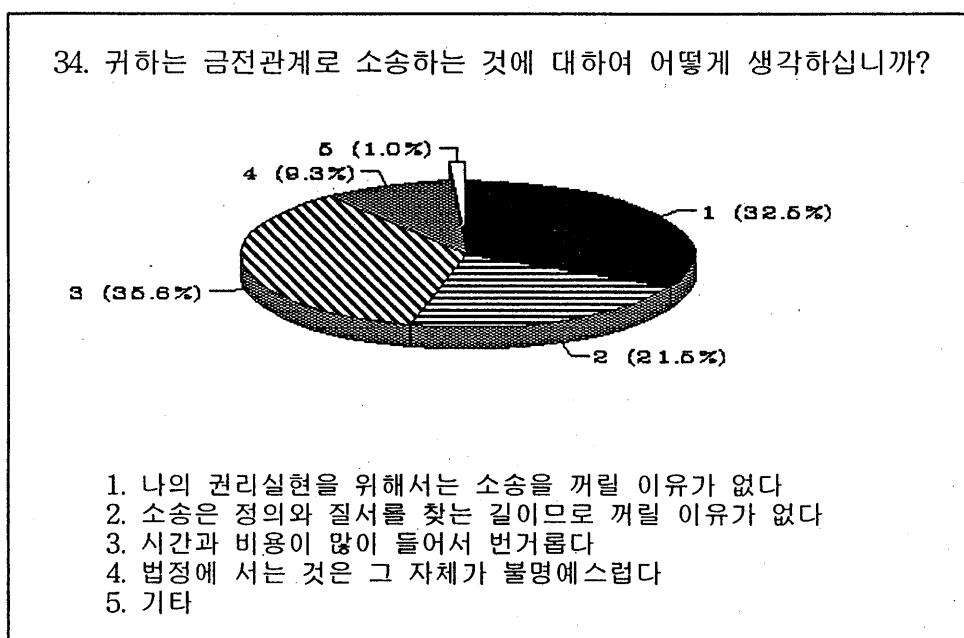
---

33) 여기에서 참조한 사회과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으로서 국민·중학교는 95년2월까지 고등학교는 96년 2월까지 사용되는 현행교과서의 교육과정이며 ①, ②, ③ 등의 부호는 학년표식임.

(15.7%)’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25.5%)’에 법교육의 중점을 두어져야 한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문화와 법현실이 우리와는 판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1978년 법교육법(Law-Related Education Act)을 제정하면서 법교육의 실체를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에서 법과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이해·기능·태도·평가를 개발할 기회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둔 경과를<sup>34)</sup>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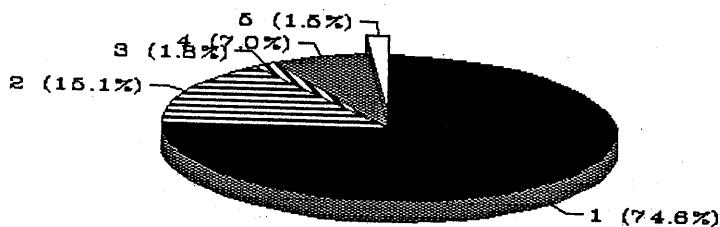
#### 4) 法的 經驗

【그림 12】 법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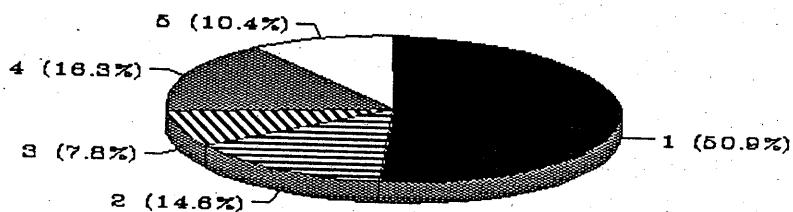
34) Carolyn Pereira,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ocial Science Education* (1988), p.11.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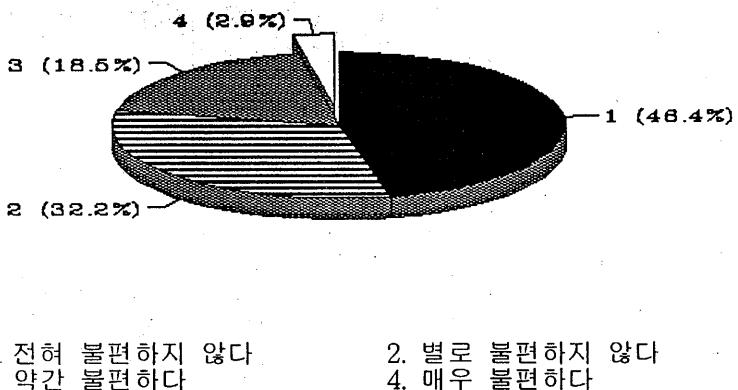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5. 기타

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떤 하신지요?



국민 법생활의 행위 및 심리적 측면은 법적인 문제로 인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인은 ‘한술에 밥먹고 송사한다’라는 속담처럼 소송회피심리가 농후하고 행정관청에 찾아가는 것을 꺼리며, 법과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과거 법의식에 관한 기존 정설이었으나 '91조사 결과<sup>35)</sup>는 이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94본조사에서 더 뚜렷해졌는데 54%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내지는 정의실현으로 생각함으로써 한국인의 법의식 중 소송회피심리가 농후하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좋은 징표가 된다. 그러나 학력이 낮거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수성향이거나 여성인 경우 아직도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것을 시간·비용·불명예 등의 이유로 꺼리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35) 본 보고서 42면을 참조할 것.

【 표 23 】 소송에 대한 성·연령·학력·성향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 도 수 (명)	①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 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② 소송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	③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④ 법정에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⑤ 기타
변 수							
성	① 남 ② 여	633 564	33.6 31.0	22.6 20.4	33.3 38.3	9.3 9.4	1.1 0.9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4	40.8 28.5 31.3 28.2	18.8 23.7 20.2 23.6	32.7 38.9 38.5 32.7	7.1 8.2 8.4 14.1	0.6 0.6 1.5 1.4
학 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4 502 410	29.2 25.6 32.3 36.6	21.7 23.2 22.9 19.0	32.5 39.0 35.9 34.9	11.7 12.2 8.8 8.3	5.0 - 0.2 1.2
성 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5	37.1 32.0 29.3	23.1 23.8 19.0	33.0 34.1 38.6	5.8 9.8 11.7	1.1 0.3 1.4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91조사 당시 약 65%가 원칙대로 하면 일이 잘 처리된다고 응답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동일한 설문에 '94본조사에서도 약 75%가 저자세·압력·뇌물공세 등 보다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행정능률화 또는 민원처리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 표 24 】에서 보듯이 젊은 층이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분포에 있어서 전문관리직·사무직·학생층에서 저자세·압력·뇌물공세 등을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에 유효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이 계층에 법불신풍조가 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표 24 】 연령·학력·직업·소득·지역규모별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행태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원칙대로 하면된다	② 무조건 잘 부탁 한다고 해야 한 다	③ 압력을 놓어야 한다	④ 작으나 마땅히 물을 주어야 한다	⑤ 기타
연 령	① 20대	336	69.6	15.2	2.7	11.6	0.9
	② 30대	316	73.1	16.8	1.3	8.2	0.6
	③ 40대	262	76.3	13.0	2.7	5.0	3.1
	④ 50대 이상	285	80.7	15.1	0.4	2.1	1.8
학 력	① 국졸 이하	120	78.3	12.5	0.8	3.3	5.0
	② 중졸	165	84.8	11.5	0.6	1.8	1.2
	③ 고졸	502	76.3	14.1	1.8	7.0	0.8
	④ 대재 이상	411	67.4	18.5	2.4	10.2	1.5
직 업	① 전문·관리직	124	65.3	17.7	3.2	10.5	3.2
	② 사무직	203	70.9	17.7	2.5	7.9	1.0
	③ 판매 서비스직	290	77.2	15.5	0.7	5.5	1.0
	④ 생산직	101	75.2	13.9	1.0	8.9	1.0
	⑤ 농어업	86	82.6	11.6	-	1.2	4.7
	⑥ 학생	80	62.5	20.0	2.5	13.8	1.3
	⑦ 주부	238	78.6	13.0	2.1	5.0	1.3
	⑧ 기타·무직	77	80.5	9.1	2.6	7.8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76.3	13.3	2.3	5.8	2.3
	② 70~119만원	396	78.3	13.1	1.0	6.8	0.8
	③ 120~199만원	419	73.7	15.0	2.4	7.4	1.4
	④ 200만원 이상	200	67.5	20.5	1.5	8.0	2.5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71.6	17.4	2.2	7.2	1.7
	② 중·소도시	340	78.5	12.9	0.9	7.4	0.3
	③ 읍·면 이하	272	76.5	12.9	1.8	6.3	2.6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로 '상식적으로(50.9%)',  
또는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7.8%)'라고 응답하  
여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법생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일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91조사와 비교할 경우<sup>36)</sup> '법대로만 하면 된다', '법이

36) 본 보고서 42면을 참조할 것.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등에 응답이 미미하나마 집중되어 가고 있어서 향후 법생활의 활성화에 좋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 '법대로 하면 된다' 또는 '잘못된 법을 시정한다'에 응답한 자의 경우,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관청에 가서는 원칙대로 사무처리를 하며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어 이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표 25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2.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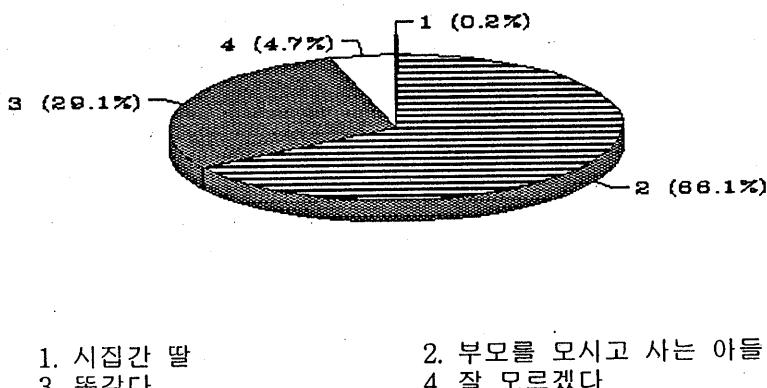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23. 부당한 법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 1) 악법도 법 2) 제재가 두려워 7.7% 3) 시정을 요구 4) 지키지 않음 76.0% * 평균 1) 2) 39.5% 3) 4) 60.5%
30. 관청에서의 일처리	법대로 하면됨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84.5% 4) 뇌물을 준다 1.1% * 평균 1) 74.9% 4) 7.9%
34. 금전관계소송	시정을 요구 - 3)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안한다 29.1% * 평균 3) 36.1%

국민 법생활의 행위 및 심리적 측면은 새로운 법제도에의 적응도를 측정함으로써도 평가할 수 있는데 1993년 8월 12일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대체적으로(78.6%)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거래관행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경제윤리를 바로잡는다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롭게 실시되는 법제도 중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의무에 크게 관련될수록 입법취지의 공명성이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그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에 근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 5) 法知識

【 그림 13 】 법지식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199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 중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29.1%가 정답을 선택하여 '91조사의 19.9%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는 입법경과기간이 더 길어진 시점에서의 조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안 정부나 신문·TV방송 등 대중언론매체의 법제홍보활동이 상당히 주효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 법생활이 보다 활성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법지식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평가는<sup>37)</sup> 국민법의식의 제고와

37) 본 조사는 가치관 변화에 따른 법의식 변화,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정서, 일상 생활에서의 법적 경험과 행동양식,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에 관한 물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지식에 대한 질문을 단 한가지 문항으로 한정하였다. 법지식에 관한 문항이 국민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법지식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다양한 설문지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여건상 제외된 것이다. 특히 법지식과 법적 신뢰의 상관관계의 조사는 국민법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안강구에 유용하다. 국민의 법생활에 있어서 '사실의 무지는 용서되지만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tia excusatur, non juris sed facti)'라는 법언을 상기할 때 현행법제의 개선과 홍보 및 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국민의 법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이란 탄생되는(제정·공포·시행) 순간 법에 대한 인지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그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 표 26 】에서 보듯이 학력·직업·소득·지역규모 등에 있어서 낮은 계층일수록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법교육 및 법제홍보에 관한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표 26 】 연령·학력·직업·소득·지역규모별 법지식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시집간 딸	②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똑 같다	④ 잘 모르겠다
연령	① 20대	336	0.3	56.0	39.3	4.5	
	② 30대	316	-	62.7	32.6	4.7	
	③ 40대	262	0.4	67.2	26.3	6.1	
	④ 50대 이상	286	-	80.8	15.7	3.5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	80.0	16.7	3.3	
	② 중졸	165	-	81.2	10.9	7.9	
	③ 고졸	502	0.2	68.5	26.5	4.8	
	④ 대재 이상	411	0.2	53.3	43.1	3.4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	56.5	41.1	2.4	
	② 사무직	203	1.0	59.1	37.9	2.0	
	③ 판매·서비스직	291	-	72.2	23.4	4.5	
	④ 생산직	101	-	78.2	16.8	5.0	
	⑤ 농어업	86	-	84.9	9.3	5.8	
	⑥ 학생	80	-	46.3	50.0	3.8	
	⑦ 주부	238	-	65.5	27.3	7.1	
	⑧ 기타·무직	77	-	62.3	29.9	7.8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	74.7	20.1	5.2	
	② 70~119만원	396	-	67.7	26.0	6.3	
	③ 120~199만원	419	0.5	65.2	30.8	3.6	
	④ 200만원 이상	200	-	56.0	40.5	3.5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0.2	64.1	31.3	4.4	
	② 중·소도시	340	-	66.2	29.1	4.7	
	③ 읍·면 이하	272	0.4	70.2	24.3	5.1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국민의 법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법지식이 풍부할수록 법의 규범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속단은 【표 27】에서 보듯이 금물이다. 법지식과 법과의 일체감이 결코 비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법지식 문항의 구성으로 법지식과 법적 신뢰의 상관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표 27】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40. 누가 더 많은 상속분을 갖는가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28. 국회에서 만든 법은 우리의 것인가	시집간 딸 1) 2) 그렇다 50.0% 3) 4) 그렇지 않다 50.0%
	부모를 모시는아들 1) 2) 그렇다 40.4% 3) 4) 그렇지 않다 59.6%
	똑같음 1) 2) 그렇다 31.2% 3) 4) 그렇지 않다 68.8%
	잘모름 1) 2) 그렇다 41.1% 3) 4) 그렇지 않다 59.0%

이상에서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을 분석한 결과, 법생활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인지 경로가 다양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행정관청에서의 일처리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사고가 정착되었으며 대의명분이 뚜렷한 새로운 법제에의 적응도가 높고 단편적이나마 법지식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는 정부관계당국의 입법홍보활동이나 대중언론매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컸다. 그러나 높아진 권리의식이나 주장에 비하여 법을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고 법률용어의 난해성에 대한 대부분 지적은 법생활화가 정착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젊은 층이나 고소득층 및 고학력 전문직 계층에서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형태에서 보여준 법불신풍조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부문으로 강조되고 있다.

## 2. 遵法精神과 權利意識

‘법은 사람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정하여도 이익이 없다(frustra feruntur leges nisi subditus est obediensibus)’라는 법언처럼 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법치주의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식이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고쳐질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의 정당성에 중대한 파훼가 있는 경우에도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옳기 때문에 지키는 정신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과거 일제식 민지통치하의 애국적 반항의식과 수탈정책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현정사의 고행 등으로 인하여 준법정신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기초마저 흔들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여야만 법치주의의 확립을 향한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혁주소를 진단할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대한 지적은 매우 강한 집중도를 보인 반면 권리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떠한 의미에서 ‘법과 질서는 잘 안지키면서 자기 이익과 권리를 챙기는데는 급급한 사회’라는 최악의 반법치상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한 사회의 준법질서는 그 사회의 시민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 준법정신이 법에 복종하는 내면적 자발정신이라면, 시민정신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판정신이요, 고발정신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의식은 시민의 비판 및 고발정신을 높이고 나아가서 권리의식의 신장을 가져온다. 이 단계에서 권리의식은 상당히 애매하고 막연한 이의요구까지도 포함하는 ‘情緒的 權利感覺’이 아닌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측면을 갖춘 ‘法的 權利概念’<sup>38)</sup>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 사

38) 田中成明은 “日本人の法治主義とその研究の現況について”, 32面에서 ‘법률학적 권

회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위한 법의식 수준의 고양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화과정에의 진입이 본격화된 90년대에 와서 참여적 시민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참여의식과 비판정신이 높아가고 권리의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것과 국민의 비판의식이나 참여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준법정신이 제위치를 찾아가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권리의식의 신장은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이어질 때 사회의 탈·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법준수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1) 준법정신, 2) 고발정신, 3) 권리의식이라는 세차원에서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는 이에 관한 열 가지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 준법정신

1.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은 누구인가
2. 정치·행정·경제·노사관계·교육계·교통질서·행락질서 등에서 법질서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 고발정신

4.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5.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

리개념'과 '통념적 권리감각'을 구분하여 통념적 권리감각의 모순으로 애매모호성, 불명확성, 비타협성, 정서적 측면이 강한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6.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7.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는 무엇이며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 권리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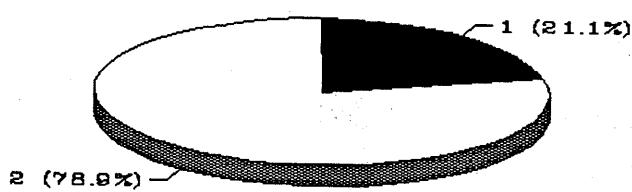
8.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9. 불량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10.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1) 違法精神

【 그림 14 】 준법질서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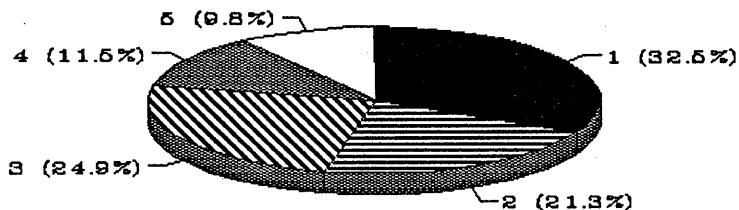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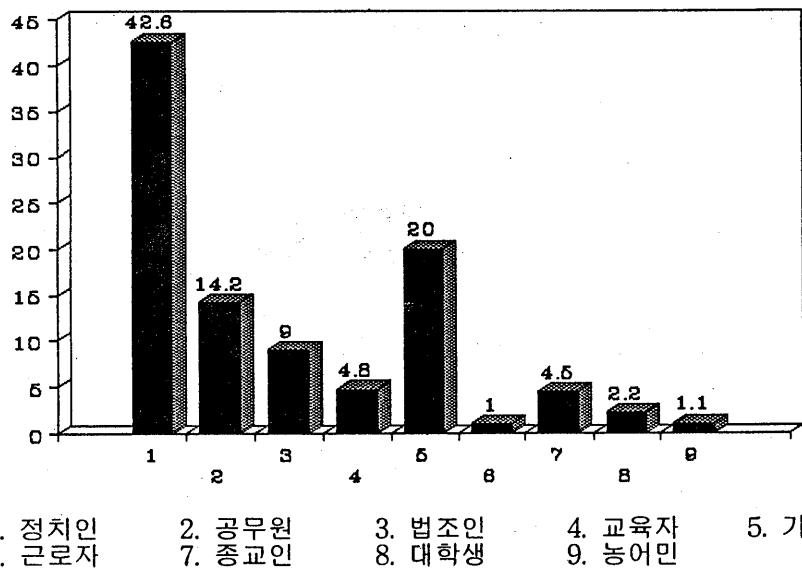
2. 그렇지 않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2. 법이 불공평하므로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5. 법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중 78.9%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준법질서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응답자 개개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준법질서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다소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준법정신의 결여가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과 상승작용을 하여 법경시풍조를 낳을 경우 법치국가 실현은 요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일면 높은 준법정신의 수준을 요구하는 국민의 비판정신의 반영으로서 이번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아진 비판정신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 정신이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정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91조사(82.4%)와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점은 이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한편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1.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9.8%)'보다는 주로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2.5%)',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7%)', '법이 불공평하므로(21.3%)' 등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준법질서 확립의 제일차적 책임을 일반국민의 법의식 보다는 법관계자에게서 찾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준법질서를 깨뜨리는 주요 집단으로 정치인(42.6%), 기업인(20.0%), 공무원(14.2%), 법조인(9.0%), 교육자(4.8%), 종교인(4.5%) 등을 꼽은 것은 이의 표현이다.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이 다시금 강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만으로 우리 사회의 준법질서가 올바로 선다면 국민법의식 차원에서의 준법정신을 다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인에게 전반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흔히 한국인은 사회 생활을 법 이전의 대인적인 상호신뢰와 情誼에 기반을 두고 행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본다. 법에 신세를 지지않고 살거나 법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인간을 다스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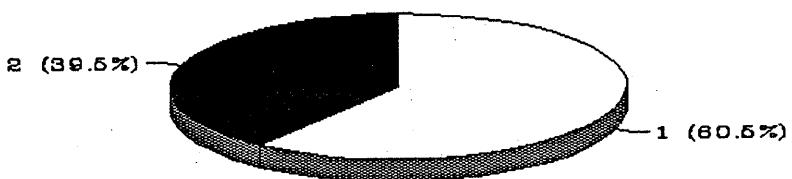
다는 인식<sup>39)</sup>이 한국인의 법의식에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국민법의식의 저하를 가져오고 동시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고 만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한국인 특유의 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91조사에 이어 사적모임에서의 규칙준수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사적모임인 동창회나 계에서의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60.5%를 차지하였다. 이는 '91조사의 52.9%를 상회하는 결과로서, '한국인은 약속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평가는 이미 그 기반을 상실하여 벼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원인도 주로 생활이 바쁜 경우(89.0%)이지 친한 사이라서(16.2%), 별책이 약해서(6.8%), 이익이 없어서(12.0%) 등과 같이 준칙의 생활화에 반하는 습성에서 비롯되고 있지는 않다.

### 【 그림 15 】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준수

12.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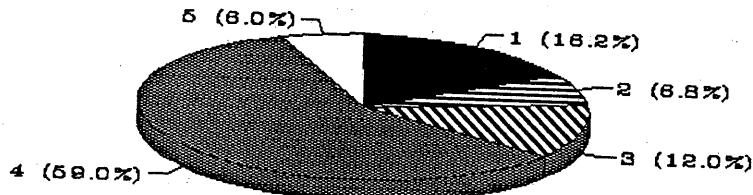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9) 윤여립, "한국인의 법의식", 『교육논총제5호』(연세대, 1972, 5), 1면.

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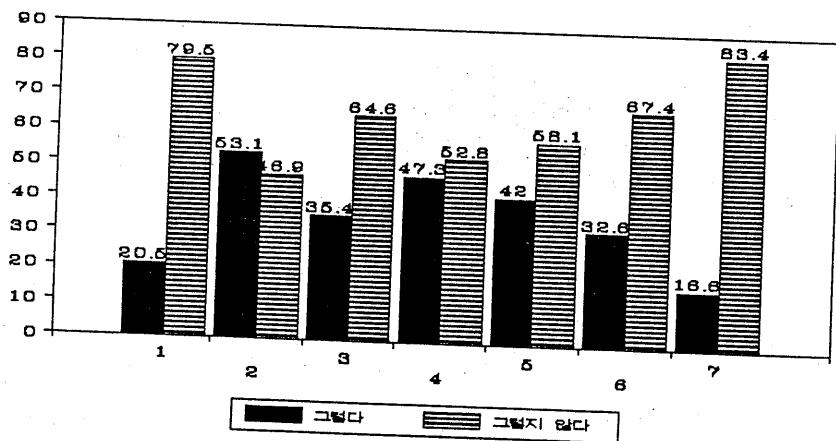


1. 친한 사이라서      2. 벌칙이 약해서      3. 이익이 없어서  
4. 생활이 바빠서      5. 기타

각 분야별 법준수도의 경우 현재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91조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동안의 변화를 통하여 각 분야별 법준수의 현황에 대한 유용한 통계수치를 얻을 수 있다.

#### 【그림 16】 분야별 법준수도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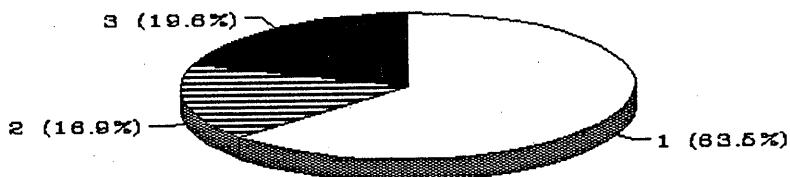
1. 정치분야      2. 행정분야      3. 경제계      4. 노사관계  
5. 교육계      6. 교통질서      7. 행락질서

'91조사와 비교하여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의 분포를 비교하면, 정치분야(17.4%→20.5%), 행정분야(46.4%→53.1%), 경제계(28%→35.4%), 노사관계(30.7%→47.3%), 교육계(59.9%→42.0%), 교통질서(35.9%→32.6%), 행락질서(20.3%→16.6%) 등으로 정치분야·행정분야·경제계·노사관계 등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개선이 보이는 반면, 교육계·교통질서·행락질서 등은 도리어 후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는 조사기간 직전에 발생한 일련의 교육계 비리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40)</sup>

## 2) 告發精神

【 그림 17 】 고발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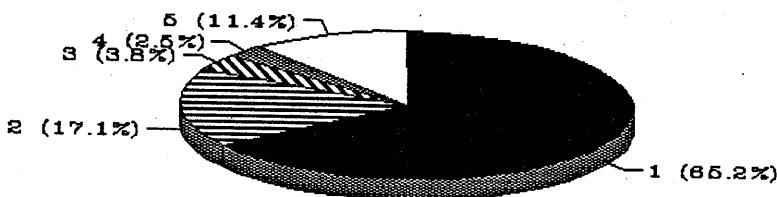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림 8】 참조)
13.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40) 본 보고서 30면을 참조할 것.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당연히 신고한다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고발정신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정신과 비판정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의식이 확장될수록 어느 사회에서든 무규범의 상태를 가끔 보이는 과도적 현상이 사라지고 법치주의의 제도화단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게 마련이다.

고발정신은 크게 개인적 비판의식과 사회적 비판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조사의 문항13은 전자를, 문항5·15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자 자신이 경범죄처벌법규를 위반했을 때 63.5%가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탈법행위자에 대한 비판정신과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정신에 대하여도 각각 69.9%와 93.7%라는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조사 결과<sup>41)</sup>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서 국민

41) 본 보고서 38, 47면을 참조할 것.

법의식수준의 고양과 향후 법치사회의 실현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초질서위반<sup>42)</sup> 즉,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도리어 회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계층의 법경시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 표 28 】 기초질서위반 단속에 대한 연령·학력·성향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 수		빈 도 수 (명)	① 법을 어겼으 므로 처벌받 는 것은 당 연하	②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 각한다	③ 도덕적으로 비 난할 수 있으 나 법적 처벌 은 지나친다
연령	① 20대	336	48.5	25.3	26.2
	② 30대	316	62.0	15.2	22.8
	③ 40대	262	68.7	16.4	14.9
	④ 50대 이상	286	78.0	9.4	12.6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81.7	6.7	11.7
	② 중졸	165	68.5	13.9	17.6
	③ 고졸	502	63.9	15.9	20.1
	④ 대재 이상	411	55.5	22.4	22.1
성향	① 진보적	364	58.5	20.3	21.2
	② 중도적	328	61.9	15.2	22.9
	③ 보수적	506	68.0	15.6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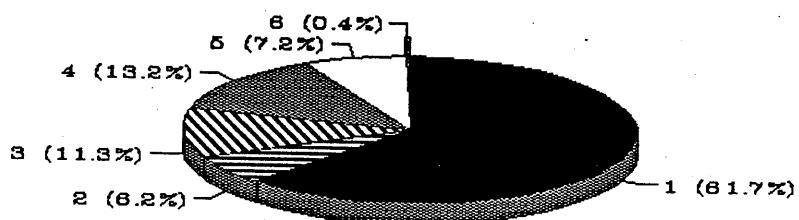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42) 경찰청의 1994년 7월 4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단속이 1천25만여건으로서 국민 4명 중 1명이 적발된 셈이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자는 줄게 되겠지만 범죄예방이라는 기본업무에 대한 소홀과 타율적 기초질서유지의식의 배양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도 및 경고적 차원의 형태를 띤 보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 그림 18 】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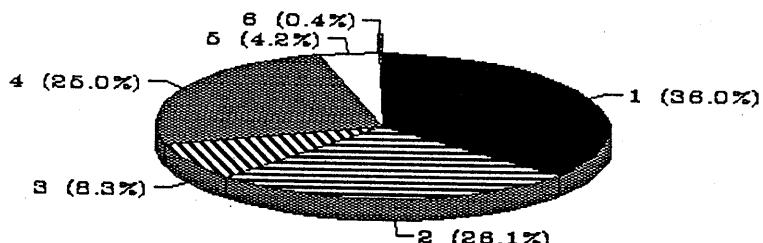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1. 부정부패      2. 탈세      3. 부동산투기사범      4. 환경사범  
5. 경제사범(매점·매석 등)      6. 기타

나)



1. 성폭행      2. 조직폭력배      3. 마약사범  
4. 강·절도사범      5. 음주운전      6. 기타

조사결과, 정치 및 경제사범에 대하여는 부정부패(61.7%)→환경사범(13.2%)→부동산투기사범(11.3%)→경제사범(7.2%) 및 탈세(6.2%), 일반 민생 및 사회사범에 대하여는 성폭행(36.0%)→조직폭력배(26.1%)→강·절도사범(25.0%)→마약사범(8.3%) 및 음주운전(6.2%)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기간에 즈음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되었던 공직자재산 공개파동과 성윤리 논쟁이 응답자의 응답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사범과 조직폭력배의 선택이 각각 13.2%와 26.1%에 머물렀으나 배제적 단일문항 선택형식의 응답에서의 이 수치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환경오염과 조직폭력배 문제가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한 성·연령·학력·소득·성향별 교차분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9 】 범죄에 대한 성·연령·학력·소득·성향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①부정	②탈세	③부동산투기사범	④환경	⑤경제	⑥기타	①성폭	②조직폭력배	③마약사범	④강·절도사범	⑤음주운전	⑥기타
성	① 남	635	60.8	7.7	10.4	12.6	8.0	0.5	23.8	34.4	9.5	27.6	4.3	0.5	
	② 여	563	62.7	4.4	12.4	13.9	6.2	0.4	49.7	16.7	6.9	22.2	4.1	0.4	
연령	① 20대	336	67.6	5.7	8.6	14.3	3.9	-	44.8	20.9	8.7	23.0	2.4	0.3	
	② 30대	316	61.7	5.7	8.5	12.0	11.4	0.6	32.6	29.7	7.6	27.2	2.8	-	
	③ 40대	261	61.3	6.1	14.2	10.0	7.7	0.8	33.0	29.5	7.3	23.8	5.7	0.8	
	④ 50대 이상	286	55.2	7.3	15.0	16.1	5.9	0.3	32.2	25.2	9.4	26.2	6.3	0.7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57.5	5.8	18.3	12.5	5.8	-	30.8	22.5	12.5	27.5	6.7	-	
	② 중졸	165	56.4	5.5	21.8	10.3	5.5	0.6	34.5	27.9	7.9	23.0	5.5	1.2	
	③ 고졸	501	59.1	6.0	11.6	13.6	9.0	0.8	35.7	25.5	7.8	26.3	4.0	0.6	
	④ 대재 이상	411	68.4	6.8	4.6	14.1	6.1	-	38.3	27.3	7.8	23.7	2.9	-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부정부파	②탈세	③부동산투기사범	④환경범	⑤경제범	⑥기타	①성폭행	②조직폭력배	③마약사범	④강·절도사범	⑤음주운전	⑥기타
변수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53.4	5.7	21.3	14.4	4.6	0.6	32.2	24.1	10.9	24.7	6.9	1.1
	② 70~119만원	396	59.8	7.6	11.6	12.4	8.3	0.3	35.1	26.0	8.6	26.5	3.5	0.3
	③ 120~199만원	418	62.9	5.3	9.8	13.9	7.4	0.7	36.5	27.3	8.2	24.5	3.1	0.5
	④ 200만원 이상	200	69.5	6.0	5.5	13.0	6.0	-	40.0	25.5	5.5	24.0	5.0	-
성향	① 진보적	363	63.1	6.9	6.6	13.5	9.1	0.8	38.4	24.0	9.4	24.9	3.0	0.3
	② 중도적	328	64.6	4.3	10.7	13.4	6.4	0.6	35.7	26.8	10.1	24.7	2.1	0.6
	③ 보수적	506	58.9	6.9	15.0	12.8	6.3	-	34.6	27.1	6.3	25.5	6.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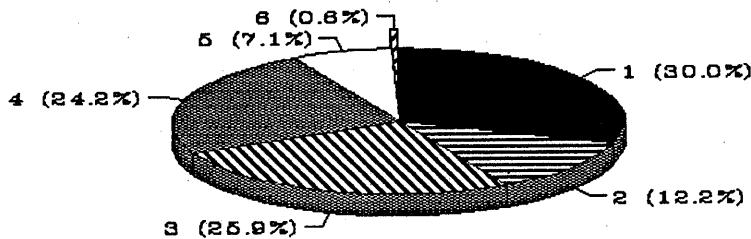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로서 일반 민생 및 사회사범 중에서 는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남성의 경우 조직폭력배를 최우선으로 지목하였고, 정치 및 경제사범 중에서는 남여 공히 부정부파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부정부파에 대하여는 젊은층·고학력·고소득·진보적 성향의 경우 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비판계층 즉, 진보적 중산계층의 성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투기사범의 경우는 저학력 및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강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엄연히 상존하는 계층간 불화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들을 퇴치하고 나아가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내지는 방안으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조사결과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을 최우선으로(30.0%) 꼽았다.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우리 사회 범죄추방의 요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 【 그림 19 】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6. 기타

그러나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방강화’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을 각각 25.9%, 24.2%나 선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범죄없는 사회는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과 국가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이 동시에 병행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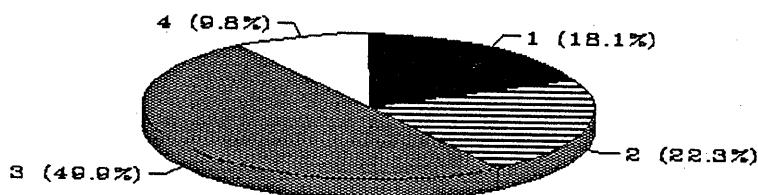
### 3) 權利意識

권리의식이 약할 경우 법적 문제에 있어서 법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용의가 약화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적극적인 준법의식마저 실종될 우려가 있다. 과거 한국인은 권리의식이 약하여 법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국가통치 내지 국민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참여적 시민문화의 정착은 권리의식의 신장을 가져다 주어 과거 일제식민통치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피해의식은 확연히 사라지고 오히려 비타협적인 자기이익마저 요구하는 현실을 우려 할 만큼 달라진 것이 권리의식의 오늘날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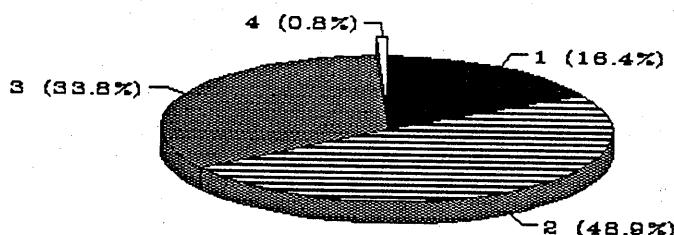
### 【 그림 20 】 권리의식

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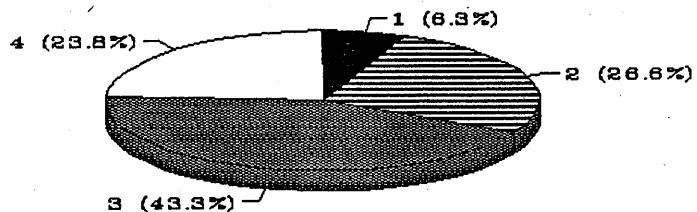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 치료비만 받는다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에 대하여 59.7%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불량품 구입이나 교통사고에서의 피해보상 요구도 60%이상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권리의식은 국민의 법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부당한 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자나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하는 자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시간이나 비용 또는 불명예 등의 이유에 별로 개의치 않고 이를 자신의 권리실현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표 30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3. 부당한 법이 있다면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34. 금전관계소송	시정을 요구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리실현을 위해 한다 35.5%</li> <li>2) 정의·질서를 찾기 위해 한다 27.0%</li> <li>3)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안한다 9.5%</li> <li>4) 법정에 서는 것은 불명예이다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1) 2) 51.1%</li> <li>3) 38.4%</li> <li>4) 7.4%</li> </ul>

【 표 31 】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24. 불량품을 샀을 경우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 결과
34. 금전관계소송	<p>여절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리실현 2) 정의·질서 40.8%</li> <li>3)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안함 41.8%</li> <li>4) 법정에 서는 것은 불명예임 14.8%</li> </ul>
	<p>고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리실현 2) 정의·질서 59.3%</li> <li>3)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안함 32.1%</li> <li>4) 법정에 서는 것은 불명예임 7.7%</li> </ul>

계층별 권리의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낮거나 진보적일수록,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권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2 】 불량품을 샀을 경우 연령·학력·소득·성향별 반응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 번 산 것인니 어절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③ 소비자고 발센터에 신고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 까지 받아 낸다	(단위 : %)
변수							
연령	① 20대	336	8.6	55.1	35.7	0.6	
	② 30대	316	12.0	53.5	33.2	1.3	
	③ 40대	262	19.1	49.2	31.3	0.4	
	④ 50대 이상	286	28.0	36.4	34.6	1.0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34.2	33.3	30.0	2.5	
	② 중졸	165	26.1	48.5	24.8	0.6	
	③ 고졸	502	14.3	47.6	37.1	1.0	
	④ 대재 이상	411	10.0	55.2	34.5	0.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21.8	38.5	37.9	1.7	
	② 70~119만원	396	16.2	46.7	36.1	1.0	
	③ 120~199만원	419	15.0	51.6	32.9	0.5	
	④ 200만원 이상	200	14.5	58.0	27.0	0.5	
성향	① 진보적	364	12.6	50.0	35.7	1.6	
	② 중도적	328	16.5	47.9	35.7	-	
	③ 보수적	506	19.0	49.0	31.2	0.8	

이와 같이 높아진 권리의식은 법의식수준의 전반적인 제고에 크게 기여하나 건전한 시민의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에서 비롯되지 아니할 경우 법적 권리개념이 애매한 주장과 비타협적 요구로 인한 충돌로 말미암아 오히려 법치주의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권리의식은 건전한 시민의 고발정신에서 비롯되고 사회의 탈·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될 때 우리 사회에서의 준법정신의 회생과 법치사회 실현을 위한 법의식 제고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시민의 비판 및 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준법정신의 양양과 국민법의식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조사결과 개인적 비판의식과 사회적 비판정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치사회의 완전 실현가능성마저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일반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고학력 및 고소득층에서 기초질서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한 자성과 죄의식이 희박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정착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의 자기반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은 이 점에 주목하여 공평한 입법과 차별없는 공정한 법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 3. 法의 使用能力 및 紛爭의 解決方法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국민 법생활 중 행동적 측면을 보다 본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의 사용능력은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용의와 능력이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의 법사용능력은 주로 법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와 경제적 이유(소송비용) 때문에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sup>29)</sup> 이는 법사용능력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내린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문화와 법현실에 있어서 법의 사용능력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보다는 법적 경험에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법절차적 분쟁해결수단의 동원이 곧 법사용능력의 수준을 가늠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보다 합리적인 문제해결로의 돌입을 위한 최후통첩이 아닌 최종적인 전쟁선포로 보려는 한국적 법의식의 한 단면이 작용하고 있다.<sup>30)</sup> 물론 법의 사용능력이 높을 경우 법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은 강할 것이다.

본 조사는 국민의 법의 사용능력과 분쟁의 해결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 ◇ 법의 사용능력

1.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2. 불량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3.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4.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9)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정음사, 1986), 167면.

30) 본 보고서 61면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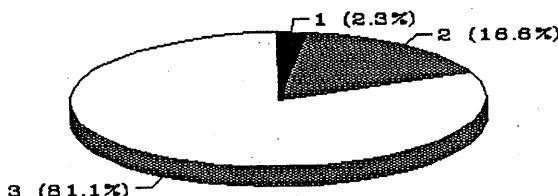
## ◇ 분쟁의 해결방법

6.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7.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잤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8. 누구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1) 法의 使用能力

#### 【 그림 21 】 법의 사용능력

23. 만약 국민을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림 20】참조)
24. 불량품(전자제품·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림 20】참조)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림 12】참조)
3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림 12】참조)
9.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2. 치료비를 받는다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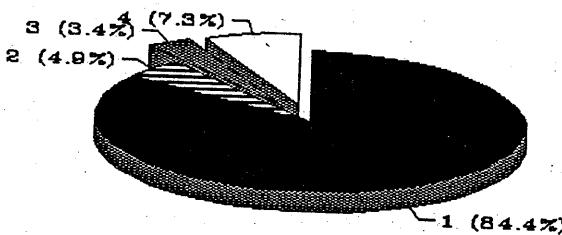
조사결과 부당한 입법에 대한 시정요구나 저항이 59.7%, 불량품을 샀을 때 바꿔오거나 고발 내지 고소하겠다는 응답이 83.5%,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받거나 고소하겠다는 응답이 67.1%, 소송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는 입장이 54.0%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법사용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높은 권리의식과 상호 상승작용하여 그동안 축적되어온 다양한 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공산은 매우 크다.

반면에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81.1%나 차지하였다. 이를 아직도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법을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국민법의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 한 법적인 수단 이외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한국인의 법생활상 관용성의 표현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2) 紛爭의 解決方法

【그림 22】 분쟁의 해결방법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그림 7】 참조)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2. 경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3. 변호사를 찾아간다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사용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 하고(50.9%), 가능하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하려는 경향(84.4%)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곤란할 것이다. 법의 사용능력은 법적 경험의 여하에 따라 직접적으로 형성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선호는 단지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항22와 문항26의 경향은 한국인의 법의식의 특징적인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본조사의 문항4에서 분쟁발생시 '법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말에 대하여 '몰인정하다'거나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약 50%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항27 중 '담당행정 공무원'과의 친분관계가 자신의 법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22.3%)한 것도 행정관청에서의 업무처리(문항30)에서 얻어진 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항22에서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려는 태도가 7.8%에 지나지 않음은 결코 분쟁해결 수단으로 법을 선택하는데 소극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 및 정치인보다는 변호사와의 친분관계가 자신의 법적 문제 해결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국민의 분쟁해결방법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중요시하는 현상에 비추어 변호사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변호사의 양적 증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역을 보다 전문화하며, 동시에 소송비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쉽게 병원을 찾듯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의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결과는 국민의 법사용능력이 높아진 반면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법적 절차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높아진 권리의식과 법사용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시비비에 대한 논쟁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데 이는 법적 해결을 법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이 아니라 최종적인 전쟁선포로 보는 동양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법의식의 독특한 일면으로서 한국인이 갖는 법의식의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중요시하는 법행동양식은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 VI.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국민의 법생활 실태와 입법 및 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조사는 국민법 의식조사에 있어서 양대산맥을 이룬다. 법치주의 확립은 결국 일반국민과 국가간의 일체감 형성에서 비롯되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력구조는 그 성질에 따라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기능에 따라 입법기능과 법집행기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입법과정과 법집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헌헌법상 권리 구조가 틀지워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부단하였다.<sup>45)</sup>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 및 방법과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기능적 구조를 법령제정과 법적용·집행·선언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국회와 행정부<sup>46)</sup>를 법정립기관, 법원·검찰청·행정관청·경찰서 등을 법집행기관으로 구분하였고 설문구성시 이러한 구별기준을 전제하였으며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는 별도의 항목을 두었다.

본조사는 국민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하였다.

###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가
3. 국회·정부의 법령제정, 행정관청의 법적용, 경찰서의 법적용, 검찰의 법집행, 법원의 법선언 등은 공정한가

45) 최근에는 국회법 개정(94.6.28)과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94.7.14) 등을 그 예로 지적할 수 있다.

46) 이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을 법률안제안권·행정입법권에 국한한 것임.

4.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범인가
5. 행정관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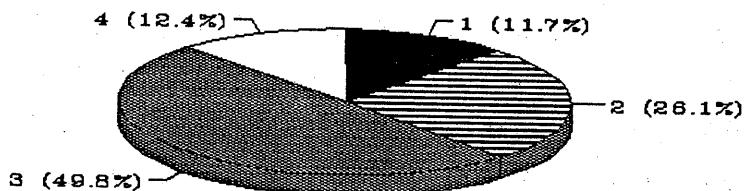
#### ◇ 사법권의 독립

6.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
7.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 1. 法定立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態度

#### 【 그림 23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0.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림 14】참조)
10.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4】참조)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6】참조)
28. 국회에서 만든 법은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2】참조)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 '법이 불공평하므로(21.3%)',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2.5%)',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9%)'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와 반응을 조사한 결과,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행정관청·파출소나 경찰서·검찰·법원 등에서의 법적용 내지는 법선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91조사에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법령을 적용하거나 집행할 때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불신(84.6%)을 보여 경찰권의 독립과 경찰권의 양적·질적 향상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나 1991년 8월1일 치안본부의 경찰청 승격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된 듯하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그 공정함을 인정한 응답이 55.8%이고 행정관청에 가서 업무처리를 할 때 원칙대로 해도 일이 잘 처리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4.6%나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행정관청업무처리의 능률화 및 개선에 대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찰의 법집행 및 법원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도 각각 62.5%, 70.8%라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강했던 '91조사와 비교할 때<sup>47)</sup> 80년후반과 90년의 초반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기존제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경향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것으로서 법치사회 실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응답자의 56.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62.2%가 입법과정에서의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어서 법집행과정과는 달리 입법과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생인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

47) 본 보고서 52면을 참조할 것.

【 표 33 】 입법과정에 대한 연령·학력·직업별 일체감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	① 20대	335	6.0	22.1	58.2	13.7
	② 30대	316	7.0	27.8	52.8	12.3
	③ 40대	262	10.7	29.0	47.3	13.0
	④ 50대 이상	285	24.6	26.3	38.9	10.2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19.2	18.3	44.2	18.3
	② 중졸	164	15.9	26.2	47.0	11.0
	③ 고졸	502	12.7	28.7	47.8	10.8
	④ 대재 이상	410	6.6	25.1	55.4	12.9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7.3	33.1	49.2	10.5
	② 사무직	203	10.8	25.6	49.3	14.3
	③ 판매·서비스직	291	15.5	30.2	44.3	10.0
	④ 생산직	101	10.9	23.8	45.5	19.8
	⑤ 농어업	86	17.4	24.4	41.9	16.3
	⑥ 학생	80	6.3	16.3	65.0	12.5
	⑦ 주부	238	8.0	24.8	55.0	12.2
	⑧ 기타·무직	75	18.7	20.0	56.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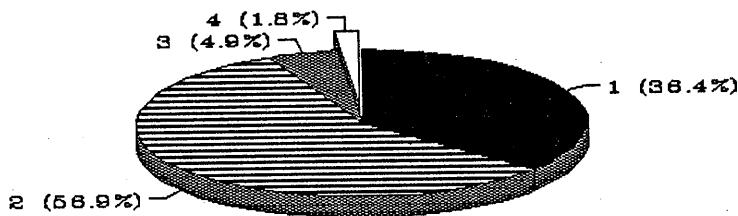
법집행과정에서의 요체가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공정한 법적용이라고 한다면 입법과정에서는 각계 각종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가급적 폭넓게 수용하여 법제정시부터 그 법의 규범력 확보가 예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983년부터 시행되어온 정부입법안의 입법예고제와 1994년 개정한 국회법 제82조 2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는 외국에서도 그 예가 드문 우리나라 특유의 입법제도로서 입법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전단계에서 법률적 갈등을 사전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실효성을 보다 높히기 위한 입법예고제의 활성화 방안<sup>48)</sup>으로서 예고대상의 확대, 예고수단의 다양화, 예고사항의 구체화, 제출의견의 반영도 제고, 입법예고 전담부서의 신설, 창안적 입법의견 보상, 행정관청의 재량권 축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 부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

48) 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예고제」(제3회 법제세미나, 1992).

## 2. 司法權의 獨立

【그림 24】 사법권의 독립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법과 사법제도는 한 사회에 있어서 이해대립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체계이며, 그 중 사법기능은 구체적 행동을 전제로 하여 신분의 보장은 물론 심리적 종속성에서도 독립한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경제적 영향을 배제한 고유한 범인식 기능이다. 따라서 사법작용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적 가시성이 높은 계층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으로서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Entscheidungsfreiheit)를 그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이 93.3%나 차지하였다. ‘돈과 교우는 정의의 힘을 파괴한다 (Money and friendship break the arms of justice)’, ‘정의는 때때로 돈주머니가 늘어진 쪽으로 기우는 수가 있다(Justice oft leans to the side where the purse hangs)’ 등의 법언처럼 재판에서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력이 불가

피할 수 있지만 이는 권력이나 재력이 개입하고 있어서 판결의 공정성 및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불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회의는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76.9%나 바람직하다는 응답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론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기능의 공정성에 많은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여론이 권력이나 재력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91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sup>49)</sup> 큰 변화는 없었지만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증가하였다. 향후 새로이 개정된 법원조직법중개정(95.3.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95.1.1), 각급법원의판사정원법(95.3.1), 상소심절차에관한특례법(94.9.1), 행정소송법중개정(98.3.1)<sup>50)</sup> 등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입법과정과 권력이나 재력으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91조사 당시 심화되었던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행정관청·검찰·법원 등의 법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상당히 높아진 신뢰감을 보였다. 이는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더욱 촉구되고 법제정 및 개정·적용·시행의 과정에서 보다 더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의 지속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

49) 본 보고서 53면을 참조할 것.

50) ( ) 안의 숫자는 시행예정일자임.

## VII. 現行法侖에 대한 見解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법의 식조사의 최종임무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령과의 괴리정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정확하다면 국가의 입법정책에 더 말할 나위 없는 지원과 기여가 될 것이다. 법의식조사가 곧바로 법의 제정 및 개정에는 연결될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견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현행법령 중 조사대상법령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다.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의성을 유지하되 나아가 국가의 입법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망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등을 내용으로 다섯 가지 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현실에 맞지 않는 법

1. 동성동문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민법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3. 정치개혁법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4.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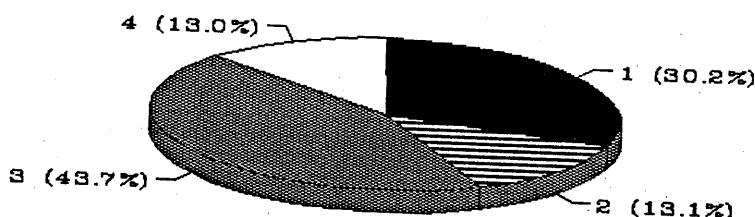
####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5.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1. 現實에 맞지 않는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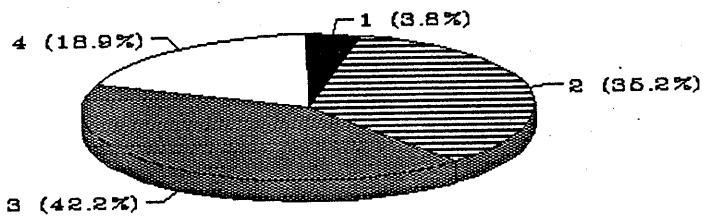
【그림 25】 현실에 맞지 않는 법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
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4. 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행법령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구체적인 사례로 「민법」의 동성동본금혼규정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서 개정하여야 하며 지키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7%가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동성동본일지라도 결혼을 허용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이 금혼규정에 더욱 반대하였다. 그러나 종교가 유교인 경우의 응답자는 66.7%가 한국적 전통이나 우생학적 측면에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 표 34 】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연령·학력·소득·종교·성향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 을 수 없 는 일이 다	② 2세에게 나쁜 영향 을 미치므 로 해서는 안된다	③ 가까운 촌 수가 아니 라면 그럴 필요가 없 다	④ 동성동본 금혼에 관 한 법조항 자체를 폐 지하여야 한다
연 령	① 20대	336	14.3	10.1	56.8	18.8
	② 30대	316	18.7	14.6	52.5	14.2
	③ 40대	262	32.1	17.2	40.1	10.7
	④ 50대 이상	285	60.0	11.2	21.8	7.0
학 력	① 국졸 이하	120	68.3	12.5	10.8	8.3
	② 중졸	165	43.6	19.4	28.5	8.5
	③ 고졸	502	28.3	12.7	45.6	13.3
	④ 대재 이상	411	16.1	10.9	57.2	15.8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48.6	11.0	28.9	11.6
	② 70~119만원	396	29.8	15.7	41.7	12.9
	③ 120~199만원	419	25.3	11.7	48.7	14.3
	④ 200만원 이상	200	25.0	13.0	50.0	12.0
종 교	① 불교	342	39.8	13.5	33.9	12.9
	② 기독교	258	24.4	14.3	48.4	12.8
	③ 천주교	121	22.3	13.2	49.6	14.9
	④ 유교	27	59.3	7.4	25.9	7.4
	⑤ 무종교	441	26.5	12.2	48.1	13.2
	⑥ 기타	10	30.0	20.0	40.0	10.0
성 향	① 진보적	364	19.2	14.3	49.2	17.3
	② 중도적	328	26.2	11.0	51.5	11.3
	③ 보수적	505	40.8	13.7	34.5	11.1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사실혼관계의 동성동본부부는 수십만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1978년과 1988년 두차례에 걸쳐 적용한 「혼인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 동성동본부부는 각각 4,577쌍, 7,458쌍으로 1만2천여쌍에 지나지 않는다.<sup>51)</sup>

외국의 입법례<sup>52)</sup>를 보더라도 대부분(영국·미국·이태리·프랑스·독일·스위스·러시아·아르헨티나·그리스·일본·필리핀·중국·북한 등) 직계혈족을 비롯한 근친간의 혼인은 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동성동본인 혈족,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혼인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일찍부터 소가족제도를 이루고 있었던 서구나 일본에서는 최소한의 혼인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제자매 내지 숙질간의 혼인만을 금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가족제도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우 근친혼금지에 관하여 규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편이다.

현행민법 제정 당시 동성동본금혼규정에 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으나 결국 전통적 윤리의식과 사회질서유지의 근간으로서 가족제도에 대한 강조<sup>53)</sup>로 말미암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좌절되고 현행민법 제809조가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周나라에서 동성동본금혼법이 최초로 생긴 중국에서도 1908년 이를 폐지하여 이 규

- 
- 51) 사실혼 관계의 동성동본부부의 숫자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추산이며 이 중 「혼인에관한특례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근친혼인 경우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 52) 외국의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주수, 「친족상속법」(법문사, 1991); 김용한, 「친족상속법」(박영사, 1988); 법무부, 「가족법의 제문제」(법무자료 제55집(1986), 법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개정법안 및 이유서」(1994); 宮崎孝治郎, 「新比較婚姻法」(日本勁草書房, 1972); 김병대, "동성동본불혼제에 관한 소고"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남송 한봉희 교수 희갑기념, 1994) 등 참조.
  - 53) 양일동의원의 토론,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5편 1~22면 참조. 김용한, "동성불혼법제의 재검토"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해석 고창현 박사 화갑기념, 1987) 701~703면에서 개인용.

정이 살아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현행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규정으로도 근친혼을 막는데 충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의 법의식이 이 규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많은 동성동본부부가 사실혼관계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법생활이 탈법적으로 흐르기 쉽고 나아가 비정상적인 혼인신고를 조장하여 법치주의 정착을 방해하는 폐단을 가져오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으로 생각된다. '말도 사촌까지 相避를 본다'라는 우리 속담에 현대적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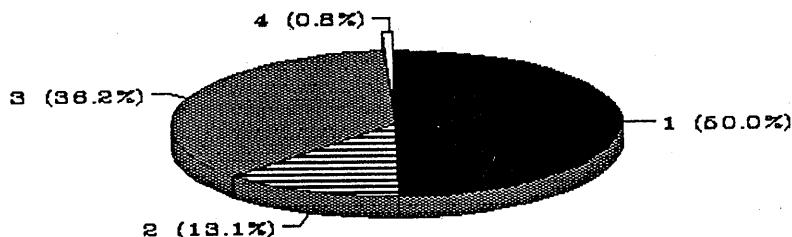
한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결혼청첩장을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61.1%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지키기 어려우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틀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에 동참한 입장도 35.2%나 분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입법태도 중 지킬 만한 법을 만들려는 것 보다는 바람직한 법을 만들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법의 선도적·개혁적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자칫 사회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커져 법조문의 사문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관혼상제 풍속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중 규제사항들이 거의 묵인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일반국민 사이에 법이라는 규범이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반법치주의적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록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는 예방효과가 있을지라도 국민의 일반생활과 밀접한 법규정이 실질적으로 그 규범력을 상실한 채 사문화되어가는 현상은 국민의 법의식수준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법치국가이념과도 상치되므로 이 규정의 보완 내지 개정이 요구된다.<sup>54)</sup>

54) 그 동안 비등했던 개정 입법의견에 따라 정부는 1994년 7월 7일 「가정의례에관한

## 2. 政治改革과 政治關係法

【 그림 26 】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
2.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3.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
4. 기타

그동안 정치관계법제는 공직후보자·정당·정당원 등이나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불법타락선거 및 정치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과거 각 공화국의 단절된 정치목표의 추구나 집권당의 안정세력기반 구축의 지나친 욕구, 그리고 입법관계자의 자의적인 입법태도는

법률시행령」을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4318호)하여 허례허식이 아닌 행위의 범위(제3조)에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하여 간소한 범위안에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를 하객으로 초청하는 행위'와 '경조기간 중 가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에서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정치개입에서의 공정한 게임규칙을 인위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수정·폐기하여 버림으로써 정치관계법제 상호간에 갈등관계에 있는 법조항들과 그 규범적 의미에 반하는 제도가 많았다. 따라서 정치관계법제처럼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법제도 드물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도는 더욱 심하였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의 중심축으로서 정치관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노력 결과 1993년 12월 31일 「정당법」,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등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 당내 민주적 질서의 법규적 보장, 선거기간의 단축,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운동, 선거비용의 강력한 통제, 선거사범 처벌의 강화, 선거운동에의 관권이나 기업의 개입금지, 선거일자의 법정화, 정당득표률에 따른 전국구의원수의 배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액영수증 사용,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보장, 지방정부의 권한 증대와 견제(직무이행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치개혁법은 기존의 정치관계법의 입법행태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입법적 혁명에 가깝다.

정치관계법의 규범력 확보는 그 성격상 입후보자·선거관계기관·유권자 등 세부문의 준법의지를 필요로 한다. 정치관계법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이 중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부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13.1%)' 보다는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50.5%)'과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36.2%)'을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정치인과 유권자의 불법타락선거 및 정치의식을 정치후진성의 主犯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층이 높고 학력·소득 등이 낮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수적 성향을 떨수록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에 대한 응답이 집중하였다. 종교에 있어서는 유교인 경우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이 정치개혁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사상 중 정치지도자의 솔선수범과 개혁정치사상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표 35 】 정치관계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연령·학력·소득·종교·성향·지역규모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	② 선거관계 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③ 유권자의 의식개혁 과 철저한 고발 정신	④ 기타
연령	① 20대	336	56.0	11.6	32.4	-
	② 30대	316	52.2	11.4	36.1	0.3
	③ 40대	262	47.3	12.2	38.9	1.5
	④ 50대 이상	285	42.8	17.5	38.2	1.4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32.5	20.8	42.5	4.2
	② 중졸	165	43.6	18.2	38.2	-
	③ 고졸	502	52.4	12.0	35.1	0.6
	④ 대재 이상	411	54.5	10.2	35.0	0.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39.9	18.5	38.2	3.5
	② 70~119만원	396	48.5	13.1	37.9	0.5
	③ 120~199만원	419	51.6	13.4	34.8	0.2
	④ 200만원 이상	200	57.5	8.5	34.0	-
종교	① 불교	342	49.4	13.2	36.3	1.2
	② 기독교	258	49.6	14.7	34.9	0.8
	③ 천주교	121	47.1	10.7	41.3	0.8
	④ 유교	27	66.7	7.4	25.9	-
	⑤ 무종교	441	50.6	13.2	35.8	0.5
	⑥ 기타	10	40.0	10.0	50.0	-
성향	① 진보적	364	50.3	12.9	36.0	0.8
	② 중도적	328	53.0	12.5	33.5	0.9
	③ 보수적	505	47.5	13.7	38.2	0.6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50.6	13.3	36.1	-
	② 중·소도시	340	54.1	12.4	32.6	0.9
	③ 읍·면 이하	272	43.4	13.6	40.8	2.2

그러나 새로이 개정된 정치관계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계기관에 여러가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점을 감안할 때 깨끗한 선거 풍토 및 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은 정치관계법의 규범력 확보에 관건이 되리라 예상된다.<sup>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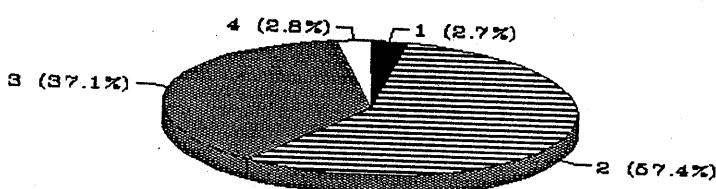
55) 조사시기는 달랐지만 1992년 11월 본원에서 「선거관계법제와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거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 3. 勞使關係法 違反의 責任所在

【그림 27】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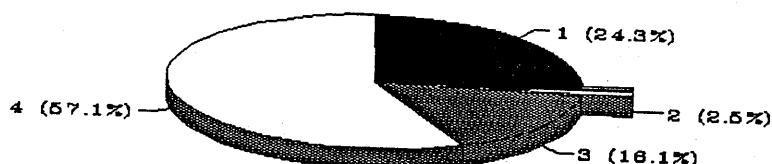
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용자      2. 근로자      3. 정부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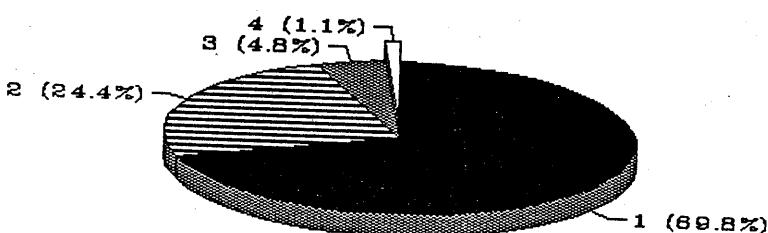
40.7%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철저하지 않으므로'라고 응답하여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이 선거법의 준법질서 확립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노사관계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의 원인행위,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여건과 구조의 변화,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노동법제를 비롯한 법제도적 요인 등 제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그러나 국제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사관계도 예외없이 블루라운드(BR)와 같은 국제적 협의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 국내적 차원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국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격증하였던 노동쟁의의 근본원인이 산업사회의 구조적 불균형과 사회문제가 누적된데서 비롯되었으나, 그 동안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활성화로 인한 노·사·정 간의 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요즘 노사관계법의 준법실태에 대하여 응답자의 60.1%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노·사·정의 원활한 협조체제의 형성이 노사관계법 규범력 확보에 요체가 된다고 응답(87.1%)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키져지고 있지 않은 책임을 어느 한 쪽에 물을 경우 근로자(2.5%)보다는 사용자(24.3%)나 정부(16.1%)를 노사관계법 위반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용자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근로자를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가급적 피하고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규나 노사 쟁방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분규에 대하여는 필요한 만큼의 조정 또는 중재역할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산업현장에서의 책임의식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자기통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노사 어느 한쪽의 교섭력이 일방으로 우세한 상황에서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 인식에 근거한 노·사·정간의 협조체계운영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문제가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제고와 직결되는 요즈음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 4. 環境汚染의 規制方向

【 그림 28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4. 기타

본 조사의 문항16에서 환경사법은 부정부폐 다음으로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로 지적되어 향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sup>56)</sup> 우리나라의 환경관련입법은 60년 대초 오물청소법((1961.12.30), 공해방지법(1963.11.15) 등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제개발과 성장정책을 최우선시하던 당시의 정책의지와 사회경제적 분위기하에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무관심한 자세는 근 20여년간 환경관련입법의 공백현상을 초래하게

56) 본 보고서 116면을 참조할 것.

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에 있어서도 국제적 감각을 상실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1992.5.5 발효), 리우회담(The Rio Conference : UNCED, 1992.6.3~1992.6.4) 등에서 환경문제가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자 우리의 기존태도에도 일대 변혁이 일게 되어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제정을 시작으로<sup>57)</sup> 환경 보전·폐기물·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활발한 입법을 하였고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법률안은 '환경에 관한 죄'를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고 과실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환경오염행위가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본 조사에서는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대하여 물었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이(69.8%)이 처벌 강화보다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학력이나 소득이 높거나 연령층이 낮고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오염문제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서서히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허다한 만큼 사후 구제보다 사전적 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사후관리제도 또한 원상복구를 위한 규제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기업들이 환경훼손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피해구제와 원상복구에 엄격하다. 이처럼 환경피해의 구제 및 원상회복책임을 철저히

57) 환경관련법률의 입법추이는 한국법제연구원, 「환경문제관련 입법의견」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 1992.10) 참조.

【 표 36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대한 연령·학력·소득·성향  
· 지역규모별 반응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③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④ 기타
연령	① 20대	336	76.8	20.8	2.1	0.3
	② 30대	316	69.3	23.7	5.4	1.6
	③ 40대	262	67.9	24.8	5.7	1.5
	④ 50대 이상	286	63.6	29.0	6.3	1.0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58.3	28.3	11.7	1.7
	② 중졸	165	65.5	24.8	7.9	1.8
	③ 고졸	502	70.9	24.3	3.8	1.0
	④ 대재 이상	411	73.2	23.4	2.7	0.7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77.4	21.8	0.8	-
	② 사무직	203	70.0	25.6	3.9	0.5
	③ 판매·서비스직	291	71.5	22.0	5.2	1.4
	④ 생산직	101	62.4	26.7	9.9	1.0
	⑤ 농어업	86	67.4	27.9	3.5	1.2
	⑥ 학생	80	73.8	23.8	1.3	1.3
	⑦ 주부	238	68.9	23.1	5.9	2.1
	⑧ 기타·무직	77	61.0	32.5	6.5	-
가구 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61.5	31.6	4.6	2.3
	② 70~119만원	396	70.5	23.0	5.3	1.3
	③ 120~199만원	419	72.1	22.7	4.3	1.0
	④ 200만원 이상	200	70.5	25.0	4.5	-
성향	① 진보적	364	72.5	22.3	3.8	1.4
	② 중도적	328	71.6	21.3	5.8	1.2
	③ 보수적	506	66.8	27.7	4.7	0.8
지역 규모	① 대도시	588	70.1	25.0	3.7	1.2
	② 중·소도시	340	72.4	22.1	5.0	0.6
	③ 읍·면 이하	272	65.8	26.1	6.6	1.5

할 경우 제반 환경오염문제 대책수립에 간접적인 압력수단으로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세대와 다음세대가 생활하여야 할 자연환경의 보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은 엄격히 금지한다”라는 이란(Iran) 헌법 제50조의 환경조항은 환경문제의 중대함을 잘 대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환경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경험하였고 환경행정의 일원화 등 환경처 권한의 강화로 환경문제에 관한 한 매우 높아진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대책과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법령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의 규범력 강화와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 바람직한 법 보다는 잘 지켜지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하여는 법제화과정에서부터 야기된 준법불능의 입법행태를 비판하였고 특히 정치관계법에 관하여 응답자 자신의 법의식 제고와 준법정신 양양을 강조하였다. 특정 분야법이 그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의식 제고는 물론 국가사회의 가치기준 및 생활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태도가 필수적이며 향후 이러한 입법관행이 제도화될 때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은 한 걸음 앞서 나아갈 것이다.

## VIII. 結論 : 綜合的 評價

'94본조사는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91조사 이후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와 '91조사에서 한국인의 법의식 특징으로 나타난 법의식의 전반에 걸친 재검증을 통하여 향후 당분간의 국민법의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실시되었다. 80년대 후반이후의 민주화과정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과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완전히 부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회변혁은 특정한 계기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제도적 착근은 구조조정단계를 거치면서 순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민법의식의 변화에도 단순한 동요에 불과한 경우가 '91조사에서 법의식의 변화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후하다. 이에 대한 실증적 재검토가 '94본조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국민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국민법생활의 선진화와 국가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및 법집행정책의 수립방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법치사회 실현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권재민의 근대적 실현 형태인 삼권분립은 권력분립의 사회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핵은 국가의 모든 운영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사회의 실현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화 및 제도화단계(총체적인 발전단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법의식은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잊지 않게 하려는 의욕·정신·힘이며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법의식의 현주소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94본조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그 시대의 가치관은 법의식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인데 '91조사와 비교할 때 가족구조나 직장질서의 민주화 내지는 합리화가 보다 성숙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법의식 제고와 법생활의 선진화에 안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법기능의 다양화 조짐과 법의 유용한 가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진 태도 등은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착근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국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을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법생활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행정관청에서의 일처리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사고가 정착되었으며 대의명분이 뚜렷한 새로운 법제(금융실명제)에의 적용도가 높고 단편적이나마 법지식이 높아져 가고 있었다.

넷째,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그리고 고발정신은 법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식 중 가장 중요한 부문들로서 서로 강한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나 이기적 권리주장에 대하여 강한 고발정신이 이를 견제하면서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발생시키고자 할 용의와 능력은 다분하지만 결코 법절차적 분쟁해결수단의 동원에는 주저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법의식의 특징으로 남아 있었으나,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중요시하는 법행동양식은 분쟁해결방식의 선진화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91조사 당시 심화되었던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행정관청·검찰·법원 등의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원리가 정착될 수 있는 청신호

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응답자 대부분의 반응은 법의 규범력 강화와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법보다는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하여는 법 제화과정에서부터 야기된 준법불능의 입법행태를 비판하였고 특히 정치관계법에 관하여 응답자 자신의 법의식 제고와 준법정신 양양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의식의 제고 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탈·위법 행위에 대한 불용적인 태도 · 높은 고발정신 · 국가기관과의 일체감 형성 등을 법치사회의 실현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법의식의 면면에는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또한 상존하고 있다.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의 선택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의식의 확산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비타협적이며 막연한 이익요구까지 포함하는 권리주장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사회지도층인사나 고학력·고소득층에 법경시풍조가 존재하고 있고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 등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권리의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을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과 법조문이나 법률용어의 난해성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본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합리적인 해결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게 한다.

이들의 개선을 위하여는 초·중·고등 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 확대 및 개선, 법령홍보의 강화, 입법참여제도의 확대와 사법제도의 개선, 변호사 수임료의 하향조정 등 다양한 대안제시가 가능하지만 법의식이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 의식 개혁적 차원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에는 크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일반국민의 자기노력이 요구되어지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일반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고학력 및 고소득층에서 기초질서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한 자성과 죄의식이 희박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정착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이들의 탈·위법행위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사회전반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제정·적용·시행의 제과정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적용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사회전체의 기강이나 질서가 쉽게 흔들리게 되며 사회통제제도로서의 법규법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은 이 점에 주목하여 공평한 입법과 차별없는 공정한 법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를 합리적 해결과정 중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최종적인 전쟁선포로 보는 경향이 다분하고 생활법률·법령용어 등 법지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며 비타협적인 이기적인 권리의식과 나아서 불합리한 자기이익요구를 포함한 권리주장이 종종 있다. 자신의 권리주장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 를 존중하는데서부터 보장이 되기 시작한다는 자각이 요청되며 법치국가에서 법에 대한 무관심은 종국적으로 개인의 집단생활에서 충돌을 가져오고 평화를 해치기 십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법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한 자기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순수 민간단체 차원의 법생활화운동<sup>58)</sup>이 확산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국민법의식의 제고된 모습은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안정적 발전은 물론 그 구성원 각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

58) 금년 9월7일과 10일 창립·발족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세계일보, 1994년 8월 29일, 9면 참조).

# 부 록

- I. 조사의 개요
- II. 응답자의 특성
- III. 기본빈도표
- IV. 교차집계표
- V. 설문지



---

# I. 조사의 개요

---

## 1. 조사의 목적

- 법의식 및 법률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한 근거 확보
- 국민의 법감정 및 법생활과 현행법제와의 괴리정도 측정
- 국민법의식의 제고 및 법생활의 선진화방안 모색
-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상의 개선방향 모색
-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 전망
- '91국민법의식조사와의 변화양상 검토

## 2. 조사의 내용 및 과정

### 1) 조사내용

-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국민의 법생활
-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 2) 조사기간

- 예비조사 : 1994. 3. 17
- 본 조사 : 1994. 4. 1 ~ 4. 10

### 3)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남녀 1,200명

### 4) 조사방법

- '다단계총화집락표집방법'에 의한 표본추출 및 면접조사

##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

지 역	인구비례	표본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할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서 울	25.1	301	32		종로구(38) 중랑구(38) 노원구(38) 마포구(37) 영등포구(38) 동작구(38) 서초구(37) 송파구(37)	가회동(10) 사직동(10) 창신동(9) 혜화동(9) 면목1동(10) 상봉1동(10) 중화1동(9) 망우1동(9) 월계1동(10) 공릉1동(10) 하계1동(9) 상계1동(9) 아현1동(10) 공덕1동(9) 합정동(9) 망원1동(9) 영등포1동(10) 당산1동(10) 신길1동(9) 대림1동(9) 노량진1동(10) 상도1동(10) 흑석1동(9) 사당1동(9) 서초1동(10) 잠원동(9) 반포1동(9) 방배1동(9) 풍납1동(10) 마천1동(9) 방이1동(9) 송파1동(9)

지 역	인구비례	표 본 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할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부 산	8.9	107	12		서구(27) 동래구(27) 부산진구(27) 남구(26)	동대신1동(9) 서대신1동(9) 부용동(9) 명륜1동(9) 사직1동(9) 연산1동(9) 부천1동(9) 연지동(9) 전포1동(9) 대연1동(9) 용호1동(9) 문현1동(8)
대 구	5.2	63	8		중구(32) 달서구(31)	동인1동(8) 동성동(8) 삼덕동1가(8) 대신1동(8) 성당1동(8) 송현1동(8) 두류1동(8) 성서1동(7)
인 천	4.6	54	6		동구(27) 북구(27)	만석동(9) 송현1동(9) 송림1동(9) 부평1동(9) 산곡1동(9) 효성1동(9)
광 주	2.7	33	4		서구(17) 광산구(16)	방림1동(9) 월산1동(8) 송정1동(8) 우산동(8)
대 전	2.5	30	4		중구(15) 서구(15)	선화1동(8) 중촌동(7) 도마1동(8) 갈마동(7)

지 역	인구비례	표 본 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할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경 기	14.4	173	21	수원시(50) 의정부시(25) 성남시(30) 동두천시(19) 강화군(17) 용인군(16) 남양주군(16)	장안구(25) 권선구(17) 팔달구(8) 수정구(15) 중원구(15) 강화읍(17) 용인읍(16) 진건면(16)	팔달동(9) 화서1동(8) 정자1동(8) 매교동(9) 세류1동(8) 매탄1동(8) 의정부1동(9) 호원동(8) 가능1동(7) 신홍1동(8) 태평1동(7) 성남동(8) 은행1동(7) 생연1동(10) 광암동(9) 관청리(9) 국화리(8) 금양장리(8) 삼가리(8) 용정리(8) 배양리(8)
강 원	3.6	43	5	강릉시(23) 원주군(20)	홍업면(20)	교동(8) 포남동(8) 옥천동(7) 송계리(10) 매지2리(10)
충 북	3.2	38	4	청주시(19) 진천군(19)	진천읍(19)	우암동(10) 내덕1동(9) 읍내리(10) 송두리(9)
충 남	4.4	52	6	천안시(12) 공주군(20) 천안군(20)	계룡면(20) 성환읍(20)	남산동(6) 청룡동(6) 월암리(10) 기산리(10) 성환리(10) 매주리(10)

지 역	인구비례	표 본 수	조사지역수	조 사 지 역 (활당표본수)		
				시 · 군	구 · 읍 · 면	동 · 리
전 북	4.7	57	8	전주시(30) 정읍군(27)	완산구(15) 덕진구(15) 신태인읍(14) 북면(13)	태평1동(8) 종로송1동(7) 진북1동(8) 인후1동(7) 신태인리(7) 연정리(7) 한교리(7) 마정리(6)
전 남	5.4	65	6	순천시(20) 곡성군(23) 나주군(22)	해남읍(23) 세지면(22)	영옥동(10) 장천동(10) 해리(12) 읍내리(11) 오봉리(11) 내정리(11)
경 북	6.6	80	7	안동시(31) 예천군(25) 청도군(24)	예천읍(25) 매전면(24)	명륜동(11) 대신동(10) 법상동(10) 노화리(13) 백전리(12) 동산리(12) 당호리(12)
경 남	8.7	104	11	울산시(31) 진주시(30) 하동군(22) 양산군(21)	중구(16) 동구(15) 하동읍(22) 물금면(21)	학성동(8) 태화동(8) 방어동(8) 화정동(7) 칠암동(10) 장대동(10) 상봉도동(10) 읍내리(11) 광평리(11) 물금리(11) 가촌리(10)
합 계	100	1200	134			

## II. 응답자의 특징

※ 단위 : %(명)

### 1. 성별

1) 남자	53.0(635)
2) 여자	47.0(564)

6) 120만원 ~ 149만원	8.9(107)
7) 150만원 ~ 199만원	6.1(73)
8) 200만원 ~ 249만원	3.1(37)
9) 250만원 이상	1.6(19)

### 2. 연령

1) 20대	28.0(336)
2) 30대	26.3(316)
3) 40대	21.8(262)
4) 50대	14.4(173)
5) 60세 이상	9.4(113)

### 나) 가족

1) 없다	1.2(14)
2) 50만원 미만	7.2(86)
3) 50만원 ~ 69만원	6.2(74)
4) 70만원 ~ 89만원	11.6(138)
5) 90만원 ~ 119만원	21.7(258)
6) 120만원 ~ 149만원	19.4(231)
7) 150만원 ~ 199만원	15.8(188)
8) 200만원 ~ 249만원	10.1(120)
9) 250만원 이상	6.7(80)

### 3. 학력

1) 학교에 다닌 적 없다	2.6(31)
2) 국졸	7.4(89)
3) 중졸 또는 중퇴	13.8(165)
4) 고졸 또는 중퇴	41.9(502)
5) 전문대졸 또는 4년제 대학중퇴 (재학생 포함)	16.9(202)
6) 4년제 대학졸	15.2(182)
7) 대학원 이상	2.3(27)

### 5. 결혼여부

1) 미혼	25.6(307)
2) 기혼(별거 · 이혼 · 사별 등 포함)	74.4(893)

### 4. 한달 평균소득

### 6. 종교

#### 가) 본인

1) 없다	29.7(356)
2) 50만원 미만	14.5(173)
3) 50만원 ~ 69만원	10.4(124)
4) 70만원 ~ 89만원	12.7(152)
5) 90만원 ~ 119만원	13.0(156)

1) 불교	28.5(342)
2) 기독교(개신교)	21.5(258)
3) 가톨릭교(천주교)	10.1(121)
4) 유교	2.3(27)
5) 민족종교(원불교,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등)	0.4(5)
6) 없다	36.8(442)

## 7) 기타

0.4(5)

## 7. 성장지(만 20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 가) 지역

1) 서울	14.2(170)
2) 인천·경기	13.8(166)
3) 강원	4.8(58)
4) 충북	5.5(66)
5) 대전·충남	8.3(100)
6) 전북	8.2(98)
7) 광주·전남	11.2(134)
8) 대구·경북	15.0(180)
9) 부산·경남	17.8(214)
10) 제주	0.3(3)
11) 이북	0.8(9)
12) 해외	0.1(1)

## 나) 규모

1) 대도시(특별·직할시)	33.5(401)
2) 중소도시	26.1(313)
3) 읍·면 이하	40.4(484)

## 8. 직업

## 전문직

1) 의사	0.3(3)
2) 약사, 간호사	1.9(23)
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등	-
4) 대학교수, 연구원	0.3(3)
5) 교사, 강사	3.3(40)
6) 언론인, 방송인	0.4(5)
7) 종교인, 체육인, 예술가	0.6(7)
8) 항공기, 선박 승무원	-
9) 기타	0.8(9)

## 관리직

11) 기업체 경영주(5인이상고용)	1.3(16)
12) 기업체 간부(부장이상)	1.4(17)
13) 사회단체 직원(과장급이하)	0.1(1)
14) 사회단체 간부	-

15) 군인(영관급이상)

16) 기타 관리직

## 사무직

21) 회사원, 은행원(과장급이하)	11.8(141)
22) 일반공무원(사무관이하)	1.4(17)
23) 사회단체 직원(과장급이하)	0.3(3)
24) 타이피스트	0.3(3)
25) 전화교환수, 집배원	0.2(2)
26)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0.5(6)
27) 기타 사무직	0.6(7)

## 판매·서비스직

31) 소규모가게주인(5인미만고용)	9.0(108)
32) 음식점, 여관, 이·미용실, 세탁소 등의 주인	5.2(62)
33) 복역방, 부동산중개인	1.3(16)
34) 판매점원	1.3(15)
35) 서비스직 피고용인	1.8(21)
36) 수위, 청소부, 파출부	1.3(16)
37) 의판원	0.7(8)
38) 행상, 노점상	1.0(12)
39) 기타 판매·서비스직	2.8(33)

## 생산직

41)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0.3(4)
42) 숙련기능공	3.3(39)
43) 반숙련공, 견습공, 비숙련공	1.2(14)
44) 운전사(자동차, 중장비)	1.7(20)
4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1.8(21)
46) 광부	-
47) 기타 생산직	0.3(3)

## 농어민

51) 부농(2정보, 6,000평 이상)	0.1(1)
52) 중농(1~2정보, 3,000~5,999평)	2.4(29)
53) 소농(0.5~1정보, 1,500~2,999평)	2.1(25)
54) 빈농(0.5정보, 1,500평 이하), 소작농	2.1(25)
55) 농업노동자·품일꾼	0.2(2)
56) 축산·낙농업자	0.3(3)

57) 선주	-	3)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9(577)
58) 어부, 수산·양식업자	-		
59) 기타	0.1(1)		
<b>기타</b>		<b>11. 여성의 흡연</b>	
61) 학생	6.7(80)	1) 괜찮다	6.2(74)
62) 주부	19.8(238)	2) 가급적 안피우는 것이 좋다	42.5(510)
63) 군인(사병)	1.1(13)	3) 안된다	51.3(616)
64) 무직(실업)	4.3(52)		
6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0.9(11)	<b>12. 성향의 자기진단</b>	
66) 기타	0.1(1)	1) 진보적이다	21.7(260)
<b>9. 생활수준</b>		2) 중도적이다	47.0(564)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0.1(1)	3) 보수적이다	31.3(375)
2) 잘 사는 편이다	4.6(55)		
3) 중간정도이다	72.6(871)	<b>13. 거주지역</b>	
4) 못 사는 편이다	20.8(249)	1) 서울	25.1(301)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2.0(24)	2) 인천·경기	19.5(234)
<b>10.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부담</b>		3) 강원	3.6(43)
1) 부부가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48.1(577)	4) 충청	10.0(120)
2) 가급적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호남	12.9(155)
	35.9(430)	6) 영남	28.9(347)
		<b>14. 거주지역규모</b>	
		1) 대도시(특별·직할시)	49.0(588)
		2) 중소도시	28.3(340)
		3) 읍·면·이하	22.7(272)

## 1994년 조사

※ 단위 : %(명)

항 목	구 分						합 계
	분 포						
성	남 자			여 자			100.0 (1,199)
	53.0(635)			47.0(564)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0.0 (1,200)
	28.0(336)	26.3(316)	21.8(262)	23.8(286)			
학 력	국 졸 이 하	중 졸	고 졸	대 재 이상			100.0 (1,198)
	10.0(120)	13.8(165)	41.9(502)	34.3(411)			
직 업	전문 · 판리 직	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학 생	100.0 (1,200)
	10.3 (124)	16.9 (203)	24.3 (291)	8.4 (101)	7.2 (86)	6.7 (80)	
가구소득	70만원 미 만	70~119만원	120~199만원	200만원 이상			100.0 (1,189)
	14.6(174)	33.3(396)	35.2(419)	16.8(200)			
종 교	불 교	기독교	천주교	유 교	무종교	기 타	100.0 (1,200)
	28.5 (342)	21.5 (258)	10.1 (121)	2.3 (27)	36.8 (442)	0.8 (10)	
성 향	진 보 적		중 도 적	보 수 적			100.0 (1,198)
	17.9(215)		51.7(619)	30.3(363)			
거주지역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호 남	영 남	100.0 (1,200)
	25.1 (301)	19.5 (234)	3.6 (43)	10.0 (120)	12.9 (155)	28.9 (347)	
지역규모	대 도 시		중 · 소도시		읍 · 면 이 하		100.0 (1,200)
	49.0(588)		28.3(340)		22.7(272)		

## 1991년 조사

※ 단위 : %(명)

항 목	구 分							합 계
	분 포							
성	남 자				여 자			100.0 (1,999)
	53.1(1062)				46.9(937)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0.0 (2,000)
	30.2(604)		26.1(522)		21.6(432)		22.1(442)	
학 력	국 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 채 이상	100.0 (1,999)
	10.1(201)		14.3(285)		39.5(790)		36.2(723)	
직 업	전문 · 관리직	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학 생	주 부	기타 · 무 직
	12.3 (246)	14.4 (288)	22.2 (443)	7.0 (140)	10.2 (203)	7.5 (149)	20.6 (411)	5.8 (115)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50~89만원		90~149만원		150만원 이상	100.0 (1,979)
	14.5(286)		38.6(764)		31.5(623)		15.5(306)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민족종교	무종교	기타	100.0 (1,997)
	24.9 (498)	9.2 (184)	27.1 (541)	2.3 (45)	0.8 (15)	33.5 (709)	0.3 (5)	
성 향	진 보 적			중 도 적			보 수 적	100.0 (1,991)
	23.5(468)			28.1(560)			48.4(963)	
거주지역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제 주	100.0 (2,000)
	25.4 (507)	18.3 (366)	3.6 (71)	9.8 (196)	12.5 (249)	29.0 (581)	1.5 (30)	
지역규모	대 도 시			중 · 소도시			읍 · 면 이하	100.0 (2,000)
	48.2(963)			26.1(521)			25.8(516)	

### III. 기본빈도표

1994년 조사

법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공평하다	13.0(156)
2) 민주적이다	12.8(153)
3) 엄격하다	19.1(229)
4) 편파적이다	24.9(298)
5) 권위적이다	30.3(363)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통치를 위하여	8.2(98)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70.9(849)
3) 사회개혁을 위하여	1.2(14)
4) 분쟁해결을 위하여	2.2(26)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4.2(50)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3.4(161)
3. 만약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1.3(16)
2) 마찬가지일 것이다	3.4(41)
3) 불편할 것이다	21.7(260)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73.6(882)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 바람직하다	21.0(251)
2) 합리적이다	30.4(364)
3) 물인정하다	24.5(293)
4) 불쾌하다	24.2(290)

\* 단위 : %(명)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물인정하다
- 4) 불쾌하다

5. “법을 여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                |           |
|----------------|-----------|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9.7(116)  |
| 2) 대체로 동의한다    | 20.4(245) |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30.8(369) |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9.1(469) |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 |                            |           |
|----------------------------|-----------|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24.3(291) |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1.5(18)   |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32.3(387) |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 진다  | 40.8(489) |
| 5) 기타                      | 1.3(15)   |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무조건 들어 준다	0.8(10)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31.2(374)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52.1(625)
4) 무조건 거절한다	15.8(190)

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61.8(740)
2) 그렇지 않다	38.2(457)

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정치 참여	8.8(65)
2) 재산상속	5.6(41)
3) 취업 및 승진	69.3(511)
4) 가정에서의 역할	14.0(103)
5) 기타	2.3(17)

9.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2.3(27)
2) 치료비를 받는다	16.6(199)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81.1(971)

법생활에 대한 커하의 입장과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1.1(253)  
 2) 그렇지 않다 78.9(946)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2.5(305)

2) 법이 불공평하므로 21.3(200)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9(234)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1.5(108)

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9.8(92)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정치인	42.6(800)
2) 공무원	14.2(267)
3) 법조인	9.0(184)
4) 교육자	4.8(86)
5) 기업인	20.0(375)
6) 근로자	1.0(18)
7) 종교인	4.5(84)
8) 대학생	2.2(42)
9) 농어민	1.1(21)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정치분야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3(15)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9.2(229)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67.5(805)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2.0(143)

#### 나) 행정분야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4.1(49)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9.0(583)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3.7(519)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2(38)

**다) 경제계**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1.7(20)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3.7(398)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7.5(680)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7.1(84)   |

**라) 노사관계**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4.0(47)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3.3(51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6.5(550)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6.3(74)   |

**마) 교육계**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3.3(3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8.7(460)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1.1(60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7.0(83)   |

**바) 교통질서**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2.3(28)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0.3(361)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3.9(642)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13.5(161) |

**사) 행락질서**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0.7(8)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15.9(190)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1.8(61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1.6(377) |

**12. 다음은 동창회·계·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           |           |
|-----------|-----------|
| 1) 그렇다    | 60.5(723) |
| 2) 그렇지 않다 | 39.5(473) |

**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만 응답하십시오.)**

- |            |           |
|------------|-----------|
| 1) 친한 사이라서 | 16.2(76)  |
| 2) 벌칙이 약해서 | 6.8(32)   |
| 3) 이익이 없어서 | 12.0(56)  |
| 4) 생활이 바빠서 | 59.0(276) |
| 5) 기타      | 6.0(28)   |

**13.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                                    |           |
|------------------------------------|-----------|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br>하다       | 63.5(762) |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16.9(203) |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br>벌은 지나친다 | 19.6(235) |

**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  
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  
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  
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신지  
요?**

- |               |           |
|---------------|-----------|
|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 46.4(556) |
|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 32.2(386) |
| 3) 약간 불편하다    | 18.5(222) |
| 4) 매우 불편하다    | 2.9(35)   |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  
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당연히 신고한다      | 65.2(782) |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17.1(205) |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3.8(46)   |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2.5(30)   |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11.4(137) |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가)			
1) 부정부패	61.7(740)	2) 대충 본다	55.6(667)
2) 탈세	6.2(74)	3) 거의 보지 않는다	16.0(192)
3) 부동산투기사범	11.3(136)	4) 전혀 보지 않는다	6.3(75)
4) 환경사범	13.2(158)		
5) 경제사범(매점·매석 등)	7.2(86)		
6) 기타	0.4(5)		
나)			
1) 성폭행	36.0(431)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 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 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2) 조직폭력배	26.1(313)		
3) 마약사범	8.3(99)	1) 자주 있었다	2.8(34)
4) 강·절도사범	25.0(300)	2) 한 두 번 있었다	33.0(396)
5) 음주운전	4.2(50)	3) 전혀 없었다	64.1(769)
6) 기타	0.4(5)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몰음 입니다.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가) 귀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1) 매우 잘되고 있다	1.8(22)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29.4(352)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24.2(290)	3)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59.6(713)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4)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9.2(110)
6) 기타	0.6(7)		
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0.9(850)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15.7(187)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1(109)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25.4(303)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9.8(118)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7(68)
4) 학교에서 배워서	3.4(41)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2.1(622)
5) 사건을 겪고 나서	4.9(59)	5) 기타	1.1(13)
6) 정부홍보물을 통하여	1.8(22)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 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1) 자세히 본다	22.2(266)	1) 자세히 본다	33.6(403)
		2) 대충 본다	44.8(537)
		3) 안본다	18.1(217)

-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3.6(43)
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50.9(611) |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14.6(175) |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7.8(93)   |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16.3(196) |
|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 10.4(125) |
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18.1(217) |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22.3(267) |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9.9(598) |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9.8(117)  |
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16.4(197) |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48.9(587) |
|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33.8(406) |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0.8(10)   |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6.3(75)   |
| 2) 치료비만 받는다          | 26.6(318) |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3.3(517) |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 23.8(285) |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 하시겠습니까?
- |                          |            |
|--------------------------|------------|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 84.4(1013) |
| 2)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4.9(59)    |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3.4(41)    |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 7.3(87)    |
27.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고위공무원   | 8.6(103)  |
| 2) 변호사     | 26.3(314) |
| 3) 판·검사    | 25.4(303) |
| 4) 담당행정공무원 | 22.3(267) |
| 5) 경찰관     | 10.0(120) |
| 6) 정치인     | 4.7(56)   |
| 7) 기타      | 2.7(32)   |
- 국회·행정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8.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그렇다       | 11.7(140) |
| 2) 대체로 그렇다   | 26.1(313)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9.8(597)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12.4(148) |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띠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1) 그렇다       | 80.3(963) |
| 2) 그렇지 않다    | 8.0(96)   |
| 3) 읽어본 적이 없다 | 11.7(140) |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74.6(895)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15.1(181)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1.8(21)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7.0(84)
5) 기타	1.5(18)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2.8(33)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0.5(48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1.7(616)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5.0(60)   |

나) 행정 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3.4(40)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2.4(624)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1.7(497)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5(30)   |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5.4(64)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45.7(544)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4.6(531)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3(51)   |

라) 경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8.3(9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4.2(645)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4.3(40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1(37)   |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11.7(13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9.1(703)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6.6(317)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6(31)   |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36.4(437) |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56.9(682) |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9(59)   |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8(21)   |

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바람직하다    | 76.6(918) |
| 2) 바람직하지 않다 | 23.4(280) |

34. 귀하는 금전 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나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32.5(389) |
| 2) 소송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 | 21.5(258) |
| 3)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35.6(427) |
| 4)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 스럽다       | 9.3(112)  |
| 5) 기타                            | 1.0(12)   |

현행 법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 풍토 및 정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 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 개혁과 높은 준법 정신 | 50.0(599) |
| 2) 선거 관계 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          | 13.1(157) |
| 3) 유권자의 의식 개혁과 철저한 고발 정신       | 36.2(434) |
| 4) 기타                          | 0.8(9)    |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0.2(362) |
|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 된다   | 13.1(157) |
|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 43.7(524) |
| 4)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 13.0(156) |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3.8(45)   |
| 2)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하다   | 35.2(422) |
| 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 42.2(506) |
| 4) 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 18.9(227) |
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7(32)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57.4(686) |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의 3)번 또는 4)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 |                |           |
|----------------|-----------|
| 1) 사용자         | 24.3(116) |
| 2) 근로자         | 2.5(12)   |
| 3) 정부          | 16.1(77)  |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57.1(273) |
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69.8(837) |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24.4(293) |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 4.8(57)   |
| 4) 기타                             | 1.1(13)   |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
|------------------|-----------|
| 1) 시집간 딸         | 0.2(2)    |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66.1(793) |
| 3) 똑 같다          | 29.1(349) |
| 4) 잘 모르겠다        | 4.7(56)   |

# 1991년 조사

귀하의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           |
|----------|-----------|
| 1) 공평하다  | 13.4(267) |
| 2) 민주적이다 | 11.1(221) |
| 3) 엄격하다  | 18.9(378) |
| 4) 편파적이다 | 24.7(494) |
| 5) 권위적이다 | 32.0(640) |

##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 8.2(98)   |
| 2)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70.9(849) |
| 3)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 1.2(14)   |
| 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 2.2(26)   |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 4.2(50)   |
| 6)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 13.4(161) |

## 3. 만약 이 세상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 3.3(66)    |
| 2) 마찬가지일 것이다  | 7.5(149)   |
| 3) 불편할 것이다    | 89.3(1785) |

##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           |
|----------|-----------|
| 1) 바람직하다 | 16.8(336) |
| 2) 합리적이다 | 32.3(645) |
| 3) 물인정하다 | 23.9(478) |
| 4) 불쾌하다  | 26.9(538) |

##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단위 : %(명)

- |                  |           |
|------------------|-----------|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9.4(187)  |
| 2) 대체로 동의한다      | 22.5(450) |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26.0(520) |
| 4)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 42.2(843) |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           |
|----------------------------|-----------|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24.5(490) |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1.6(32)   |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 30.6(612) |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 진다  | 42.2(844) |
| 5) 기타                      | 1.0(20)   |

##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무조건 들어 준다   | 1.5(30)   |
|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 33.9(676) |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 49.9(997) |
| 4) 무조건 거절한다    | 14.7(294) |

## 8.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정치참여     | 11.0(219)  |
| 2) 재산상속     | 10.2(202)  |
| 3) 취업 및 승진  | 60.3(1198) |
| 4) 가정에서의 역할 | 15.7(311)  |

5) 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	1.4(27)	3) 기업가	15.6(263)
6) 기타	1.5(30)	4) 지식인	2.4(41)
<b>9. 농촌에서의 수박이나 무우서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b>			
1) 염연히 도둑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	3.8(76)	5) 종교인	1.1(19)
2) 돈으로 변상받는 게 좋다	11.8(236)	6) 근로자	1.2(21)
3) 큰 피해가 아닌 한 용서하는게 옳다	84.4(1686)	7) 대학생	2.8(47)
8) 농어민			

- 1) 염연히 도둑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 3.8(76)  
2) 돈으로 변상받는 게 좋다 11.8(236)  
3) 큰 피해가 아닌 한 용서하는게 옳다  
84.4(1686)

**법생활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17.6(352)  
2) 그렇지 않다 82.4(1645)

-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법이 불공평하므로 19.9(326)  
2)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2.6(206)  
3)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3.2(544)  
4)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1(395)  
5) 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0.4(170)

- 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61.8(1043)  
2) 공무원 11.0(186)

-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분야**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1.4(27)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16.0(316)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8.6(1160)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24.1(477)

**나) 행정분야**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3.7(74)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42.7(843)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45.6(901)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8.0(158)

**다) 경제계**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40)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6.0(513)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6.8(1119)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5.2(299)

**라) 노사관계**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0(39)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28.7(565)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55.0(1081)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4.3(282)

**마) 교육계**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8.2(163)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1.7(1023)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33.4(661)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6(130)

#### 바) 교통질서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3.0(59)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2.9(652) |
|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7.6(942)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16.6(328) |

#### 사) 행락질서

- |                     |           |
|---------------------|-----------|
|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1.7(34)   |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18.6(368) |
| 3)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6.9(928)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2.8(649) |

12. 다음은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           |            |
|-----------|------------|
| 1) 그렇다    | 52.9(1053) |
| 2) 그렇지 않다 | 47.1(939)  |

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                          |           |
|--------------------------|-----------|
| 1) 친한 사이라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0.2(378) |
| 2) 벌칙이 약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16.5(155) |
| 3) 이익이 없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9.3(275) |
| 4) 생활이 바빠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6.8(64)   |
| 5) 의식이 부족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3.0(28)   |
| 6) 기타                    | 4.3(40)   |

13. 귀하는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 꽁

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                                |            |
|--------------------------------|------------|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54.9(1098) |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11.4(227)  |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친다 | 33.7(674)  |

14. 집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더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그럴 수도 있다                     | 15.4(307)  |
| 2)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 56.1(1121) |
| 3) 탈세(양도소득세의 포탈)이므로 처벌하여야 한다    | 28.6(571)  |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언제나 신고한다      | 48.6(971) |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24.0(480) |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5.1(101)  |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3.0(59)   |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19.4(388) |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 가)

- |            |            |
|------------|------------|
| 1) 부정부패    | 56.0(1116) |
| 2) 탈세      | 3.4(68)    |
| 3) 부동산투기사범 | 24.1(481)  |
| 4) 공해사범    | 16.0(318)  |
| 5) 기타      | 0.5(10)    |

#### 나)

- |          |           |
|----------|-----------|
| 1) 성폭행   | 18.9(377) |
| 2) 가정파괴범 | 50.0(997) |
| 3) 조직폭력배 | 21.3(425) |
| 4) 마약사범  | 8.8(176)  |

5) 기타	0.9(18)	5) 재산문제	17.4(100)
<b>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b>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4.9(1497)	6) 보증문제	9.6(55)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2(184)	7) 상속문제	1.2(7)
3) 책을 보고서	6.2(124)	8)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	4.9(28)
4) 학교에서 배워서	4.1(81)	9) 기타	3.3(19)
5) 사건을 겪고 나서	5.6(112)		
<b>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b>			
1) 자세히 본다	21.2(423)	1) 자세히 본다	27.6(551)
2) 대충 본다	59.6(1192)	2) 대충 본다	46.9(937)
3) 거의 보지 않는다	14.6(291)	3) 안본다	21.1(422)
4) 전혀 보지 않는다	4.7(94)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4.4(87)
<b>19. 귀하는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b>			
1) 자주 있었다	2.9(57)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6.3(1125)
2) 가끔 있었다	20.9(417)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3.1(262)
3) 한 번은 있었다	18.8(376)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3(166)
4) 전혀 없었다	57.5(1148)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4.0(280)
<b>20. 다음은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 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음입니다.</b>			
가) 귀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8.9(578)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7.7(353)
2) 없다	71.1(1422)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1.3(425)
나) 만약 가 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가 본 적이 있으신 분만 응답하시오.)			
1) 행정소송	11.1(64)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6(989)
2) 형사문제	25.9(149)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11.4(227)
3) 즉심	11.5(66)		
4) 증인	15.1(87)		
<b>21. 은행에 저축할 때 통장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b>			
<b>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b>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6.3(1125)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13.1(262)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3(166)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4.0(280)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8.3(166)		
<b>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b>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17.7(353)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21.3(425)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9.6(989)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11.4(227)		
<b>24. 불량품(TV,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b>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0.6(41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48.8(975)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9.7(593)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1.0(19)

##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6.8(136)  |
| 2) 치료비만 받는다          | 25.2(502) |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3.2(861) |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 24.8(494) |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 85.9(1718) |
| 2)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5.3(105)   |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2.8(56)    |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 6.0(120)   |

27. 귀하는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고위층 인사     | 27.3(542) |
| 2) 변호사        | 33.2(658) |
| 3) 판·검사       | 21.3(423) |
| 4) 면·동이나 구청직원 | 5.0(99)   |
| 5) 경찰관        | 9.1(181)  |
| 6) 도움되지 않는다   | 2.0(40)   |
| 7) 기타         | 2.0(39)   |

- |              |           |
|--------------|-----------|
| 1) 그렇다       | 15.2(303) |
| 2) 조금은 그렇다   | 30.8(614)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0.6(810)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13.5(269) |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1) 그렇다       | 79.5(1587) |
| 2) 그렇지 않다    | 7.8(155)   |
| 3) 읽어본 적이 없다 | 12.7(253)  |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66.3(1323) |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18.5(369)  |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2.8(55)    |
|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
|                      | 11.3(226)  |
| 5) 기타                | 1.1(22)    |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 |                |           |
|----------------|-----------|
| 1) 공정하다        | 5.8(115)  |
| 2) 대체로 공정하다    | 42.7(848)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39.4(782) |
| 4) 공정하지 않다     | 12.1(240) |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 |                |           |
|----------------|-----------|
| 1) 공정하다        | 6.8(135)  |
| 2) 대체로 공정하다    | 50.0(991) |
|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 35.1(696) |
| 4) 공정하지 않다     | 8.0(159)  |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국회·행정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8.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1) 공정하다	4.6(92)	5) 기타	0.5(9)
2) 대체로 공정하다	40.8(809)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41.7(827)		
4) 공정하지 않다	12.9(255)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1) 공정하다	11.5(227)
2) 대체로 공정하다	50.4(996)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30.1(595)
4) 공정하지 않다	8.1(160)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 공정하다	19.7(391)
2) 대체로 공정하다	55.0(1090)
3)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19.6(389)
4) 공정하지 않다	5.6(111)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40.3(805)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3.9(1076)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93)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24)

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바람직하다	78.8(1575)
2) 바람직하지 않다	21.2(423)

34.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37.0(739)
2)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다	13.8(275)
3) 나의 권리를 위해서는 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9.6(590)
4) 재판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19.1(382)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5.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에 관한 법	25.2(500)
2) 행정에 관한 법	6.5(130)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7.6(150)
4) 경제에 관한 법	8.8(175)
5) 조세에 관한 법	16.3(324)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9.6(190)
7) 농어촌에 관한 법	17.9(355)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6.8(135)
9) 기타	1.4(27)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0(580)
2)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12.5(250)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52.3(1046)
4) 판단이 서지 않는다	6.2(123)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 만하다	31.4(628)
2)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	

기 어렵다	61.5(1230)	1) 차량소지자에 대한 재산권침해이므로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9.0(180)
3) 판단이 서지 않는다	7.1(141)	2) 비상사태(걸프만 전쟁)가 끝났으므로 해제조치는 당연하다	11.9(238)
38. 만약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3) 운행제한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계속 시행할 만 했다 16.3(325)
1) 경영진	27.1(542)	4)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계속 시행할 만한 조치였다	54.7(1092)
2) 근로자	2.5(50)	5) 5부제운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8.1(162)
3) 정부	11.8(236)		
4) 재야 및 운동권학생	4.8(95)		
5)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2.0(1039)		
6) 요즈음은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8(36)		
39. 중동의 걸프만전쟁 당시 실시되었던 차량 10부제 운행이 최근에 해제되 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 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1) 시집간 딸	0.6(11)	1) 시집간 딸	0.6(11)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74.9(1497)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74.9(1497)
3) 똑 같다	19.9(398)	3) 똑 같다	19.9(398)
4) 잘 모르겠다	4.7(93)	4) 잘 모르겠다	4.7(93)

## IV. 교차집계표

문항 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공평하다	② 민주적 이다	③ 엄격하다	④ 편파적 이다	(단위 : %) ⑤ 권위적 이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3	13.4 12.6	13.7 11.7	17.0 21.5	26.5 23.1	29.4 31.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5	7.7 9.5 12.6 23.5	13.1 8.9 10.7 18.6	17.0 21.5 24.0 14.4	23.5 28.8 23.3 23.5	38.7 31.3 29.4 20.0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1 411	23.3 14.5 13.2 9.2	15.8 17.0 12.6 10.5	14.2 26.7 19.0 17.8	27.5 20.0 26.1 24.3	19.2 21.8 29.1 38.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7 77	11.3 10.3 13.7 12.9 15.1 6.3 14.8 19.5	9.7 12.3 12.7 15.8 12.8 8.8 11.8 22.1	13.7 24.6 17.9 17.8 24.4 30.2 22.4 7.8	28.2 23.2 23.7 25.7 30.2 27.5 24.5 19.5	37.1 29.6 32.0 27.7 17.4 42.5 26.6 31.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3 396 419 200	16.2 14.1 12.6 9.0	16.2 13.6 11.0 11.5	22.0 19.4 18.1 17.5	24.3 24.5 24.3 27.5	21.4 28.3 33.9 34.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7 121 27 442 10	15.2 12.5 11.6 29.6 10.9 20.0	12.9 16.7 9.9 7.4 11.8 -	20.5 16.7 24.0 11.1 18.8 10.0	25.1 24.9 23.1 14.8 25.8 20.0	26.3 29.2 31.4 37.0 32.8 5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7 506	9.3 13.5 15.2	14.6 11.9 11.9	16.5 20.2 20.4	23.9 25.4 25.3	35.7 29.1 27.3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4 347	15.0 12.8 9.3 12.5 11.0 13.0	10.3 13.2 16.3 11.7 15.6 13.3	16.3 15.8 20.9 23.3 23.4 20.2	26.2 28.6 20.9 18.3 24.0 24.2	32.2 29.5 32.6 34.2 26.0 29.4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1	14.3 11.2 12.5	11.4 11.8 17.0	17.5 23.5 17.0	25.5 24.7 23.6	31.3 28.8 29.9

문항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 수 (명)	① 국가통치 를 위하여	②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③ 사회개혁 을 위하여	④ 분쟁해결 을 위하여	⑤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	① 남 ② 여	635 562	10.1 6.0	70.2 71.7	1.1 1.2	2.8 1.4	2.7 5.9	13.1 13.7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5 316 261 286	7.8 7.0 5.4 12.6	77.6 73.4 75.1 56.3	0.6 1.9 1.1 1.0	3.9 1.9 1.5 1.0	1.8 3.2 5.4 7.0	8.4 12.7 11.5 22.0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19 165 502 410	11.8 9.1 7.0 8.3	47.9 57.0 75.3 77.8	1.7 3.0 1.0 0.5	0.8 1.2 2.0 3.2	14.3 5.5 4.0 1.0	23.5 24.2 10.8 9.3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5 80 238 76	6.5 7.9 8.9 5.0 8.2 8.8 6.3 18.4	83.9 76.8 70.4 66.3 58.8 71.3 66.8 67.1	0.8 0.5 1.7 - 2.4 - 1.3 2.6	1.6 1.5 2.1 2.0 3.5 7.5 1.7 -	3.2 2.0 4.5 5.0 8.2 - 7.1 -	4.0 11.3 12.4 21.8 18.8 12.5 16.8 11.8
가구 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3 395 419 200	8.1 9.1 8.1 6.0	60.1 69.9 74.7 75.5	2.3 1.8 0.5 0.5	2.3 1.5 2.4 3.0	8.7 3.3 2.4 4.5	18.5 14.4 11.9 10.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6 121 27 442 10	6.7 9.0 4.1 3.7 10.4 -	68.7 71.5 73.6 77.8 71.3 60.0	1.5 0.4 0.8 3.7 1.4 -	2.0 3.9 0.8 - 1.8 -	5.6 2.3 5.0 3.7 3.6 20.0	15.5 12.9 15.7 11.1 11.5 2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3 328 505	7.7 5.5 9.9	73.3 75.3 66.5	1.1 1.2 1.2	3.3 2.4 1.2	1.7 4.3 5.9	12.9 11.3 15.2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4 347	9.7 6.0 7.0 9.2 5.8 9.2	69.7 73.1 60.5 77.5 68.8 70.3	1.0 1.3 4.7 - 2.6 0.6	3.7 0.9 2.3 1.7 1.3 2.3	3.0 3.8 4.7 5.8 3.2 5.2	13.0 15.0 20.9 5.8 18.2 12.4
지역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1	9.2 8.5 5.5	71.7 70.0 70.1	1.0 1.2 1.5	2.6 1.8 1.8	3.4 5.3 4.4	12.1 13.2 16.6

문항 3. 만약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명)	① 차라리 나을 것이다	②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불편할 것이다	④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성	① 남		634	1.7	3.0	19.4	75.9
	② 여		564	0.7	3.9	24.3	71.1
연령	① 20대		335	0.9	5.7	26.3	67.2
	② 30대		316	2.2	3.2	24.4	70.3
	③ 40대		262	0.8	2.3	17.9	79.0
	④ 50대 이상		286	1.4	2.1	16.8	79.7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0.8	2.5	20.8	75.8
	② 중졸		165	1.8	1.8	15.8	80.6
	③ 고졸		502	1.0	3.8	21.3	73.9
	④ 대재 이상		410	1.7	3.9	24.6	69.8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1.6	3.2	23.4	71.8
	② 사무직		203	2.0	4.9	25.6	67.5
	③ 판매·서비스직		291	1.4	3.1	17.5	78.0
	④ 생산직		101	-	4.0	21.8	74.3
	⑤ 농어업		86	1.2	4.7	23.3	70.9
	⑥ 학생		79	1.3	3.8	24.1	70.9
	⑦ 주부		238	0.8	2.9	21.4	74.8
	⑧ 기타·무직		77	2.6	-	20.8	76.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1.1	2.9	20.7	75.3
	② 70~119만원		395	0.8	3.3	20.0	75.9
	③ 120~199만원		419	1.9	3.6	21.5	73.0
	④ 200만원 이상		200	1.5	3.5	27.0	68.0
종교	① 불교		341	1.5	2.9	21.7	73.9
	② 기독교		258	1.9	3.5	20.5	74.0
	③ 천주교		121	0.8	5.0	21.5	72.7
	④ 유교		27	-	-	25.9	74.1
	⑤ 무종교		412	0.9	3.6	22.6	72.9
	⑥ 기타		10	10.0	-	-	90.0
성향	① 진보적		363	2.5	5.5	23.4	68.6
	② 중도적		328	0.9	3.0	22.3	73.8
	③ 보수적		506	0.8	2.2	20.2	76.9
거주지역	① 서울		300	1.7	6.0	22.7	69.7
	② 경기		234	0.4	1.7	18.8	79.1
	③ 강원		43	2.3	2.3	37.2	58.1
	④ 충청		120	3.3	4.2	23.3	69.2
	⑤ 호남		155	0.6	1.9	23.9	73.5
	⑥ 영남		347	1.2	2.9	19.3	76.7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1.2	4.4	19.8	74.6
	② 중·소도시		340	1.8	2.4	22.4	73.5
	③ 읍·면 이하		272	1.1	2.6	25.0	71.3

문항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합리적이다	③ 몰인정하다	④ 불쾌하다
성	① 남	634	19.4	29.3	25.6	25.7	
	② 여	563	22.6	31.6	23.3	22.6	
연령	① 20대	336	11.6	33.9	25.9	28.6	
	② 30대	315	20.6	26.7	26.0	26.7	
	③ 40대	262	21.0	32.4	23.3	23.3	
	④ 50대 이상	285	32.3	28.4	22.1	17.2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31.7	23.3	28.3	16.7	
	② 중졸	164	29.3	26.8	28.0	15.9	
	③ 고졸	501	21.0	35.1	18.4	25.5	
	④ 대재 이상	411	14.4	28.0	29.4	28.2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19.4	29.0	25.0	26.6	
	② 사무직	203	15.3	37.9	26.6	20.2	
	③ 판매·서비스직	291	21.6	26.8	23.4	28.2	
	④ 생산직	101	11.9	33.7	14.9	39.6	
	⑤ 농어업	86	24.4	31.4	32.6	11.6	
	⑥ 학생	80	11.3	25.0	31.3	32.5	
	⑦ 주부	237	30.0	28.3	21.1	20.7	
	⑧ 기타·무직	76	26.3	32.9	28.9	11.8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28.3	34.7	22.0	15.0	
	② 70~119만원	395	22.5	30.6	21.8	25.1	
	③ 120~199만원	419	17.7	30.8	28.2	23.4	
	④ 200만원 이상	200	18.5	25.5	25.0	31.0	
종교	① 불교	342	23.4	27.5	23.1	26.0	
	② 기독교	257	22.6	29.6	24.1	23.7	
	③ 천주교	121	18.2	30.6	27.3	24.0	
	④ 유교	26	30.8	34.6	11.5	23.1	
	⑤ 무종교	442	18.3	33.0	25.6	23.1	
	⑥ 기타	10	20.0	20.0	30.0	30.0	
성향	① 진보적	364	15.9	33.5	26.9	23.6	
	② 중도적	328	20.4	27.7	24.1	27.7	
	③ 보수적	504	24.6	30.0	23.0	22.4	
거주지역	① 서울	300	21.0	28.0	25.0	26.0	
	② 경기	233	20.6	32.2	22.7	24.5	
	③ 강원	43	27.9	32.6	20.9	18.6	
	④ 충청	120	20.0	30.8	21.7	27.5	
	⑤ 호남	155	18.1	38.1	23.2	20.6	
	⑥ 영남	347	21.9	27.4	27.1	23.6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20.8	29.1	24.2	25.9	
	② 중·소도시	339	21.2	30.7	25.4	22.7	
	③ 읍·면 이하	272	21.0	32.7	23.9	22.4	

문항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성	① 남	634	10.6	20.3	25.6	43.5	
	② 여	564	8.7	20.6	36.7	34.0	
연령	① 20대	336	8.6	22.3	31.8	37.2	
	② 30대	316	9.8	25.9	32.6	31.6	
	③ 40대	262	8.8	17.9	34.7	38.5	
	④ 50대 이상	285	11.6	14.4	23.9	50.2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15.8	12.5	22.5	49.2	
	② 중졸	165	11.5	16.4	31.5	40.6	
	③ 고졸	502	9.6	21.3	29.5	39.6	
	④ 대재 이상	410	7.3	23.4	34.4	34.9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8.9	21.8	34.7	34.7	
	② 사무직	203	7.9	22.7	38.4	31.0	
	③ 판매·서비스직	290	11.4	24.5	26.2	37.9	
	④ 생산직	101	11.9	9.9	20.8	57.4	
	⑤ 농어업	86	12.8	17.4	23.3	46.5	
	⑥ 학생	80	6.3	21.3	37.5	35.0	
	⑦ 주부	238	8.4	20.6	34.0	37.0	
	⑧ 기타·무직	77	10.4	13.0	26.0	50.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10.9	15.5	24.7	48.9	
	② 70~119만원	396	8.6	22.2	30.3	38.9	
	③ 120~199만원	419	9.5	20.8	33.2	36.5	
	④ 200만원 이상	199	11.1	20.6	32.7	35.7	
종교	① 불교	341	11.7	17.0	33.4	37.8	
	② 기독교	258	6.6	23.3	26.0	44.2	
	③ 천주교	121	9.9	16.5	35.5	38.0	
	④ 유교	27	-	29.6	25.9	44.4	
	⑤ 무종교	442	10.6	21.7	30.3	37.3	
	⑥ 기타	10	-	30.0	40.0	30.0	
성향	① 진보적	364	10.7	24.2	31.0	34.1	
	② 중도적	328	7.6	19.2	35.4	37.8	
	③ 보수적	505	10.3	18.6	27.5	43.6	
거주지역	① 서울	300	6.3	19.3	36.3	38.0	
	② 경기	234	11.5	17.5	24.8	46.2	
	③ 강원	43	7.0	18.6	34.9	39.5	
	④ 충청	120	15.0	20.8	30.8	33.3	
	⑤ 호남	155	9.0	18.7	27.1	45.2	
	⑥ 영남	347	10.1	24.2	31.1	34.6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8.2	20.1	34.1	37.6	
	② 중·소도시	340	11.2	20.6	26.8	41.5	
	③ 읍·면 이하	272	11.0	21.0	28.7	39.3	

문항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버지(남편)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어머니(아내)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④ 가족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⑤ 기 타
성	① 남 ② 여		635 564	24.9 23.6	0.8 2.3	30.9 33.9	42.5 38.7	0.9 1.6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6	25.3 21.8 23.3 26.6	2.4 1.3 1.1 1.0	26.5 39.9 38.9 24.5	44.6 35.8 35.9 46.2	1.2 1.3 0.8 1.7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29.2 27.3 22.1 24.1	1.7 - 2.6 0.7	20.0 34.5 36.1 30.2	46.7 35.8 38.6 43.8	2.5 2.4 0.6 1.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7	23.4 22.2 24.4 19.8 27.9 26.3 24.4 29.9	- 2.0 1.4 1.0 2.3 1.3 2.1 1.3	27.4 36.0 34.7 35.6 19.8 17.5 36.6 32.5	47.6 39.4 38.5 42.6 50.0 52.5 35.7 32.5	1.6 0.5 1.0 1.0 - 2.5 1.3 3.9
가구 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9 200	25.3 22.2 24.1 27.0	4.6 0.8 1.4 0.5	19.5 35.9 35.6 30.5	48.3 40.2 37.2 42.0	2.3 1.0 1.7 -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2 10	24.3 26.0 19.8 29.6 24.0 30.0	0.9 3.1 2.5 - 0.9 -	31.6 30.6 29.8 29.6 34.2 50.0	41.5 38.8 47.9 40.7 39.8 20.0	1.8 1.6 - - 1.1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6	20.3 22.0 28.7	2.2 1.8 0.8	28.3 35.1 33.2	47.8 39.9 36.2	1.4 1.2 1.2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7	22.9 19.2 25.6 22.5 28.4 27.4	2.3 0.9 - - 1.9 1.7	32.2 30.3 18.6 36.7 30.3 34.6	41.2 47.9 55.8 40.0 38.1 35.2	1.3 1.7 - 0.8 1.3 1.2
지역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2	22.6 26.5 25.0	1.7 0.9 1.8	35.2 32.1 26.1	39.1 39.4 46.0	1.4 1.2 1.1

문항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무조건 들어 준다	② 가능한 한 들어 준다	③ 가능한 한 거절한다	④ 무조건 거절한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3	0.9 0.7	33.2 29.0	50.1 54.4	15.7 16.0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5	0.3 0.6 1.1 1.4	28.3 36.4 30.2 29.8	56.5 51.3 57.3 43.2	14.9 11.7 11.5 25.6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0.8 2.4 0.6 0.5	30.8 40.6 33.7 24.6	36.7 35.2 51.2 64.5	31.7 21.8 14.5 10.5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 0.5 0.7 1.0 1.2 - 0.8 3.9	28.2 32.5 31.0 44.6 36.0 26.3 29.4 20.8	59.7 58.1 51.0 41.6 34.9 63.8 51.3 51.9	12.1 8.9 17.2 12.9 27.9 10.0 18.5 23.4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3 396 419 200	1.2 0.8 - 1.5	26.6 35.9 30.3 28.5	43.4 49.2 58.2 53.5	28.9 14.1 11.5 16.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1 10	1.5 1.2 - - 0.5 -	35.7 28.7 24.8 33.3 30.8 30.0	49.1 53.5 61.2 37.0 52.4 40.0	13.7 16.7 14.0 29.6 16.3 3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5	0.3 0.9 1.2	29.4 26.2 35.8	53.8 57.3 47.7	16.5 15.5 15.2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5 347	0.7 0.4 - 2.5 1.3 0.6	25.7 27.4 34.9 30.0 32.9 37.8	63.0 50.9 39.5 50.0 47.7 47.8	10.7 21.4 25.6 17.5 18.1 13.8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2	0.7 0.6 1.5	29.6 30.6 35.3	57.6 50.0 43.0	12.1 18.8 20.2

문항 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그 렇 다	② 그렇지 않다
성	① 남	632	50.0	50.0
	② 여	564	75.0	25.0
연령	① 20대	336	75.6	24.4
	② 30대	316	67.1	32.9
	③ 40대	261	59.8	40.2
	④ 50대 이상	284	41.5	58.5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35.0	65.0
	② 중졸	162	50.0	50.0
	③ 고졸	502	66.3	33.7
	④ 대재 이상	411	68.9	31.1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63.7	36.3
	② 사무직	203	63.1	36.9
	③ 판매·서비스직	291	56.7	43.3
	④ 생산직	100	58.0	42.0
	⑤ 농어업	86	37.2	62.8
	⑥ 학생	80	75.0	25.0
	⑦ 주부	238	76.5	23.5
	⑧ 기타·무직	75	48.0	52.0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51.7	48.3
	② 70~119만원	395	61.5	38.5
	③ 120~199만원	418	66.0	34.0
	④ 200만원 이상	200	64.0	36.0
종교	① 불교	342	59.1	40.9
	② 기독교	258	63.2	36.8
	③ 천주교	121	71.9	28.1
	④ 유교	27	44.4	55.6
	⑤ 무종교	439	61.5	38.5
	⑥ 기타	10	60.0	40.0
성향	① 진보적	363	72.7	27.3
	② 중도적	328	63.4	36.6
	③ 보수적	505	53.1	46.9
거주지역	① 서울	299	67.2	32.8
	② 경기	233	64.4	35.6
	③ 강원	43	69.8	30.2
	④ 충청	120	53.3	46.7
	⑤ 호남	155	60.0	40.0
	⑥ 영남	347	58.2	41.8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6	62.5	37.5
	② 중·소도시	340	64.7	35.3
	③ 읍·면 이하	271	56.8	43.2

문항 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 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응답 구분 변 수		빈 도 수 (명)	① 정치참여	② 재산상속	③ 취업 및 승진	④ 가정에서 의 역할	⑤ 기 타
성	① 남 ② 여	314 422	9.9 8.1	4.8 6.2	74.5 65.4	8.9 17.8	1.9 2.6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54 211 156 116	7.5 10.9 9.6 6.9	2.0 3.8 7.7 13.8	79.1 66.8 63.5 60.3	9.1 15.2 17.3 18.1	2.4 3.3 1.9 0.9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42 80 331 283	7.1 10.0 10.0 7.1	21.4 10.0 6.3 1.1	35.7 56.3 66.8 81.3	33.3 23.8 15.1 7.1	2.4 - 1.8 3.5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79 128 165 57 31 60 181 36	6.3 5.5 7.9 15.8 16.1 5.0 9.4 16.7	1.3 3.9 7.3 7.0 19.4 - 6.6 2.8	81.0 80.5 64.2 68.4 38.7 83.3 61.3 72.2	6.3 10.2 17.0 7.0 25.8 8.3 20.4 8.3	5.1 - 3.6 1.8 - 3.3 2.2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89 241 276 128	11.2 7.1 12.0 3.9	10.1 4.6 5.8 3.9	51.7 73.0 68.8 75.0	22.5 14.5 11.2 13.3	4.5 0.8 2.2 3.9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201 162 86 12 270 6	6.5 8.0 11.6 - 10.7 -	6.0 4.9 9.3 - 4.4 16.7	71.1 70.4 72.1 91.7 66.3 33.3	14.9 14.2 4.7 8.3 15.6 50.0	1.5 2.5 2.3 - 3.0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263 207 267	9.9 7.2 9.0	5.3 5.8 5.6	71.1 68.6 68.2	11.0 15.9 15.4	2.7 2.4 1.9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00 150 29 64 93 201	9.5 11.3 13.8 9.4 8.6 5.5	4.5 7.3 10.3 6.3 4.3 5.0	74.5 63.3 51.7 75.0 63.4 72.1	9.5 16.7 17.2 9.4 20.4 14.4	2.0 1.3 6.9 - 3.2 3.0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364 220 153	8.8 9.1 8.5	4.9 5.0 7.8	72.8 69.5 60.8	11.5 14.1 19.6	1.9 2.3 3.3

문항 9.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② 치료비를 받는다	③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성	① 남	634	2.5	16.7	80.8	
	② 여	562	2.0	16.4	81.7	
연령	① 20대	336	2.7	15.5	81.8	
	② 30대	315	1.6	13.3	85.1	
	③ 40대	262	1.9	17.6	80.5	
	④ 50대 이상	284	2.8	20.8	76.4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3.4	23.5	73.1	
	② 중졸	164	3.0	15.9	81.1	
	③ 고졸	501	2.0	15.4	82.6	
	④ 대재 이상	411	1.9	16.5	81.5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2.4	22.6	75.0	
	② 사무직	203	1.0	15.8	83.3	
	③ 판매·서비스직	289	1.7	14.9	83.4	
	④ 생산직	101	2.0	21.8	76.2	
	⑤ 농어업	86	7.0	23.3	69.8	
	⑥ 학생	80	1.3	16.3	82.5	
	⑦ 주부	237	3.0	13.5	83.5	
	⑧ 기타·무직	77	1.3	11.7	87.0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2	2.3	18.6	79.1	
	② 70~119만원	396	3.0	14.6	82.3	
	③ 120~199만원	418	1.9	16.3	81.8	
	④ 200만원 이상	200	1.5	19.0	79.5	
종교	① 불교	341	3.2	15.0	81.8	
	② 기독교	258	1.9	18.2	79.8	
	③ 천주교	121	0.8	18.2	81.0	
	④ 유교	27	-	29.6	70.4	
	⑤ 무종교	440	2.3	16.1	81.6	
	⑥ 기타	10	-	-	100.0	
성향	① 진보적	363	3.6	17.9	78.5	
	② 중도적	328	2.1	15.5	82.3	
	③ 보수적	504	1.4	16.5	82.1	
거주지역	① 서울	301	3.3	20.3	76.4	
	② 경기	232	0.4	13.8	85.8	
	③ 강원	43	2.3	23.3	74.4	
	④ 충청	120	3.3	14.2	82.5	
	⑤ 호남	155	2.6	12.9	84.5	
	⑥ 영남	346	2.0	17.1	8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2.4	19.9	77.7	
	② 중·소도시	338	1.8	13.3	84.9	
	③ 읍·면 이하	271	2.6	13.7	83.8	

문항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성	① 남	635	19.5	80.5	
	② 여	563	22.9	77.1	
연령	① 20대	336	15.8	84.2	
	② 30대	316	18.7	81.3	
	③ 40대	262	21.4	78.6	
	④ 50대 이상	285	29.8	70.2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35.3	64.7	
	② 중졸	165	26.7	73.3	
	③ 고졸	502	20.9	79.1	
	④ 대재 이상	411	15.1	84.9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13.7	86.3	
	② 사무직	203	21.7	78.3	
	③ 판매·서비스직	291	19.9	80.1	
	④ 생산직	101	21.8	78.2	
	⑤ 농어업	86	27.9	72.1	
	⑥ 학생	80	8.8	91.3	
	⑦ 주부	237	24.5	75.5	
	⑧ 기타·무직	77	29.9	70.1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21.4	78.6	
	② 70~119만원	396	24.0	76.0	
	③ 120~199만원	419	20.3	79.7	
	④ 200만원 이상	200	17.5	82.6	
종교	① 불교	341	26.7	73.3	
	② 기독교	258	20.2	79.8	
	③ 천주교	121	16.5	83.5	
	④ 유교	27	18.5	81.5	
	⑤ 무종교	442	18.6	81.4	
	⑥ 기타	10	30.0	70.0	
성향	① 진보적	363	17.4	82.6	
	② 중도적	328	20.4	79.6	
	③ 보수적	506	24.3	75.7	
거주지역	① 서울	301	19.6	80.4	
	② 경기	233	16.7	83.3	
	③ 강원	43	30.2	69.8	
	④ 충청	120	25.8	74.2	
	⑤ 호남	155	17.4	82.6	
	⑥ 영남	347	24.2	75.8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20.6	79.4	
	② 중·소도시	339	19.8	80.2	
	③ 읍·면 이하	272	23.9	76.1	

문항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변 수		응답 구분	빈 도 수 (명)	① 법의 절차 가 복잡하 고 자주 바뀌니까	② 법이 불공평 하므로	③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④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⑤ 법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성	① 남 ② 여		507 431	27.2 38.5	19.5 23.4	30.0 19.0	11.4 11.6	11.8 7.4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82 254 204 199	39.0 30.7 29.9 28.1	19.9 21.7 23.0 21.1	18.4 24.0 25.5 34.7	10.6 13.8 11.3 10.1	12.1 9.8 10.3 6.0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77 119 394 347	22.1 35.3 32.5 33.7	23.4 24.4 21.8 19.0	36.4 21.0 22.6 26.5	9.1 12.6 11.9 11.2	9.1 6.7 11.2 9.5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07 159 228 79 62 73 177 54	40.2 27.7 34.2 32.9 22.6 26.0 36.2 31.5	13.1 22.0 21.5 17.7 27.4 21.9 24.9 20.4	29.0 27.0 21.1 22.8 25.8 28.8 22.6 31.5	12.1 9.4 12.3 10.1 12.9 13.7 10.2 14.8	5.6 13.8 11.0 16.5 11.3 9.6 6.2 1.9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36 300 330 163	24.3 32.7 34.2 35.6	25.7 20.3 19.1 21.5	34.6 25.0 22.7 22.7	8.8 11.3 13.0 11.7	6.6 10.7 10.9 8.6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248 205 100 22 357 7	36.3 30.2 40.0 27.3 29.7 14.3	19.4 20.0 17.0 13.6 24.9 28.6	26.6 27.8 20.0 36.4 22.4 42.9	8.9 11.2 17.0 18.2 11.5 14.3	8.9 10.7 6.0 4.5 11.5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297 258 382	34.7 35.7 28.8	21.5 19.4 22.0	21.5 23.6 28.5	12.5 9.3 12.3	9.8 12.0 8.4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39 193 30 88 128 261	35.1 30.6 56.7 40.9 29.7 27.2	22.6 23.3 16.7 19.3 24.2 18.4	23.4 26.4 20.0 23.9 24.2 26.4	12.6 10.4 6.7 8.0 8.6 14.6	6.3 9.3 - 8.0 13.3 13.4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462 271 206	31.4 37.3 28.6	22.9 19.2 20.4	26.2 20.3 28.2	10.0 15.9 9.2	9.5 7.4 13.6

문항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정치인	②공무원	③법조인	④교육자	⑤기업인	⑥근로자	⑦종교인	⑧대학생	⑨농어민
성	①남 ②여		506 432	42.7 42.5	14.7 13.7	10.0 9.6	4.3 4.9	19.4 20.7	1.1 0.8	4.3 4.5	2.2 2.3	1.3 0.9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283 255 203 199	43.9 42.4 42.1 41.6	14.2 15.1 14.3 13.1	7.8 9.0 12.6 10.8	3.5 4.3 3.7 7.3	24.2 21.6 17.0 14.9	0.7 0.8 1.2 1.3	2.8 3.7 6.7 5.5	1.9 1.4 1.5 4.5	0.9 1.6 1.0 1.0
학력	①국졸 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대재 이상		77 121 392 347	38.3 40.5 41.7 45.3	11.7 14.9 15.2 13.4	12.3 9.9 10.7 8.2	9.7 6.2 5.4 2.0	12.3 15.3 17.7 25.8	- 2.1 1.3 0.4	11.7 7.9 3.7 2.6	3.2 1.7 3.3 1.0	0.6 1.7 1.0 1.2
직업	①전문·관리직 ②사무직 ③판매·서비스직 ④생산직 ⑤농어업 ⑥학생 ⑦주부 ⑧기타·무직		106 159 229 79 62 73 178 54	43.6 42.9 41.0 42.4 40.3 46.6 42.5 44.4	16.6 12.3 15.5 15.2 16.1 11.6 13.2 13.0	5.7 8.8 11.1 9.5 14.5 6.2 10.7 12.0	2.4 4.1 4.8 2.5 9.7 2.7 5.4 6.5	25.1 24.3 16.6 20.3 19.7 28.1 18.9 15.7	0.5 0.9 1.3 1.9 1.6 - 0.3 1.9	3.8 2.8 6.1 3.2 4.8 4.1 5.1 3.7	1.4 2.2 2.2 3.2 2.4 -	0.9 1.6 1.3 1.9 0.8 0.7 0.8 -
가구소득	①70만원 미만 ②70~119만원 ③120~199만원 ④200만원 이상		136 299 332 163	41.7 42.8 42.8 43.1	14.4 11.7 14.5 17.8	11.8 10.2 9.7 7.4	8.5 5.0 3.3 3.4	12.5 21.1 21.0 22.8	0.4 1.2 1.1 0.6	6.6 4.5 4.4 2.5	3.7 2.2 2.1 1.5	0.4 1.3 1.2 0.9
종교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유교 ⑤무종교 ⑥기타		250 204 99 22 357 7	41.9 42.2 40.4 45.5 43.7 50.0	13.2 13.2 13.6 6.8 16.1 14.3	12.6 9.6 10.6 6.8 8.0 7.1	5.0 5.9 4.5 4.5 3.6 -	16.6 21.3 19.7 25.0 21.3 21.4	0.6 1.7 1.5 -	6.2 2.5 5.1 6.8 4.2 -	2.6 1.7 2.5 2.5 2.0 7.1	1.2 2.0 2.0 -
성향	①진보적 ②중도적 ③보수적		298 258 381	43.2 43.0 41.9	15.0 13.2 14.3	6.7 9.3 12.5	3.4 5.8 4.7	22.9 21.1 17.1	0.7 1.0 1.2	4.2 4.1 5.0	2.5 1.9 2.2	1.5 0.6 1.2
거주지역	①서울 ②경기 ③강원 ④충청 ⑤호남 ⑥영남		236 194 30 88 128 263	45.1 39.9 43.3 39.2 43.4 43.0	13.8 16.2 11.7 13.1 12.1 14.9	7.8 9.5 11.7 12.5 7.4 9.5	3.6 5.2 6.7 2.8 14.8 4.0	23.1 21.1 18.3 17.0 14.8 20.0	1.3 1.0 -	2.8 4.4 6.7 1.1 4.3 4.4	1.3 2.1 1.7 9.1 3.1 2.9	1.3 0.5 -
지역규모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 이하		460 272 207	43.9 42.8 39.6	13.7 15.1 14.3	9.2 10.3 10.4	3.5 3.3 8.7	21.9 21.1 14.3	0.8 1.1 1.2	3.6 3.3 8.0	2.1 2.0 2.9	1.4 0.9 0.7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분야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2	1.4	19.6	65.3	13.6	
	② 여	559	1.1	18.8	69.9	10.2	
연령	① 20대	335	-	17.3	69.3	13.4	
	② 30대	313	2.2	16.0	67.7	14.1	
	③ 40대	262	0.4	20.6	67.9	11.1	
	④ 50대 이상	282	2.5	23.8	64.9	8.9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2.5	26.1	62.2	9.2	
	② 중졸	164	2.4	31.1	60.4	6.1	
	③ 고졸	497	1.4	20.3	68.4	9.9	
	④ 대재 이상	411	0.2	11.2	70.8	17.8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	11.3	72.6	16.1	
	② 사무직	202	2.0	14.4	72.3	11.4	
	③ 판매·서비스직	288	0.3	22.9	67.4	9.4	
	④ 생산직	100	3.0	27.0	59.0	11.0	
	⑤ 농어업	86	1.2	20.9	66.3	11.6	
	⑥ 학생	80	1.3	10.0	66.3	22.5	
	⑦ 주부	236	1.3	20.8	65.7	12.3	
	⑧ 기타·무직	76	2.6	23.7	67.1	6.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1	2.9	22.2	67.3	7.6	
	② 70~119만원	396	2.3	22.0	63.6	12.1	
	③ 120~199만원	417	0.2	15.8	71.9	12.0	
	④ 200만원 이상	198	-	17.7	66.7	15.7	
종교	① 불교	338	1.5	19.5	69.2	9.8	
	② 기독교	258	1.9	21.7	65.1	11.2	
	③ 천주교	121	-	13.2	71.1	15.7	
	④ 유교	27	3.7	18.5	66.7	11.1	
	⑤ 무종교	438	0.9	19.4	66.4	13.2	
	⑥ 기타	10	-	10.0	8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1	1.4	15.5	71.7	11.4	
	② 중도적	326	0.6	20.2	67.8	11.3	
	③ 보수적	504	1.6	21.1	64.3	12.9	
거주지역	① 서울	298	1.0	13.1	71.5	14.4	
	② 경기	229	2.2	21.0	65.9	10.9	
	③ 강원	43	-	9.3	74.4	16.3	
	④ 충청	120	1.7	24.2	64.2	10.0	
	⑤ 호남	155	1.3	24.5	64.5	9.7	
	⑥ 영남	347	0.9	20.5	66.9	11.8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5	1.0	16.8	67.5	14.7	
	② 중·소도시	335	1.2	20.0	68.4	10.4	
	③ 읍·면 이하	272	1.8	23.5	66.5	8.1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행정분야

변 수		응답구분	반 도 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② 여		631 557	4.0 4.3	50.6 47.2	41.8 45.8	3.6 2.7
연령	① 20대		335	1.2	49.9	45.7	3.3
	② 30대		312	5.8	42.6	49.0	2.6
	③ 40대		261	2.7	50.6	42.9	3.8
	④ 50대 이상		281	7.1	53.7	35.9	3.2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4.2	52.1	37.0	6.7
	② 중졸		163	9.2	57.7	31.9	1.2
	③ 고졸		495	3.8	49.5	43.8	2.8
	④ 대재 이상		411	2.4	44.0	50.1	3.4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0.8	45.2	50.8	3.2
	② 사무직		202	4.5	53.5	40.1	2.0
	③ 판매·서비스직		286	4.5	46.5	46.9	2.1
	④ 생산직		100	2.0	51.0	42.0	5.0
	⑤ 농어업		86	3.5	55.8	32.6	8.1
	⑥ 학생		80	1.3	43.8	50.0	5.0
	⑦ 주부		235	6.0	47.7	43.8	2.6
	⑧ 기타·무직		76	7.9	52.6	36.8	2.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0	5.3	47.6	41.8	5.3
	② 70~119만원		395	5.3	53.2	38.7	2.8
	③ 120~199만원		416	3.8	44.2	49.0	2.9
	④ 200만원 이상		198	1.5	51.5	44.4	2.5
종교	① 불교		338	5.6	49.4	42.3	2.7
	② 기독교		255	4.3	47.5	45.1	3.1
	③ 천주교		121	3.3	50.4	43.0	3.3
	④ 유교		27	7.4	59.3	33.3	-
	⑤ 무종교		438	3.0	48.6	44.5	3.9
	⑥ 기타		10	-	50.0	50.0	-
성향	① 진보적		361	3.3	46.0	47.1	3.6
	② 중도적		325	4.9	49.5	42.5	3.1
	③ 보수적		502	4.2	51.0	41.8	3.0
거주지역	① 서울		297	3.7	39.7	53.9	2.7
	② 경기		228	3.9	48.2	41.7	6.1
	③ 강원		43	7.0	32.6	55.8	4.7
	④ 충청		119	4.2	61.3	31.9	2.5
	⑤ 호남		155	5.2	54.8	38.7	1.3
	⑥ 영남		347	3.7	52.7	40.9	2.6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3	4.1	46.7	46.0	3.3
	② 중·소도시		334	4.5	48.2	44.0	3.3
	③ 읍·면 이하		272	3.7	55.1	38.2	2.9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경제계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28	1.8	37.7	52.9	7.6
	② 여		553	1.6	29.1	62.7	6.5
연령	① 20대		334	1.5	32.0	59.6	6.9
	② 30대		310	1.6	31.6	60.3	6.5
	③ 40대		260	1.5	36.5	53.8	8.1
	④ 50대 이상		278	2.2	35.3	55.4	7.2
학력	① 국졸 이하		117	0.9	33.3	58.1	7.7
	② 중졸		162	3.7	37.7	53.7	4.9
	③ 고졸		491	2.0	37.5	53.2	7.3
	④ 대재 이상		411	0.7	27.7	64.0	7.5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3	0.8	32.5	59.3	7.3
	② 사무직		202	1.5	30.2	61.4	6.9
	③ 판매·서비스직		285	1.1	38.2	53.3	7.4
	④ 생산직		99	3.0	37.4	52.5	7.1
	⑤ 농어업		86	-	44.2	50.0	5.8
	⑥ 학생		80	-	25.0	67.5	7.5
	⑦ 주부		232	3.0	29.7	60.3	6.9
	⑧ 기타·무직		75	4.0	32.0	56.0	8.0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68	3.6	36.3	52.4	7.7
	② 70~119만원		392	2.3	35.5	55.1	7.1
	③ 120~199만원		414	1.2	29.5	61.1	8.2
	④ 200만원 이상		198	-	36.9	58.6	4.5
종교	① 불교		334	2.4	35.9	53.9	7.8
	② 기독교		255	2.4	31.0	59.2	7.5
	③ 천주교		121	0.8	25.6	63.6	9.9
	④ 유교		26	-	53.8	38.5	7.7
	⑤ 무종교		436	1.1	35.3	58.0	5.5
	⑥ 기타		10	-	-	9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0	1.9	30.0	58.9	9.2
	② 중도적		324	1.2	31.5	61.4	5.9
	③ 보수적		497	1.8	37.8	53.9	6.4
거주지역	① 서울		295	0.7	30.5	62.4	6.4
	② 경기		223	1.8	27.8	62.3	8.1
	③ 강원		43	4.7	30.2	58.1	7.0
	④ 충청		119	3.4	39.5	50.4	6.7
	⑤ 호남		155	1.3	39.4	52.3	7.1
	⑥ 영남		347	1.7	36.0	55.0	7.2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1	1.0	30.1	62.0	6.9
	② 중·소도시		331	2.1	33.8	57.4	6.6
	③ 읍·면 이하		270	2.6	41.1	48.1	8.1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노사관계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28	4.5	45.4	43.6	6.5
	② 여	555	3.4	41.1	49.5	5.9
연령	① 20대	334	2.7	37.7	49.1	10.5
	② 30대	312	4.8	42.6	48.1	4.5
	③ 40대	259	4.6	44.8	46.3	4.2
	④ 50대 이상	279	3.9	49.5	41.6	5.0
학력	① 국졸 이하	118	0.8	45.8	46.6	6.8
	② 중졸	163	7.4	54.6	34.4	3.7
	③ 고졸	491	5.5	45.4	43.0	6.1
	④ 대재 이상	411	1.7	35.5	55.5	7.3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3	1.6	31.7	61.8	4.9
	② 사무직	202	3.0	37.6	54.0	5.4
	③ 판매·서비스직	286	3.8	49.3	42.3	4.5
	④ 생산직	99	8.1	48.5	37.4	6.1
	⑤ 농어업	86	7.0	53.5	34.9	4.7
	⑥ 학생	80	1.3	32.5	48.8	17.5
	⑦ 주부	233	4.7	43.3	45.5	6.4
	⑧ 기타·무직	75	2.7	48.0	42.7	6.7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67	4.2	38.3	49.7	7.8
	② 70~119만원	395	6.1	46.1	43.0	4.8
	③ 120~199만원	414	3.1	42.5	47.8	6.5
	④ 200만원 이상	198	1.0	42.9	48.5	7.6
종교	① 불교	336	5.1	45.5	42.9	6.5
	② 기독교	255	3.1	44.7	46.3	5.9
	③ 천주교	121	3.3	40.5	48.8	7.4
	④ 유교	26	-	57.7	34.6	7.7
	⑤ 무종교	436	4.1	41.3	49.1	5.5
	⑥ 기타	10	-	20.0	60.0	20.0
성향	① 진보적	360	3.3	38.6	50.6	7.5
	② 중도적	324	3.7	42.0	48.1	6.2
	③ 보수적	499	4.6	47.7	42.3	5.4
거주지역	① 서울	296	1.0	39.5	53.0	6.4
	② 경기	225	3.6	38.7	49.3	8.4
	③ 강원	43	7.0	37.2	44.2	11.6
	④ 충청	119	8.4	48.7	37.8	5.0
	⑤ 호남	155	8.4	43.9	42.6	5.2
	⑥ 영남	346	2.9	48.3	43.9	4.9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1	2.4	43.5	47.8	6.2
	② 중·소도시	331	5.4	43.5	44.7	6.3
	③ 읍·면 이하	272	5.5	42.6	45.6	6.3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교육계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1	3.0	41.2	48.7	7.1
	② 여		558	3.6	35.8	53.8	6.8
연령	① 20대		335	1.2	41.8	50.1	6.9
	② 30대		314	4.1	34.7	54.5	6.7
	③ 40대		261	3.8	39.8	49.8	6.5
	④ 50대 이상		280	4.3	38.2	49.6	7.9
학력	① 국졸 이하		118	5.1	32.2	55.1	7.6
	② 중졸		163	4.9	43.6	45.4	6.1
	③ 고졸		497	2.8	36.8	52.5	7.8
	④ 대재 이상		411	2.7	40.6	50.6	6.1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2.4	42.7	46.8	8.1
	② 사무직		202	5.0	37.1	49.5	8.4
	③ 판매·서비스직		287	1.0	43.9	50.2	4.9
	④ 생산직		100	1.0	37.0	53.0	9.0
	⑤ 농어업		86	7.0	34.9	55.8	2.3
	⑥ 학생		80	1.3	37.5	53.8	7.5
	⑦ 주부		235	6.0	33.6	52.3	8.1
	⑧ 기타·무직		76	1.3	39.5	51.3	7.9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0	1.8	31.8	56.5	10.0
	② 70~119만원		395	3.5	40.0	50.4	6.1
	③ 120~199만원		417	3.1	39.3	51.8	5.8
	④ 200만원 이상		198	3.5	39.4	48.0	9.1
종교	① 불교		338	4.7	38.5	50.3	6.5
	② 기독교		255	2.0	36.9	54.1	7.1
	③ 천주교		121	2.5	40.5	47.1	9.9
	④ 유교		27	11.1	48.1	33.3	7.4
	⑤ 무종교		439	2.7	38.5	52.6	6.2
	⑥ 기타		10	-	50.0	30.0	20.0
성향	① 진보적		360	4.2	35.6	52.8	7.5
	② 중도적		327	2.8	38.2	51.7	7.3
	③ 보수적		502	3.0	41.2	49.4	6.4
거주지역	① 서울		298	2.0	39.3	50.0	8.7
	② 경기		228	3.9	30.7	60.5	4.8
	③ 강원		43	9.3	30.2	51.2	9.3
	④ 충청		119	4.2	56.3	36.1	3.4
	⑤ 호남		155	3.9	36.1	51.0	9.0
	⑥ 영남		347	2.6	39.5	51.0	6.9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4	1.7	39.4	51.2	7.7
	② 중·소도시		334	4.2	39.2	47.3	9.3
	③ 읍·면 이하		272	5.5	36.4	55.5	2.6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 교통질서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② 여		631 560	2.5 2.1	26.9 33.9	55.3 52.3	15.2 11.6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5 314 261 282	2.1 2.2 1.5 3.5	31.9 31.8 28.7 28.0	53.7 51.9 57.1 53.2	12.2 14.0 12.6 15.2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19 164 497 411	1.7 4.9 2.6 1.2	29.4 22.6 30.6 33.3	52.1 57.9 53.5 53.3	16.8 14.6 13.3 12.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3 203 288 100 86 80 236 76	0.8 2.0 2.4 3.0 2.3 3.8 2.1 3.9	36.6 32.0 28.5 31.0 20.9 31.3 29.7 32.9	48.8 51.7 53.1 49.0 64.0 56.3 56.8 53.9	13.8 14.3 16.0 17.0 12.8 8.8 11.4 9.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1 396 416 199	2.9 3.5 1.7 0.5	26.9 27.3 31.3 36.7	51.5 54.8 55.8 50.3	18.7 14.4 11.3 12.6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39 256 121 27 439 10	2.7 3.1 0.8 3.7 2.1 -	27.7 36.3 24.8 29.6 30.5 20.0	58.1 46.1 58.7 59.3 53.8 40.0	11.5 14.5 15.7 7.4 13.7 4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1 327 503	1.4 1.8 3.4	31.9 33.3 27.2	53.5 51.4 55.7	13.3 13.5 13.7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97 231 43 119 155 347	1.3 2.6 2.3 3.4 3.2 2.3	37.7 24.2 27.9 28.6 28.4 29.7	50.2 59.3 62.8 50.4 52.3 54.2	10.8 13.9 7.0 17.6 16.1 13.8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3 337 272	1.7 3.0 2.9	34.6 22.3 30.9	52.0 58.5 52.2	11.7 16.3 14.0

문항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행락질서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2	1.1	15.3	50.2	33.4	
	② 여	560	0.2	16.4	53.8	29.6	
연령	① 20대	335	0.3	19.4	50.1	30.1	
	② 30대	314	1.0	16.9	57.6	24.5	
	③ 40대	262	0.4	15.3	50.8	33.6	
	④ 50대 이상	282	1.1	11.3	48.2	39.4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1.7	15.1	47.1	36.1	
	② 중졸	164	1.2	14.6	47.6	36.6	
	③ 고졸	498	0.6	15.9	53.2	30.3	
	④ 대재 이상	411	0.2	16.8	53.3	29.7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0.8	16.1	54.0	29.0	
	② 사무직	203	-	16.7	55.2	28.1	
	③ 판매·서비스직	288	0.7	15.6	50.7	33.0	
	④ 생산직	100	1.0	18.0	49.0	32.0	
	⑤ 농어업	86	2.3	10.5	43.0	44.2	
	⑥ 학생	80	-	17.5	48.8	33.8	
	⑦ 주부	236	0.4	14.8	56.8	28.0	
	⑧ 기타·무직	76	1.3	19.7	44.7	34.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1	1.2	11.7	46.2	40.9	
	② 70~119만원	396	1.0	15.7	52.3	31.1	
	③ 120~199만원	417	-	17.5	52.8	29.7	
	④ 200만원 이상	199	1.0	17.1	53.3	28.6	
종교	① 불교	340	-	15.0	53.2	31.8	
	② 기독교	256	1.2	17.2	47.3	34.4	
	③ 천주교	121	-	17.4	50.4	32.2	
	④ 유교	27	3.7	22.2	33.3	40.7	
	⑤ 무종교	439	0.7	15.5	55.4	28.5	
	⑥ 기타	10	10.0	-	30.0	60.0	
성향	① 진보적	361	0.8	16.6	51.0	31.6	
	② 중도적	327	0.3	16.8	53.8	29.1	
	③ 보수적	504	0.8	14.9	51.0	33.3	
거주지역	① 서울	298	-	18.5	51.7	29.9	
	② 경기	231	1.3	11.7	56.7	30.3	
	③ 강원	43	2.3	14.0	51.2	32.6	
	④ 충청	119	1.7	19.3	51.3	27.7	
	⑤ 호남	155	-	12.9	51.0	36.1	
	⑥ 영남	347	0.6	17.0	49.3	33.1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4	-	17.1	55.5	27.4	
	② 중·소도시	337	0.9	16.3	48.1	34.7	
	③ 읍·면 이하	272	1.8	12.9	48.5	36.8	

문항 12.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성	① 남 ② 여	633 562	60.5 60.5	39.5 39.5
연령	① 20대	336	45.5	54.5
	② 30대	316	60.8	39.2
	③ 40대	260	66.2	33.8
	④ 50대 이상	284	72.5	27.5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78.2	21.8
	② 중졸	163	69.9	30.1
	③ 고졸	502	57.4	42.6
	④ 대재 이상	410	55.4	44.6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56.5	43.5
	② 사무직	202	62.4	37.6
	③ 판매·서비스직	291	62.9	37.1
	④ 생산직	101	60.4	39.6
	⑤ 농어업	86	76.7	23.3
	⑥ 학생	80	36.3	63.8
	⑦ 주부	236	61.4	38.6
	⑧ 기타·무직	76	56.6	43.4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63.0	37.0
	② 70~119만원	396	59.3	40.7
	③ 120~199만원	417	58.0	42.0
	④ 200만원 이상	200	65.5	34.5
종교	① 불교	341	61.6	38.4
	② 기독교	258	57.8	42.2
	③ 천주교	120	55.0	45.0
	④ 유교	27	66.7	33.3
	⑤ 무종교	440	62.0	38.0
	⑥ 기타	10	70.0	30.0
성향	① 진보적	363	55.9	44.1
	② 중도적	326	58.9	41.1
	③ 보수적	506	64.8	35.2
거주지역	① 서울	299	55.5	44.5
	② 경기	233	66.1	33.9
	③ 강원	43	65.1	34.9
	④ 충청	119	58.0	42.0
	⑤ 호남	155	70.3	29.7
	⑥ 영남	347	56.8	43.2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5	56.9	43.1
	② 중·소도시	339	64.3	35.7
	③ 읍·면 이하	272	63.2	36.8

문항 12.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친한 사이라서	② 별칙이 약해서	③ 이익이 없어서	④ 생활이 바빠서	⑤ 기타
성	① 남 ② 여		248 219	15.7 16.9	7.7 5.9	13.7 10.0	57.3 60.7	5.6 6.4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180 123 87 78	17.8 19.5 11.5 12.8	6.1 5.7 8.0 9.0	10.0 11.4 10.3 19.2	59.4 59.3 63.2 52.6	6.7 4.1 6.9 6.4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26 48 211 182	- 14.6 17.5 17.6	11.5 4.2 6.6 7.1	23.1 14.6 10.4 11.5	65.4 60.4 60.2 56.0	- 6.3 5.2 7.7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54 74 107 40 20 51 89 33	16.7 12.2 14.0 7.5 10.0 27.5 22.5 12.1	5.6 6.8 10.3 2.5 10.0 7.8 5.6 3.0	9.3 14.9 12.1 10.0 15.0 15.7 10.1 9.1	63.0 58.1 57.9 80.0 60.0 41.2 57.3 63.6	5.6 8.1 5.6 - 5.0 7.8 4.5 12.1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64 160 172 68	15.6 16.9 14.5 19.1	4.7 4.4 8.7 8.8	10.0 11.9 11.6 11.8	60.9 61.9 59.3 52.9	7.8 5.0 5.8 7.4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130 109 53 9 164 3	16.9 18.3 7.5 33.3 16.5 -	7.7 6.4 7.5 - 6.7 -	9.2 13.8 11.3 11.1 13.4 -	63.1 55.0 60.4 55.6 57.9 66.7	3.1 6.4 13.2 - 5.5 33.3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158 133 176	12.7 16.5 19.3	10.1 3.8 5.7	9.5 11.3 14.8	59.5 63.2 55.7	8.2 5.3 4.5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131 78 15 50 46 148	15.3 15.4 33.3 20.0 21.7 12.8	9.9 6.4 6.7 4.0 4.3 6.1	10.7 11.5 13.3 12.0 17.4 11.5	60.3 56.4 40.0 60.0 50.0 63.5	3.8 10.3 6.7 4.0 6.5 6.1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249 120 99	15.7 15.0 19.2	7.6 5.0 7.1	11.6 10.0 15.2	59.8 65.0 49.5	5.2 5.0 9.1

문항 13. 귀하는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②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③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4	65.7 61.2	16.1 17.9	18.3 20.9
연령	① 20대		336	48.5	25.3	26.2
	② 30대		316	62.0	15.2	22.8
	③ 40대		262	68.7	16.4	14.9
	④ 50대 이상		286	78.0	9.4	12.6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81.7	6.7	11.7
	② 중졸		165	68.5	13.9	17.6
	③ 고졸		502	63.9	15.9	20.1
	④ 대재 이상		411	55.5	22.4	22.1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59.7	20.2	20.2
	② 사무직		203	57.6	19.7	22.7
	③ 판매·서비스직		291	65.6	15.1	19.2
	④ 생산직		101	65.3	16.8	17.8
	⑤ 농어업		86	75.6	7.0	17.4
	⑥ 학생		80	41.3	31.3	27.5
	⑦ 주부		238	65.5	15.1	19.3
	⑧ 기타·무직		77	77.9	13.0	9.1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71.3	12.1	16.7
	② 70~119만원		396	64.9	16.2	18.9
	③ 120~199만원		419	60.1	18.4	21.5
	④ 200만원 이상		200	60.5	20.0	19.5
종교	① 불교		342	67.5	12.9	19.6
	② 기독교		258	62.0	21.3	16.7
	③ 천주교		121	60.3	19.0	20.7
	④ 유교		27	63.0	18.5	18.5
	⑤ 무종교		442	62.2	17.2	20.6
	⑥ 기타		10	60.0	-	40.0
성향	① 진보적		364	58.5	20.3	21.2
	② 중도적		328	61.9	15.2	22.9
	③ 보수적		506	68.0	15.6	16.4
거주지역	① 서울		301	59.1	22.3	18.6
	② 경기		234	70.1	13.2	16.7
	③ 강원		43	67.4	4.7	27.9
	④ 충청		120	60.0	15.8	24.2
	⑤ 호남		155	71.0	14.8	14.2
	⑥ 영남		347	60.2	17.6	22.2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61.6	18.4	20.1
	② 중·소도시		340	62.9	17.1	20.0
	③ 읍·면 이하		272	68.4	13.6	18.0

문항 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신지요?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전혀 불편하지 않다	② 별로 불편하지 않다	③ 약간 불편하다	④ 매우 불편하다
성	① 남		634	45.6	34.4	15.9	4.1
	② 여		564	47.3	29.6	21.5	1.6
연령	① 20대		336	49.1	31.3	19.0	0.6
	② 30대		316	42.1	32.3	21.8	3.8
	③ 40대		262	46.2	31.7	18.7	3.4
	④ 50대 이상		285	48.1	33.7	14.0	4.2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50.8	31.7	12.5	5.0
	② 중졸		164	42.1	31.1	22.0	4.9
	③ 고졸		502	46.4	30.3	20.3	3.0
	④ 대재 이상		411	46.7	35.0	16.8	1.5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48.4	33.1	15.3	3.2
	② 사무직		203	46.8	32.0	18.2	3.0
	③ 판매·서비스직		291	43.6	32.6	22.7	1.0
	④ 생산직		101	54.5	26.7	11.9	6.9
	⑤ 농어업		86	39.5	27.9	24.4	8.1
	⑥ 학생		80	46.3	43.8	10.0	-
	⑦ 주부		238	45.4	30.3	22.3	2.1
	⑧ 기타·무직		76	52.6	35.5	7.9	3.9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47.1	32.2	14.4	6.3
	② 70~119만원		396	46.7	31.6	19.2	2.5
	③ 120~199만원		419	47.0	32.5	18.4	2.1
	④ 200만원 이상		200	44.0	32.0	22.0	2.0
종교	① 불교		342	43.3	29.8	23.1	3.8
	② 기독교		258	48.8	28.3	19.8	3.1
	③ 천주교		121	36.4	35.5	24.8	3.3
	④ 유교		27	51.9	37.0	7.4	3.7
	⑤ 무종교		441	49.9	35.1	13.4	1.6
	⑥ 기타		10	40.0	30.0	10.0	20.0
성향	① 진보적		364	45.1	31.9	20.6	2.5
	② 중도적		328	41.5	35.4	20.1	3.0
	③ 보수적		506	50.6	30.2	16.0	3.2
거주지역	① 서울		300	42.0	36.3	20.0	1.7
	② 경기		234	48.3	32.1	17.5	2.1
	③ 강원		43	37.2	32.6	18.6	11.6
	④ 충청		120	45.0	29.2	23.3	2.5
	⑤ 호남		155	45.8	25.8	22.6	5.8
	⑥ 영남		347	50.7	32.6	11.4	2.3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45.5	34.2	18.7	1.5
	② 중·소도시		340	47.9	28.8	19.4	3.8
	③ 읍·면 이하		272	46.3	32.0	16.9	4.8

문항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당연히 신고한다	②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③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④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⑤ 이웃과 함세하여 잡는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4	64.4 66.0	13.1 21.6	2.5 5.3	3.5 1.4	16.5 5.7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6	67.0 63.9 59.9 69.2	17.0 19.3 19.5 12.6	2.1 2.8 5.7 5.2	2.7 1.9 2.3 3.1	11.3 12.0 12.6 9.8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55.0 62.4 63.7 70.8	18.3 19.4 16.5 16.5	10.8 4.2 3.6 1.9	3.3 1.2 3.0 2.2	12.5 12.7 13.1 8.5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7	71.0 66.0 60.5 53.5 61.6 76.3 66.8 74.0	15.3 16.7 18.9 14.9 7.0 17.5 21.8 13.0	3.2 2.5 3.8 5.0 9.3 1.3 4.6 1.3	4.0 2.0 1.7 4.0 3.5 1.3 1.7 5.2	6.5 12.8 15.1 22.8 18.6 3.8 5.0 6.5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9 200	62.1 62.6 68.3 66.5	13.8 17.7 17.9 17.0	9.2 3.8 1.9 3.5	2.3 2.8 2.9 1.0	12.6 13.1 9.1 12.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2 10	64.9 62.4 65.3 51.9 67.9 60.0	15.8 20.5 18.2 11.1 16.3 10.0	4.7 3.9 3.3 11.1 2.7 10.0	2.0 2.3 1.7 7.4 2.9 -	12.6 10.9 11.6 18.5 10.2 2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6	64.3 63.7 66.6	18.7 19.2 14.6	3.3 3.7 4.3	1.6 3.7 2.4	12.1 9.8 12.1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7	64.5 65.4 72.1 54.2 68.4 67.1	21.3 14.5 9.3 23.3 11.6 16.4	4.0 3.4 7.0 4.2 5.2 2.9	1.7 1.7 2.3 5.0 3.9 2.3	8.6 15.0 9.3 13.3 11.0 11.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2	66.2 67.9 59.6	19.9 13.5 15.4	3.1 4.4 4.8	1.5 3.2 3.7	9.4 10.9 16.5

문항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단위 : %)

가)

응답구분 변수		변 도 수 (명)	① 부정부패	② 탈 세	③ 부동산 투기사범	④ 환경사범	⑤ 경제사범 (매점· 매석 등)	⑥ 기 타
성	① 남 ② 여	635 563	60.8 62.7	7.7 4.4	10.4 12.4	12.6 13.9	8.0 6.2	0.5 0.4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1 286	67.6 61.7 61.3 55.2	5.7 5.7 6.1 7.3	8.6 8.5 14.2 15.0	14.3 12.0 10.0 16.1	3.9 11.4 7.7 5.9	- 0.6 0.8 0.3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1 411	57.5 56.4 59.1 68.4	5.8 5.5 6.0 6.8	18.3 21.8 11.6 4.6	12.5 10.3 13.6 14.1	5.8 5.5 9.0 6.1	- 0.6 0.8 -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67.7 65.0 58.6 61.4 50.0 75.0 57.6 67.5	6.5 7.9 7.6 4.0 7.0 5.0 5.0 2.6	2.4 6.9 11.4 13.9 24.4 5.0 16.0 11.7	17.7 14.3 11.4 10.9 11.6 12.5 13.4 14.3	4.8 5.9 9.7 9.9 7.0 2.5 8.0 3.9	0.8 - 1.4 - - - -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8 200	53.4 59.8 62.9 69.5	5.7 7.6 5.3 6.0	21.3 11.6 9.8 5.5	14.4 12.4 13.9 13.0	4.6 8.3 7.4 6.0	0.6 0.3 0.7 -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0 27 442 10	62.0 58.5 66.7 59.3 62.2 60.0	5.6 8.1 4.2 7.4 6.1 -	13.5 11.6 8.3 3.7 11.1 -	11.1 16.3 15.0 14.8 12.0 30.0	7.9 5.0 5.8 11.1 8.1 -	- 0.4 - 3.7 0.5 1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3 328 506	63.1 64.6 58.9	6.9 4.3 6.9	6.6 10.7 15.0	13.5 13.4 12.8	9.1 6.4 6.3	0.8 0.6 -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5 347	64.3 59.8 58.1 64.2 63.9 59.4	7.0 7.3 4.7 10.0 4.5 4.3	10.3 11.5 16.3 6.7 13.5 12.1	11.3 14.1 18.6 8.3 11.6 15.9	6.7 7.3 2.3 10.0 5.8 7.8	0.3 - - 0.8 0.6 0.6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2	65.2 59.7 56.6	6.0 5.9 7.0	9.4 11.5 15.4	11.9 13.8 15.1	6.8 9.1 5.5	0.7 - 0.4

문항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나)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성폭행	② 조직 폭력배	③ 마약사범	④ 강·절도 사범	⑤ 음주운전	⑥ 기타
성	① 남 ② 여	634 563	23.8 49.7	34.4 16.7	9.5 6.9	27.6 22.2	4.3 4.1	0.5 0.4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5 316 261 286	44.8 32.6 33.0 32.2	20.9 29.7 29.5 25.2	8.7 7.6 7.3 9.4	23.0 27.2 23.8 26.2	2.4 2.8 5.7 6.3	0.3 - 0.8 0.7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1 410	30.8 34.5 35.7 38.3	22.5 27.9 25.5 27.3	12.5 7.9 7.8 7.8	27.5 23.0 26.3 23.7	6.7 5.5 4.0 2.9	- 1.2 0.6 -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89 101 86 80 283 77	36.3 39.9 26.3 23.8 31.4 38.8 51.7 31.2	26.6 22.7 29.8 37.6 27.9 25.0 18.1 29.9	8.1 7.9 10.4 6.9 8.1 7.5 8.0 5.2	22.6 26.6 28.4 28.7 26.7 26.3 18.1 26.0	6.5 3.0 4.2 3.0 5.8 2.5 3.8 6.5	- - 1.0 - - - 0.4 1.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7 200	32.2 35.1 36.5 40.0	24.1 26.0 27.3 25.5	10.9 8.6 8.2 5.5	24.7 26.5 24.5 24.0	6.9 3.5 3.1 5.0	1.1 0.3 0.5 -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7 120 27 442 10	38.3 34.2 36.7 25.9 35.5 40.0	24.0 29.2 28.3 29.6 25.3 20.0	6.4 9.7 12.5 3.7 8.1 -	27.5 22.6 19.2 29.6 25.8 30.0	3.5 3.9 3.3 11.1 4.8 -	0.3 0.4 - - 0.5 1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2 328 506	38.4 35.7 34.6	24.0 26.8 27.1	9.4 10.1 6.3	24.9 24.7 25.5	3.0 2.1 6.1	0.3 0.6 0.4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99 234 43 120 155 347	41.1 33.8 20.9 31.7 30.3 38.9	22.1 32.5 27.9 28.3 27.7 23.6	7.4 9.4 11.6 5.8 10.3 7.8	23.1 22.2 32.6 31.7 23.2 26.2	5.4 2.1 7.0 2.5 7.7 3.2	1.0 - - - 0.6 0.3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6 340 272	39.2 33.8 31.6	23.4 29.1 28.3	6.3 11.5 8.5	26.6 22.1 25.4	3.9 3.5 5.5	0.5 - 0.7

문항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명)	①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②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③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④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전한 시민 교육	⑤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⑥ 기타
성	① 남 ② 여		634 564	32.0 27.8	11.0 13.5	28.1 23.6	20.7 28.0	7.6 6.6	0.6 0.5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5 262 286	31.8 28.6 29.4 30.1	7.7 14.9 12.6 14.0	20.8 27.3 26.7 29.7	32.4 22.9 22.9 17.1	7.1 5.4 6.9 9.1	- 1.0 1.5 -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1 411	30.0 30.9 33.7 25.1	15.0 19.4 11.6 9.0	26.7 26.1 26.1 25.5	17.5 18.8 20.6 32.8	10.0 4.2 7.4 7.1	0.8 0.6 0.6 0.5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33.1 25.1 34.5 27.7 26.7 23.8 29.8 35.1	11.3 10.3 15.5 11.9 14.0 8.8 10.9 11.7	21.8 28.6 22.8 31.7 31.4 23.8 24.8 29.9	28.2 27.6 20.3 21.8 17.4 38.8 26.1 13.0	4.8 7.9 6.2 6.9 9.3 5.0 7.6 10.4	0.8 0.5 0.7 - 1.2 - 0.8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8 200	30.5 34.6 26.6 27.5	15.5 9.3 13.4 12.5	27.6 26.5 24.9 25.5	18.4 22.2 27.8 25.5	7.5 6.3 7.2 8.5	0.6 1.0 0.2 0.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1 258 121 27 442 10	29.0 27.5 25.6 25.9 34.2 10.0	10.0 11.6 13.2 14.8 13.6 20.0	29.6 24.0 24.0 37.0 24.2 20.0	22.6 30.2 27.3 11.1 21.3 50.0	8.2 5.8 9.9 11.1 6.1 -	0.6 0.8 - - 0.7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3 328 506	28.4 34.1 28.3	10.7 13.1 12.6	25.9 23.5 27.7	27.3 23.2 22.7	7.2 6.1 7.7	0.6 - 1.0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5 347	26.3 29.9 34.9 31.7 29.7 32.3	15.3 15.0 2.3 9.2 11.6 10.1	23.7 20.9 25.6 25.8 27.7 30.5	29.0 24.8 27.9 26.7 25.2 17.9	4.7 9.0 7.0 6.7 5.2 8.9	1.0 0.4 2.3 - 0.6 0.3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2	27.6 33.2 31.3	14.1 9.4 11.4	27.4 23.8 25.4	24.4 25.3 22.4	6.0 7.6 8.8	0.5 0.6 0.7

문항 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② 주위사람 들로부터 듣고서	③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④ 학교에서 배워서	⑤ 사건을 겪고 나서	⑥ 정부홍보 물을 보고서
성	① 남 ② 여	634 564	69.9 72.2	6.9 11.5	11.4 8.2	3.8 2.8	6.2 3.5	1.9 1.8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5 262 286	62.5 72.7 73.7 76.2	7.4 9.2 8.0 11.9	15.2 8.6 11.1 3.8	7.1 1.6 1.5 2.8	6.3 6.0 4.2 2.8	1.5 1.9 1.5 2.4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1 411	65.0 74.5 77.0 63.5	16.7 12.7 7.8 7.1	3.3 3.6 7.8 16.8	2.5 1.2 2.4 5.8	5.0 5.5 4.2 5.6	7.5 2.4 0.8 1.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71.8 63.1 73.8 75.2 58.1 58.8 78.6 76.6	6.5 8.9 8.6 9.9 18.6 7.5 10.1 2.6	14.5 15.8 10.3 5.0 4.7 15.0 4.2 9.1	1.6 5.9 1.4 1.0 2.3 12.5 2.5 5.2	4.8 4.9 4.8 7.9 7.0 6.3 2.5 5.2	0.8 1.5 1.0 1.0 9.3 - 2.1 1.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8 200	71.3 74.0 68.2 71.0	11.5 8.1 8.9 9.0	7.5 8.1 12.0 11.0	2.3 3.5 4.8 1.5	4.6 4.5 4.5 6.5	2.9 1.8 1.7 1.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1 258 121 27 442 10	74.8 68.6 71.9 66.7 69.5 60.0	7.6 10.9 7.4 14.8 9.0 20.0	7.6 8.9 14.0 7.4 11.1 10.1	1.8 4.7 4.1 7.4 3.6 -	5.6 5.0 1.7 3.7 5.2 10.0	2.6 1.9 0.8 - 1.6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3 328 506	68.6 72.9 71.1	6.9 7.6 11.7	12.1 9.8 8.3	5.8 2.4 2.4	5.2 5.5 4.3	1.4 1.8 2.2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5 347	69.0 74.8 72.1 75.8 67.7 69.5	8.7 7.3 9.3 5.0 11.0 11.2	10.7 9.4 11.6 7.5 9.0 10.4	6.0 2.1 - 3.3 3.2 2.6	4.7 3.4 4.7 5.8 5.8 5.5	1.0 3.0 2.3 2.5 3.2 0.9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2	70.2 75.6 66.5	9.9 5.3 12.1	9.7 10.3 9.6	4.4 2.4 2.6	4.8 4.4 5.9	1.0 2.1 3.3

문항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자세히 본다	② 대충본다	③ 거의 보지 않는다	④ 전혀 보지 않는다
성	① 남	635	27.9	55.9	12.3	3.9	
	② 여	564	15.6	55.3	20.2	8.9	
연령	① 20대	336	16.1	59.8	21.7	2.4	
	② 30대	316	22.8	58.9	14.2	4.1	
	③ 40대	262	24.0	59.5	11.8	4.6	
	④ 50대 이상	286	26.9	43.4	15.0	14.7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13.3	40.8	23.3	22.5	
	② 중졸	165	20.0	46.1	17.6	16.4	
	③ 고졸	502	26.5	57.0	13.9	2.6	
	④ 대재 이상	411	20.2	62.3	15.8	1.7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24.2	58.9	15.3	1.6	
	② 사무직	203	24.6	53.7	19.7	2.0	
	③ 판매·서비스직	291	24.1	57.4	11.0	7.6	
	④ 생산직	101	25.7	51.5	14.9	7.9	
	⑤ 농어업	86	20.9	43.0	20.9	15.1	
	⑥ 학생	80	20.0	65.0	13.8	1.3	
	⑦ 주부	238	16.0	57.1	17.2	9.7	
	⑧ 기타·무직	77	23.4	53.2	20.8	2.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23.6	44.3	17.8	14.4	
	② 70~119만원	396	21.5	54.8	17.9	5.8	
	③ 120~199만원	419	22.2	58.5	14.6	4.8	
	④ 200만원 이상	200	22.5	60.5	14.5	2.5	
종교	① 불교	342	24.6	54.1	14.0	7.3	
	② 기독교	258	20.2	56.2	15.9	7.8	
	③ 천주교	121	19.8	62.8	15.7	1.7	
	④ 유교	27	44.4	40.7	7.4	7.4	
	⑤ 무종교	442	20.8	55.0	18.6	5.7	
	⑥ 기타	10	20.0	70.0	-	10.0	
성향	① 진보적	364	22.0	58.2	15.7	4.1	
	② 중도적	328	21.6	58.8	14.9	4.6	
	③ 보수적	506	22.5	51.6	17.0	8.9	
거주지역	① 서울	301	18.6	60.5	16.9	4.0	
	② 경기	234	21.4	55.1	16.2	7.3	
	③ 강원	43	25.6	65.1	9.3	-	
	④ 충청	120	24.2	62.5	10.8	2.5	
	⑤ 호남	155	25.8	51.0	15.5	7.7	
	⑥ 영남	347	23.1	50.1	17.9	8.9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21.1	57.8	15.8	5.3	
	② 중·소도시	340	24.1	53.5	17.1	5.3	
	③ 읍·면 이하	272	22.1	53.3	15.1	9.6	

문항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자주 있었다	② 한 두 번 있었다	③ 전혀 없었다
성별	① 남 ② 여	635 563	3.5 2.1	38.6 26.6	58.0 71.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5	2.1 3.2 3.4 2.8	28.3 41.1 32.1 30.5	69.6 55.7 64.5 66.7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19 165 502 411	2.5 4.2 2.6 2.7	16.8 29.1 36.1 35.3	80.7 66.7 61.4 62.0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0.8 1.5 3.8 3.0 4.7 3.8 2.5 3.9	41.1 33.0 41.4 36.6 24.4 26.3 26.9 19.5	58.1 65.5 54.8 60.4 70.9 70.0 70.6 76.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3 396 419 200	2.9 2.0 3.3 3.5	22.5 33.8 34.8 37.0	74.6 64.1 61.8 59.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1 258 121 27 442 10	3.5 1.6 0.8 3.7 3.6 -	31.7 37.2 32.2 25.9 31.7 60.0	64.8 61.2 66.9 70.4 64.7 4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7 506	3.8 3.4 1.8	33.5 32.4 33.0	62.6 64.2 65.2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6	2.0 4.7 2.3 3.3 3.2 2.0	35.2 38.9 37.2 30.8 25.8 30.6	62.8 56.4 60.5 65.8 71.0 67.3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1	2.4 2.4 4.4	33.8 35.3 28.4	63.8 62.4 67.2

문항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되고 있다	③ 별로 잘 되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잘 되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4	1.7	27.0	61.7	9.6
	② 여	562	2.0	32.2	57.1	8.7
연령	① 20대	336	1.5	19.6	65.5	13.4
	② 30대	316	2.2	29.1	61.1	7.6
	③ 40대	262	1.9	36.6	54.2	7.3
	④ 50대 이상	283	1.8	34.6	55.8	7.8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3.3	41.7	47.5	7.5
	② 중졸	164	1.2	36.6	54.9	7.3
	③ 고졸	501	2.4	30.3	57.1	10.2
	④ 대재 이상	411	1.0	21.9	67.9	9.2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2.4	30.6	57.3	9.7
	② 사무직	203	1.5	27.1	62.6	8.9
	③ 판매·서비스직	290	1.0	27.6	63.8	7.6
	④ 생산직	101	2.0	25.7	61.4	10.9
	⑤ 농어업	86	3.5	34.9	53.5	8.1
	⑥ 학생	80	2.5	11.3	73.8	12.5
	⑦ 주부	237	2.5	37.6	51.5	8.4
	⑧ 기타·무직	76	-	32.9	53.9	13.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2	2.3	26.7	64.5	6.4
	② 70~119만원	396	1.5	33.3	56.1	9.1
	③ 120~199만원	419	1.9	29.4	60.6	8.1
	④ 200만원 이상	200	2.0	23.5	61.0	13.5
종교	① 불교	342	3.2	31.3	57.9	7.6
	② 기독교	258	0.8	27.9	61.6	9.7
	③ 천주교	120	1.7	29.2	55.8	13.3
	④ 유교	27	-	33.3	59.3	7.4
	⑤ 무종교	440	1.6	28.4	61.1	8.9
	⑥ 기타	10	-	40.0	40.0	20.0
성향	① 진보적	364	2.2	23.1	62.6	12.1
	② 중도적	328	0.9	30.2	61.0	7.9
	③ 보수적	504	2.2	33.3	56.5	7.9
거주지역	① 서울	298	0.7	28.2	61.1	10.1
	② 경기	234	1.3	28.2	61.5	9.0
	③ 강원	43	7.0	30.2	60.5	2.3
	④ 충청	120	3.3	30.0	57.5	9.2
	⑤ 호남	155	2.6	25.8	62.6	9.0
	⑥ 영남	347	1.7	32.6	56.2	9.5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5	1.7	30.6	58.6	9.1
	② 중·소도시	340	2.4	25.0	61.8	10.9
	③ 읍·면 이하	272	1.5	32.4	58.8	7.4

문항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국민의 권리·의무 와 국가조 직에 대한 지식	② 사회생활 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③ 법을 사용 하는 능력 의 향상	④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 른 인간상 정립	⑤ 기 타
성	① 남 ② 여	634 558	15.5 15.9	24.0 27.1	4.7 6.8	54.9 48.9	0.9 1.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5 262 280	18.2 17.1 9.5 16.8	28.9 20.3 26.0 26.4	7.7 6.7 5.7 2.1	44.6 55.2 56.5 53.6	0.6 0.6 2.3 1.1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17 164 500 411	10.3 20.7 16.4 14.4	31.6 29.3 23.8 24.1	7.7 4.9 4.4 7.1	46.2 44.5 54.8 53.5	4.3 0.6 0.6 1.0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88 101 86 80 236 75	12.9 16.3 17.0 16.8 12.8 13.8 14.8 20.0	22.6 25.6 22.2 23.8 26.7 26.3 29.2 29.3	8.9 4.9 3.8 5.9 9.3 10.0 5.1 2.7	54.8 52.7 55.6 52.5 47.7 48.8 50.4 46.7	0.8 0.5 1.4 1.0 3.5 1.3 0.4 1.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69 395 419 200	17.2 16.7 13.6 17.0	25.4 29.6 23.4 21.0	6.5 5.8 5.3 5.5	49.1 46.6 57.0 55.5	1.8 1.3 0.7 1.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1 256 120 27 439 10	17.3 15.6 15.0 11.1 15.0 10.0	26.1 23.0 23.3 29.6 26.7 20.0	3.8 8.2 4.2 3.7 6.4 -	51.0 51.6 56.7 55.6 51.5 70.0	1.8 1.6 0.8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3 326 503	17.6 17.5 13.1	21.2 23.3 29.8	9.1 5.8 3.2	49.9 52.8 53.3	2.2 0.6 0.6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98 230 43 120 155 347	14.4 18.3 14.0 13.3 12.9 17.3	24.2 26.5 23.3 34.2 27.7 21.9	7.7 3.9 7.0 7.5 5.8 4.3	53.4 50.0 53.5 45.0 51.6 55.0	0.3 1.3 2.3 -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5 337 271	15.9 17.5 12.9	24.3 24.9 28.4	5.5 5.9 5.9	53.7 50.7 50.6	0.7 0.9 2.2

문항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자세히 본다	② 대충 본다	③ 안본다	④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성	① 남	635	29.4	48.2	19.5	2.8	
	② 여	564	38.3	40.8	16.5	4.4	
연령	① 20대	336	35.4	52.4	11.6	0.6	
	② 30대	316	40.2	45.6	13.0	1.3	
	③ 40대	262	32.1	45.4	19.5	3.1	
	④ 50대 이상	286	25.5	34.3	30.1	10.1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20.8	20.8	38.3	20.0	
	② 중졸	165	33.3	36.4	24.8	5.5	
	③ 고졸	502	39.6	44.8	14.1	1.4	
	④ 대재 이상	411	29.9	55.2	14.1	0.7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25.0	58.9	16.1	-	
	② 사무직	203	31.5	50.2	16.3	2.0	
	③ 판매·서비스직	291	32.0	45.7	19.2	3.1	
	④ 생산직	101	41.6	43.6	12.9	2.0	
	⑤ 농어업	86	24.4	30.2	32.6	12.8	
	⑥ 학생	80	32.5	53.8	13.8	-	
	⑦ 주부	238	43.3	34.9	17.2	4.6	
	⑧ 기타·무직	77	29.9	42.9	19.5	7.8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35.1	28.7	25.3	10.9	
	② 70~119만원	396	35.9	44.9	16.2	3.0	
	③ 120~199만원	419	30.3	49.6	17.7	2.4	
	④ 200만원 이상	200	34.0	48.5	16.5	1.0	
종교	① 불교	342	34.2	40.1	20.8	5.0	
	② 기독교	258	32.6	45.3	17.1	5.0	
	③ 천주교	121	33.1	48.8	18.2	-	
	④ 유교	27	40.7	37.0	22.2	-	
	⑤ 무종교	442	34.2	46.8	16.1	2.9	
	⑥ 기타	10	-	70.0	30.0	-	
성향	① 진보적	364	37.9	45.9	13.7	2.5	
	② 중도적	328	33.2	47.3	17.4	2.1	
	③ 보수적	506	30.6	42.5	21.5	5.3	
거주지역	① 서울	301	28.9	51.8	17.6	1.7	
	② 경기	234	39.7	43.6	13.7	3.0	
	③ 강원	43	46.5	41.9	11.6	-	
	④ 충청	120	38.3	46.7	14.2	0.8	
	⑤ 호남	155	31.6	34.2	26.5	7.7	
	⑥ 영남	347	31.1	43.8	19.9	5.2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31.0	49.8	16.0	3.2	
	② 중·소도시	340	36.5	41.5	19.7	2.4	
	③ 읍·면 이하	272	35.7	37.9	20.6	5.9	

문항 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② 법대로만 하면 된다	③ 법과 관련된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④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4	51.3 50.4	12.3 17.2	7.7 7.8	15.9 16.8	12.8 7.8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6	48.2 52.2 55.3 48.6	7.4 10.1 17.6 25.2	6.3 9.2 7.3 8.4	21.4 15.5 12.6 14.7	16.7 13.0 7.3 3.1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45.0 47.9 49.2 56.2	32.5 19.4 13.3 8.5	6.7 9.1 9.0 6.1	13.3 16.4 16.1 17.5	2.5 7.3 12.4 11.7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7	62.1 56.7 50.2 45.5 38.4 48.8 51.3 42.9	11.3 8.9 14.8 14.9 24.4 3.8 18.9 20.8	5.6 4.4 12.0 9.9 10.5 5.0 6.7 3.9	10.5 16.7 15.1 14.9 20.9 21.3 15.5 23.4	10.5 13.3 7.9 14.9 5.8 21.3 7.6 9.1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9 200	40.2 50.0 55.4 53.5	25.9 14.9 10.3 12.0	8.6 7.3 8.1 6.5	20.7 16.2 15.0 16.0	4.6 11.6 11.2 12.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2 10	49.1 49.2 52.1 44.4 53.6 40.0	17.3 14.7 14.9 25.9 11.5 20.0	8.2 7.0 10.7 3.7 7.2 10.0	17.3 17.8 14.0 18.5 15.2 20.0	8.2 11.2 8.3 7.4 12.4 1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6	46.2 54.3 52.2	13.5 11.9 17.0	7.7 7.0 8.3	17.9 19.5 13.2	14.8 7.3 9.3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7	55.5 49.1 37.2 51.7 47.7 51.0	13.3 15.0 18.6 15.8 16.1 13.8	6.6 5.6 14.0 9.2 8.4 8.6	12.6 16.7 25.6 17.5 20.6 15.9	12.0 13.7 4.7 5.8 7.1 10.7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2	53.7 50.3 45.6	13.1 15.3 16.9	7.1 7.1 9.9	13.3 19.1 19.5	12.8 8.2 8.1

문항 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②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③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④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성	① 남 ② 여		634 564	19.9 16.1	20.5 24.3	49.1 50.7	10.6 8.9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5	15.8 17.4 21.4 18.6	18.2 25.9 24.0 21.4	57.4 49.7 43.5 47.0	8.6 7.0 11.1 13.0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4 502 411	10.8 15.2 20.3 18.5	24.2 25.0 22.1 20.9	47.5 47.6 49.8 51.6	17.5 12.2 7.8 9.0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17.7 18.2 21.7 20.8 12.8 13.8 16.0 18.2	22.6 24.1 21.7 20.8 20.9 16.3 26.1 16.9	50.8 50.2 47.6 45.5 52.3 60.0 50.0 48.1	8.9 7.4 9.0 12.9 14.0 10.0 8.0 16.9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8 200	11.5 18.9 18.9 19.5	21.3 21.5 22.2 25.0	54.6 48.5 51.9 44.5	12.6 11.1 6.9 11.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1 258 121 27 442 10	18.5 17.4 17.4 14.8 18.1 40.0	24.9 21.7 24.8 29.6 19.9 -	47.5 52.3 47.1 44.4 51.6 40.0	9.1 8.5 10.7 11.1 10.4 2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5	16.5 14.3 21.4	17.0 26.5 23.4	56.9 50.6 44.6	9.6 8.5 10.7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3 43 120 155 347	20.6 14.2 14.0 19.2 14.2 20.5	25.9 19.3 11.6 22.5 21.3 22.8	46.5 52.4 60.5 49.2 54.2 48.1	7.0 14.2 14.0 9.2 10.3 8.6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39 272	19.0 18.0 16.2	23.0 23.9 18.8	50.9 45.1 53.7	7.1 13.0 11.4

문항 24. 블랑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③ 소비자고발 센터에 신고한다	④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 지 받아낸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4	16.5 16.3	46.9 51.1	35.9 31.6	0.6 1.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6	8.6 12.0 19.1 28.0	55.1 53.5 49.2 36.4	35.7 33.2 31.3 34.6	0.6 1.3 0.4 1.0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34.2 26.1 14.3 10.0	33.3 48.5 47.6 55.2	30.0 24.8 37.1 34.5	2.5 0.6 1.0 0.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7	12.1 8.9 20.3 14.9 25.6 12.5 16.4 24.7	55.6 54.2 44.7 52.5 34.9 55.0 51.3 37.7	32.3 36.9 34.0 31.7 37.2 32.5 31.5 35.1	- - 1.0 1.0 2.3 - 0.8 2.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9 200	21.8 16.2 15.0 14.5	38.5 46.7 51.6 58.0	37.9 36.1 32.9 27.0	1.7 1.0 0.5 0.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2 10	19.3 14.3 16.5 7.4 15.6 30.0	45.3 49.2 49.6 59.3 50.9 40.0	33.3 35.7 33.9 33.3 33.3 30.0	2.0 0.8 - - 0.2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6	12.6 16.5 19.0	50.0 47.9 49.0	35.7 35.7 31.2	1.6 - 0.8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7	14.3 18.8 7.0 11.7 17.4 19.0	55.1 47.0 46.5 48.3 39.4 49.6	29.9 32.9 46.5 39.2 43.2 30.3	0.7 1.3 - 0.8 - 1.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2	14.8 14.7 22.1	54.8 45.0 41.2	29.9 39.7 34.9	0.5 0.6 1.8

문항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② 치료비만 받는다	③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④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성	① 남	630	6.3	23.8	47.3	22.5
	② 여	564	6.2	29.8	38.7	25.4
연령	① 20대	335	4.5	25.4	48.4	21.8
	② 30대	316	6.0	29.1	44.0	20.9
	③ 40대	261	6.9	24.1	43.3	25.7
	④ 50대 이상	283	8.1	27.6	36.4	27.9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8.3	35.8	31.7	24.2
	② 중졸	163	8.6	25.8	39.3	26.4
	③ 고졸	499	7.0	26.7	40.9	25.5
	④ 대재 이상	411	3.6	24.3	51.3	20.7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3	4.1	29.3	45.5	21.2
	② 사무직	201	5.5	24.4	46.3	23.9
	③ 판매·서비스직	290	8.3	21.4	46.2	24.1
	④ 생산직	101	7.9	21.8	48.5	21.8
	⑤ 농어업	85	5.9	30.6	35.3	28.2
	⑥ 학생	80	3.8	23.8	52.5	20.0
	⑦ 주부	238	6.7	32.4	37.0	23.9
	⑧ 기타·무직	77	3.9	35.1	32.5	28.6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2	7.0	28.5	39.5	25.0
	② 70~119만원	394	4.8	29.9	39.8	25.4
	③ 120~199만원	418	8.4	25.8	45.2	20.6
	④ 200만원 이상	200	4.5	20.5	48.5	26.5
종교	① 불교	342	7.0	25.1	37.7	30.1
	② 기독교	258	5.0	30.2	43.8	20.9
	③ 천주교	121	5.8	28.9	40.5	24.8
	④ 유교	27	7.4	22.2	51.9	18.5
	⑤ 무종교	437	5.9	25.2	48.1	20.8
	⑥ 기타	10	30.0	30.0	20.0	20.0
성향	① 진보적	363	5.8	25.6	42.7	25.9
	② 중도적	327	6.7	30.0	41.9	21.4
	③ 보수적	503	6.4	25.2	44.5	23.9
거주지역	① 서울	300	8.0	21.7	48.3	22.0
	② 경기	230	6.1	25.7	41.3	27.0
	③ 강원	43	4.7	16.3	46.5	32.6
	④ 충청	120	4.2	30.0	46.7	19.2
	⑤ 호남	155	5.2	37.4	36.1	21.3
	⑥ 영남	347	6.3	26.8	41.8	25.1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6.3	22.1	46.5	25.0
	② 중·소도시	340	5.0	29.4	42.9	22.6
	③ 읍·면 이하	268	7.8	32.8	36.6	22.8

문항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②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③ 변호사를 찾아간다	④ 법의 해결에 맡긴다
성	① 남		635	84.6	4.1	3.9	7.4
	② 여		564	84.2	5.9	2.8	7.1
연령	① 20대		336	84.5	5.7	3.9	6.0
	② 30대		316	84.8	5.1	3.8	6.3
	③ 40대		262	81.3	5.7	3.4	9.5
	④ 50대 이상		286	86.7	3.1	2.4	7.7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88.3	3.3	1.7	6.7
	② 중졸		165	84.8	6.7	1.8	6.7
	③ 고졸		502	85.1	3.8	3.8	7.4
	④ 대재 이상		411	82.5	6.1	4.1	7.3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79.0	3.2	8.1	9.7
	② 사무직		203	83.7	4.9	4.9	6.4
	③ 판매·서비스직		291	84.2	4.1	3.4	8.2
	④ 생산직		101	89.1	4.0	1.0	5.9
	⑤ 농어업		86	82.6	7.0	2.3	8.1
	⑥ 학생		80	90.0	2.5	1.3	6.3
	⑦ 주부		238	84.9	6.3	2.9	5.9
	⑧ 기타·무직		77	84.4	7.8	-	7.8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83.9	4.0	3.4	8.6
	② 70~119만원		396	85.1	3.8	3.0	8.1
	③ 120~199만원		419	84.2	5.7	3.6	6.4
	④ 200만원 이상		200	84.0	6.0	4.0	6.0
종교	① 불교		342	83.3	4.7	2.9	9.1
	② 기독교		258	83.3	4.3	4.3	8.1
	③ 천주교		121	76.0	12.4	4.1	7.4
	④ 유교		27	85.2	-	3.7	11.1
	⑤ 무종교		442	88.0	3.8	3.2	5.0
	⑥ 기타		10	90.0	-	-	10.0
성향	① 진보적		364	81.9	6.0	4.7	7.4
	② 중도적		328	87.8	4.6	2.1	5.5
	③ 보수적		506	84.0	4.3	3.4	8.3
거주지역	① 서울		301	81.1	6.3	3.7	9.0
	② 경기		234	86.3	6.4	2.6	4.7
	③ 강원		43	72.1	2.3	2.3	23.3
	④ 충청		120	80.0	8.3	5.0	6.7
	⑤ 호남		155	89.0	1.9	1.9	7.1
	⑥ 영남		347	87.0	3.2	4.0	5.8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83.3	5.4	3.2	8.0
	② 중·소도시		340	83.5	5.3	4.1	7.1
	③ 읍·면 이하		272	87.9	3.3	2.9	5.9

문항 27.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고위 공무원	② 변 호 사	③ 판· 검사	④ 담당 행정 공무원	⑤ 경 찰 관	⑥ 정 치 인	⑦ 기 타
성	① 남 ② 여		634 560	7.9 9.5	26.2 26.4	25.6 25.2	23.5 20.9	9.3 10.9	4.9 4.5	2.7 2.7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5 313 262 285	13.7 9.6 6.1 3.9	24.2 21.1 29.0 31.9	23.9 24.6 26.7 26.7	20.6 26.8 22.5 19.3	9.6 9.3 10.7 10.9	6.0 7.0 3.4 1.8	2.1 1.6 1.5 5.6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18 165 500 411	2.5 6.1 7.2 13.1	22.9 29.1 28.8 22.9	31.4 24.8 25.8 23.4	17.8 20.6 21.2 25.8	14.4 15.2 10.6 6.1	4.2 1.8 4.2 6.6	6.8 2.4 2.2 2.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2 288 101 86 80 237 77	15.3 11.9 5.2 5.0 4.7 16.3 7.2 7.8	25.0 21.8 30.6 24.8 26.7 22.5 29.5 19.5	19.4 26.7 28.5 30.7 23.3 17.5 24.9 24.7	31.5 22.8 20.5 21.8 23.3 22.5 18.6 24.7	4.8 7.9 9.4 13.9 16.3 7.5 11.8 11.7	2.4 6.9 4.9 1.0 1.2 10.0 4.6 5.2	1.6 2.0 1.0 3.0 4.7 3.8 3.4 6.5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2 395 418 200	5.8 6.3 9.6 14.0	23.3 28.4 27.8 22.0	30.2 25.6 23.9 23.0	15.7 23.5 20.3 30.0	14.0 10.1 10.0 6.5	4.1 3.0 6.7 4.0	7.0 3.0 1.7 0.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1 256 120 27 441 10	7.9 9.0 9.2 3.7 9.3 -	26.7 27.3 30.0 37.0 23.6 30.0	26.7 24.2 29.2 11.1 25.2 10.0	21.1 23.4 18.3 25.9 22.9 50.0	10.0 8.6 8.3 18.5 11.1 -	4.1 4.7 1.7 3.7 5.9 10.0	3.5 2.7 3.3 - 2.0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1 327 505	14.4 5.8 6.3	24.7 23.2 29.5	21.6 30.0 25.0	23.3 22.3 21.6	7.2 10.7 11.7	5.5 5.2 3.8	3.3 2.8 2.2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3 43 119 154 346	13.0 5.2 7.0 5.9 5.8 9.5	25.7 35.2 25.6 29.4 27.9 19.1	24.3 21.9 16.3 28.6 19.5 31.2	25.0 17.6 27.9 14.3 28.6 22.5	5.3 12.4 9.3 15.1 13.0 9.5	4.7 5.2 4.7 5.9 1.9 5.2	2.0 2.6 9.3 0.8 3.2 2.9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5 338 272	11.1 6.5 5.9	24.6 31.7 23.2	25.0 23.7 28.3	25.0 20.4 19.1	6.8 11.8 14.7	5.6 3.8 3.7	1.9 2.1 5.1

문항 28.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성	① 남 ② 여		634 563	15.6 7.3	27.3 24.9	46.1 54.0	11.0 13.9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5 316 262 285	6.0 7.0 10.7 24.6	22.1 27.8 29.0 26.3	58.2 52.8 47.3 38.9	13.7 12.3 13.0 10.2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4 502 410	19.2 15.9 12.7 6.6	18.3 26.2 28.7 25.1	44.2 47.0 47.8 55.4	18.3 11.0 10.8 12.9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5	7.3 10.8 15.5 10.9 17.4 6.3 8.0 18.7	33.1 25.6 30.2 23.8 24.4 16.3 24.8 20.0	49.2 49.3 44.3 45.5 41.9 65.0 55.0 56.0	10.5 14.3 10.0 19.8 16.3 12.5 12.2 5.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8 200	17.2 10.4 11.0 10.5	23.0 26.0 26.6 28.5	43.7 51.8 51.7 48.5	16.1 11.9 10.8 12.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0 27 441 10	13.7 10.1 11.7 29.6 10.0 10.0	24.0 26.0 25.0 25.9 28.3 20.0	51.2 51.2 47.5 37.0 49.4 50.0	11.1 12.8 15.8 7.4 12.2 2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7 506	12.1 10.7 11.9	25.0 26.6 26.7	50.5 51.4 48.4	12.4 11.3 13.0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99 234 43 120 155 347	8.0 15.0 11.6 15.0 14.2 10.4	29.8 27.8 23.3 26.7 15.5 26.8	51.8 44.9 53.5 44.2 56.1 50.1	10.4 12.4 11.6 14.2 14.2 12.7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6 340 272	8.9 13.2 15.8	29.2 23.2 23.2	49.8 49.7 50.0	12.1 13.8 11.0

문항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그 렇 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읽어본 적이 없다
성	① 남		634	80.4	9.9	9.6
	② 여		564	80.1	5.9	14.0
연령	① 20대		336	88.7	7.1	4.2
	② 30대		316	84.5	7.0	8.5
	③ 40대		262	79.4	7.6	13.0
	④ 50대 이상		285	66.7	10.5	22.8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63.3	8.3	28.3
	② 중졸		164	67.1	7.3	25.6
	③ 고졸		502	81.5	8.8	9.8
	④ 대재 이상		411	89.3	7.3	3.4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88.7	8.1	3.2
	② 사무직		203	86.7	8.4	4.9
	③ 판매·서비스직		291	77.0	8.9	14.1
	④ 생산직		101	83.2	4.0	12.9
	⑤ 농어업		86	58.1	16.3	25.6
	⑥ 학생		80	92.5	3.8	3.8
	⑦ 주부		238	78.2	6.3	15.5
	⑧ 기타·무직		76	77.6	9.2	13.2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69.0	9.2	21.8
	② 70~119만원		396	78.5	9.3	12.1
	③ 120~199만원		419	84.5	6.0	9.5
	④ 200만원 이상		200	85.5	8.0	6.5
종교	① 불교		342	75.1	9.4	15.5
	② 기독교		258	82.9	7.4	9.7
	③ 천주교		121	86.0	0.8	13.2
	④ 유교		27	77.8	11.1	11.1
	⑤ 무종교		441	81.2	9.3	9.5
	⑥ 기타		10	90.0	-	10.0
성향	① 진보적		364	83.5	6.0	10.4
	② 중도적		328	82.6	9.8	7.6
	③ 보수적		506	76.7	8.1	15.2
거주지역	① 서울		300	87.3	4.0	8.7
	② 경기		234	80.8	9.0	10.3
	③ 강원		43	76.7	14.0	9.3
	④ 충청		120	80.8	10.8	8.3
	⑤ 호남		155	69.7	10.3	20.0
	⑥ 영남		347	79.0	8.1	13.0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85.2	6.6	8.2
	② 중·소도시		340	78.2	8.5	13.2
	③ 읍·면 이하		272	72.4	10.3	17.3

문항 30.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원칙대로 하면 된다	②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③ 압력을 넣어야 한다	④ 작으나마 놔물을 주어야 한다	⑤ 기타
성	① 남 ② 여		635 563	72.0 77.6	16.5 13.5	1.9 1.6	8.3 5.5	1.3 1.8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5	69.6 73.1 76.3 80.7	15.2 16.8 13.0 15.1	2.7 1.3 2.7 0.4	11.6 8.2 5.0 2.1	0.9 0.6 3.1 1.8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78.3 84.8 76.3 67.4	12.5 11.5 14.1 18.5	0.8 0.6 1.8 2.4	3.3 1.8 7.0 10.2	5.0 1.2 0.8 1.5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65.3 70.9 77.2 75.2 82.6 62.5 78.6 80.5	17.7 17.7 15.5 13.9 11.6 20.0 13.0 9.1	3.2 2.5 0.7 1.0 - 2.5 2.1 2.6	10.5 7.9 5.5 8.9 1.2 13.8 5.0 7.8	3.2 1.0 1.0 1.0 4.7 1.3 1.3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3 396 419 200	76.3 78.3 73.7 67.5	13.3 13.1 15.0 20.5	2.3 1.0 2.4 1.5	5.8 6.8 7.4 8.0	2.3 0.8 1.4 2.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1 10	76.6 74.8 66.1 77.8 75.5 60.0	14.6 15.1 20.7 18.5 13.6 20.0	0.9 0.8 3.3 - 2.7 -	5.6 7.4 7.4 - 7.9 20.0	2.3 1.9 2.5 3.7 0.2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5	74.2 72.9 76.0	13.7 14.3 16.6	1.9 2.4 1.2	8.8 8.5 4.8	1.4 1.8 1.4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5 347	67.0 82.1 74.4 75.8 80.0 73.5	21.3 12.8 14.0 15.8 9.7 13.5	2.0 0.9 2.3 0.8 3.9 1.4	8.3 3.8 9.3 6.7 4.5 8.9	1.3 0.4 - 0.8 1.9 2.6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2	71.6 78.5 76.5	17.4 12.9 12.9	2.2 0.9 1.8	7.2 7.4 6.3	1.7 0.3 2.6

문항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3	2.7	41.9	50.1	5.4	
	② 여	558	2.9	39.1	53.4	4.7	
연령	① 20대	334	1.2	35.0	57.2	6.6	
	② 30대	316	2.8	33.9	57.3	6.0	
	③ 40대	261	3.1	47.9	45.2	3.8	
	④ 50대 이상	281	4.3	47.7	44.8	3.2	
학력	① 국졸 이하	118	5.1	44.1	46.6	4.2	
	② 중졸	163	3.7	47.9	47.2	1.2	
	③ 고졸	500	3.2	41.2	50.0	5.6	
	④ 대재 이상	410	1.2	35.9	56.8	6.1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0.8	41.9	52.4	4.8	
	② 사무직	202	1.5	41.6	51.5	5.4	
	③ 판매·서비스직	287	2.1	46.7	47.0	4.2	
	④ 생산직	101	2.0	36.6	50.5	10.9	
	⑤ 농어업	86	4.7	37.2	57.0	1.2	
	⑥ 학생	80	1.3	31.3	57.5	10.0	
	⑦ 주부	237	4.6	40.5	51.1	3.8	
	⑧ 기타·무직	75	6.7	30.7	60.0	2.7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1	3.5	34.5	57.3	4.7	
	② 70~119만원	395	2.8	43.8	48.4	5.1	
	③ 120~199만원	418	2.4	39.2	53.1	5.3	
	④ 200만원 이상	198	3.0	41.4	50.5	5.1	
종교	① 불교	339	3.8	41.9	50.1	4.1	
	② 기독교	257	2.7	41.6	51.4	4.3	
	③ 천주교	120	-	43.3	49.2	7.5	
	④ 유교	27	11.1	48.1	33.3	7.4	
	⑤ 무종교	439	2.3	38.0	54.4	5.2	
	⑥ 기타	10	-	20.0	7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2	2.2	37.3	54.4	6.1	
	② 중도적	326	2.8	42.6	49.1	5.5	
	③ 보수적	503	3.2	41.6	51.3	4.0	
거주지역	① 서울	298	3.4	35.9	55.7	5.0	
	② 경기	229	3.9	41.9	47.6	6.6	
	③ 강원	43	-	27.9	67.4	4.7	
	④ 충청	120	1.7	43.3	48.3	6.7	
	⑤ 호남	155	2.6	40.0	52.3	5.2	
	⑥ 영남	347	2.3	44.4	49.9	3.5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5	2.4	38.6	54.4	4.6	
	② 중·소도시	335	2.7	44.2	45.4	7.8	
	③ 읍·면 이하	272	3.7	40.1	53.7	2.6	

문항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② 여		631 559	4.0 2.7	53.2 51.3	41.2 42.4	1.6 3.6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5 314 262 280	2.4 4.1 4.2 2.9	47.8 48.7 55.7 58.9	47.2 43.6 38.5 36.1	2.7 3.5 1.5 2.1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18 162 499 411	4.2 4.3 4.0 1.9	52.5 57.4 53.1 49.4	39.8 36.4 39.7 47.0	3.4 1.9 3.2 1.7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2 287 100 86 80 236 76	1.6 4.0 3.8 4.0 5.8 1.3 3.0 2.6	49.2 50.0 54.7 42.0 55.8 47.5 56.4 57.9	46.8 44.1 39.0 49.0 33.7 48.8 39.0 38.2	2.4 2.0 2.4 5.0 4.7 2.5 1.7 1.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0 395 418 198	2.9 3.8 2.9 4.0	47.1 56.5 52.6 49.0	44.7 38.2 42.3 43.9	5.3 1.5 2.2 3.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39 256 121 27 438 10	4.7 3.5 1.7 - 3.0 -	53.1 52.3 52.1 66.7 51.6 30.0	39.8 40.2 43.8 33.3 43.4 70.0	2.4 3.9 2.5 - 2.1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1 327 502	3.9 3.1 3.2	49.6 52.3 54.6	43.5 41.6 40.4	3.0 3.1 1.8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298 228 43 120 155 347	2.3 3.1 4.7 6.7 4.5 2.6	52.0 52.6 39.5 55.8 55.5 51.6	43.3 40.8 51.2 35.8 38.1 43.5	2.3 3.5 4.7 1.7 1.9 2.3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5 335 271	2.6 3.6 4.8	53.3 49.0 54.6	41.4 45.4 38.0	2.7 2.1 2.6

문항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1	5.9	45.8	43.4	4.9	
	② 여	558	4.8	45.7	45.9	3.6	
연령	① 20대	334	4.5	45.5	44.3	5.7	
	② 30대	315	4.4	43.8	46.0	5.7	
	③ 40대	262	6.5	45.8	44.3	3.4	
	④ 50대 이상	279	6.5	48.0	43.7	1.8	
학력	① 국졸 이하	118	8.5	48.3	39.8	3.4	
	② 중졸	163	6.7	45.4	45.4	2.5	
	③ 고졸	499	5.4	45.3	45.1	4.2	
	④ 대재 이상	409	3.9	45.7	45.0	5.4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3	2.4	50.4	43.1	4.1	
	② 사무직	202	5.0	43.6	47.0	4.5	
	③ 판매·서비스직	287	6.3	44.3	44.9	4.5	
	④ 생산직	100	9.0	38.0	47.0	6.0	
	⑤ 농어업	86	7.0	47.7	39.5	5.8	
	⑥ 학생	80	2.5	51.3	37.5	8.8	
	⑦ 주부	237	4.2	48.1	46.0	1.7	
	⑧ 기타·무직	75	8.0	44.0	45.3	2.7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0	8.2	38.2	46.5	7.1	
	② 70~119만원	395	5.6	45.6	46.3	2.5	
	③ 120~199만원	417	3.1	46.8	45.8	4.3	
	④ 200만원 이상	198	7.6	49.5	37.4	5.6	
종교	① 불교	339	6.8	44.2	44.5	4.4	
	② 기독교	257	4.7	44.4	45.9	5.1	
	③ 천주교	119	3.4	43.7	44.5	8.4	
	④ 유교	27	3.7	48.1	44.4	3.7	
	⑤ 무종교	438	5.5	47.7	44.3	2.5	
	⑥ 기타	10	-	60.0	3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1	3.9	45.7	46.3	4.2	
	② 중도적	325	4.9	45.2	46.2	3.7	
	③ 보수적	503	6.8	46.1	42.3	4.8	
거주지역	① 서울	296	4.1	44.6	46.3	5.1	
	② 경기	229	3.5	48.0	44.5	3.9	
	③ 강원	43	7.0	44.2	41.9	7.0	
	④ 충청	120	7.5	48.3	39.2	5.0	
	⑤ 호남	155	7.1	44.5	43.2	5.2	
	⑥ 영남	347	6.1	45.0	46.1	2.9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3	5.3	45.1	44.6	5.0	
	② 중·소도시	336	4.2	44.0	47.3	4.5	
	③ 읍·면 이하	271	7.0	49.1	41.3	2.6	

문항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29	8.3	54.4	34.2	3.2
	② 여	559	8.4	54.2	34.3	3.0
연령	① 20대	333	5.7	53.8	36.6	3.9
	② 30대	314	9.9	52.2	33.8	4.1
	③ 40대	262	9.9	55.3	32.8	1.9
	④ 50대 이상	280	8.2	56.1	33.6	2.1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5.9	53.8	37.0	3.4
	② 중졸	163	11.7	57.1	30.1	1.2
	③ 고졸	497	10.5	55.1	31.6	2.8
	④ 대재 이상	409	5.1	52.1	38.6	4.2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4.8	58.1	33.9	3.2
	② 사무직	201	6.0	47.8	43.3	3.0
	③ 판매·서비스직	287	12.9	53.0	31.0	3.1
	④ 생산직	100	12.0	56.0	30.0	2.0
	⑤ 농어업	86	8.1	57.0	31.4	3.5
	⑥ 학생	80	2.5	55.0	37.5	5.0
	⑦ 주부	237	8.0	58.2	30.0	3.8
	⑧ 기타·무직	74	5.4	51.4	43.2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0	9.4	42.9	41.8	5.9
	② 70~119만원	396	10.9	57.3	29.8	2.0
	③ 120~199만원	417	5.3	54.9	36.7	3.1
	④ 200만원 이상	196	9.2	55.1	32.7	3.1
종교	① 불교	340	10.0	57.6	30.0	2.4
	② 기독교	256	7.4	53.5	34.4	4.7
	③ 천주교	120	7.5	44.2	41.7	6.7
	④ 유교	26	-	76.9	19.2	3.8
	⑤ 무종교	437	8.5	53.5	36.2	1.8
	⑥ 기타	10	-	50.0	50.0	-
성향	① 진보적	360	6.9	53.1	36.9	3.1
	② 중도적	327	9.8	52.0	35.2	3.1
	③ 보수적	501	8.4	56.5	31.9	3.2
거주지역	① 서울	296	5.7	55.1	35.5	3.7
	② 경기	228	6.6	54.4	34.6	4.4
	③ 강원	43	16.3	34.9	44.2	4.7
	④ 충청	120	11.7	59.2	25.8	3.3
	⑤ 호남	155	9.7	49.0	38.1	3.2
	⑥ 영남	347	8.9	56.5	33.1	1.4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3	7.5	55.2	34.1	3.1
	② 중·소도시	336	8.3	53.3	34.5	3.9
	③ 읍·면 이하	270	10.0	53.3	34.4	2.2

문항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단위 : %)

변 수		응답구분	빈 도 수 (명)	①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630	12.5	60.8	23.7	3.0	
	② 여	559	10.6	57.2	30.1	2.1	
연령	① 20대	333	9.0	61.0	26.7	3.3	
	② 30대	314	12.4	56.4	28.0	3.2	
	③ 40대	262	12.6	59.5	26.0	1.9	
	④ 50대 이상	281	13.2	59.4	25.6	1.8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10.1	58.0	31.1	0.8	
	② 중졸	163	15.3	53.4	30.7	0.6	
	③ 고졸	498	12.4	62.0	22.1	3.4	
	④ 대재 이상	409	9.8	57.9	29.3	2.9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8.1	63.7	25.8	2.4	
	② 사무직	201	10.0	56.2	31.8	2.0	
	③ 판매·서비스직	287	14.6	62.4	20.2	2.8	
	④ 생산직	100	17.0	54.0	25.0	4.0	
	⑤ 농어업	86	15.1	57.0	25.6	2.3	
	⑥ 학생	80	6.3	58.8	32.5	2.5	
	⑦ 주부	237	9.7	59.9	27.4	3.0	
	⑧ 기타·무직	75	12.0	53.3	33.3	1.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1	13.5	50.9	31.0	4.7	
	② 70~119만원	396	11.1	60.6	26.5	1.8	
	③ 120~199만원	417	10.3	60.0	26.6	3.1	
	④ 200만원 이상	196	14.3	61.7	22.4	1.5	
종교	① 불교	340	16.8	56.2	25.3	1.8	
	② 기독교	256	10.9	57.8	27.3	3.9	
	③ 천주교	120	8.3	53.3	35.0	3.3	
	④ 유교	27	-	77.8	14.8	7.4	
	⑤ 무종교	437	10.1	62.7	25.2	2.1	
	⑥ 기타	10	-	50.0	50.0	-	
성향	① 진보적	360	10.3	57.8	28.9	3.1	
	② 중도적	327	12.5	60.2	24.8	2.4	
	③ 보수적	502	12.2	59.2	26.3	2.4	
거주지역	① 서울	296	13.9	59.5	24.7	2.0	
	② 경기	229	9.2	60.3	27.5	3.1	
	③ 강원	43	18.6	53.5	25.6	2.3	
	④ 충청	120	16.7	52.5	26.7	4.2	
	⑤ 호남	155	8.4	58.1	31.0	2.6	
	⑥ 영남	347	10.4	61.4	25.9	2.3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3	11.8	59.9	25.9	2.4	
	② 중·소도시	337	12.2	57.6	26.7	3.6	
	③ 읍·면 이하	270	10.7	59.3	28.1	1.9	

문항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3	40.3 32.1	54.2 59.9	3.6 6.4	1.9 1.6
연령	① 20대	336	39.0	56.0	4.2	0.9
	② 30대	316	36.7	57.6	4.7	0.9
	③ 40대	262	36.6	56.5	4.6	2.3
	④ 50대 이상	285	33.0	57.5	6.3	3.2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34.2	56.7	5.8	3.3
	② 중졸	165	31.5	58.2	7.3	3.0
	③ 고졸	501	37.3	55.7	5.2	1.8
	④ 대재 이상	411	38.2	57.7	3.4	0.7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30.6	66.1	2.4	0.8
	② 사무직	203	42.4	51.7	4.9	1.0
	③ 판매·서비스직	291	39.9	51.9	5.5	2.7
	④ 생산직	101	39.6	54.5	2.0	4.0
	⑤ 농어업	86	25.6	67.4	4.7	2.3
	⑥ 학생	80	46.3	52.5	1.3	-
	⑦ 주부	237	30.8	62.4	6.3	0.4
	⑧ 기타·무직	77	32.5	53.2	10.4	3.9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35.3	54.9	8.1	1.7
	② 70~119만원	396	37.9	55.6	4.8	1.8
	③ 120~199만원	419	36.0	56.8	5.3	1.9
	④ 200만원 이상	200	35.5	61.5	2.0	1.0
종교	① 불교	342	33.3	58.5	6.1	2.0
	② 기독교	257	35.8	56.0	5.4	2.7
	③ 천주교	121	38.8	55.4	3.3	2.5
	④ 유교	27	37.0	55.6	7.4	-
	⑤ 무종교	442	38.7	56.6	4.1	0.7
	⑥ 기타	10	30.0	60.0	-	10.0
성향	① 진보적	364	39.3	53.0	5.5	2.2
	② 중도적	328	32.0	61.3	4.9	1.8
	③ 보수적	505	37.2	56.8	4.6	1.4
거주지역	① 서울	301	31.2	63.8	4.0	1.0
	② 경기	233	42.1	51.1	5.2	1.7
	③ 강원	43	27.9	69.8	2.3	-
	④ 충청	120	37.5	58.3	1.7	2.5
	⑤ 호남	155	36.8	58.1	3.2	1.9
	⑥ 영남	347	37.8	52.2	7.8	2.3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35.0	58.7	4.8	1.5
	② 중·소도시	339	44.0	49.9	3.5	2.7
	③ 읍·면 이하	272	30.1	61.8	7.0	1.1

문항 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성	① 남	633	72.5	27.5	
	② 여	564	81.4	18.6	
연령	① 20대	336	82.7	17.3	
	② 30대	315	71.7	28.3	
	③ 40대	262	74.8	25.2	
	④ 50대 이상	285	76.5	23.5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70.8	29.2	
	② 중졸	164	78.0	22.0	
	③ 고졸	501	77.6	22.4	
	④ 대재 이상	411	76.4	23.6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70.2	29.8	
	② 사무직	203	71.9	28.1	
	③ 판매·서비스직	289	79.2	20.8	
	④ 생산직	101	71.3	28.7	
	⑤ 농어업	86	75.6	24.4	
	⑥ 학생	80	86.3	13.8	
	⑦ 주부	238	79.8	20.2	
	⑧ 기타·무직	77	77.9	22.1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74.6	25.4	
	② 70~119만원	396	77.8	22.2	
	③ 120~199만원	418	75.8	24.2	
	④ 200만원 이상	200	78.0	22.0	
종교	① 불교	341	73.9	26.1	
	② 기독교	258	78.7	21.3	
	③ 천주교	121	73.6	26.4	
	④ 유교	27	88.9	11.1	
	⑤ 무종교	441	77.3	22.7	
	⑥ 기타	10	9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3	82.9	17.1	
	② 중도적	328	75.3	24.7	
	③ 보수적	505	73.1	26.9	
거주지역	① 서울	300	70.7	29.3	
	② 경기	233	79.4	20.6	
	③ 강원	43	86.0	14.0	
	④ 충청	120	78.3	21.7	
	⑤ 호남	155	79.4	20.6	
	⑥ 영남	347	76.9	23.1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75.0	25.0	
	② 중·소도시	339	77.9	22.1	
	③ 읍·면 이하	272	78.7	21.3	

문항 34. 귀하는 금전관계로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구분 변수		빈 도 수 (명)	① 나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 가 없다	② 소송은 정 의와 질서 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 가 없다	③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④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 스럽다	⑤ 기 타	(단위 : %)
성	① 남 ② 여							
연령	① 20대	336	40.8	18.8	32.7	7.1	0.6	
	② 30대	316	28.5	23.7	38.9	8.2	0.6	
	③ 40대	262	31.3	20.2	38.5	8.4	1.5	
	④ 50대 이상	284	28.2	23.6	32.7	14.1	1.4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29.2	21.7	32.5	11.7	5.0	
	② 중졸	164	25.6	23.2	39.0	12.2	-	
	③ 고졸	502	32.3	22.9	35.9	8.8	0.2	
	④ 대재 이상	410	36.6	19.0	34.9	8.3	1.2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3	35.8	14.6	39.8	8.9	0.8	
	② 사무직	203	33.5	20.7	37.9	7.9	-	
	③ 판매·서비스직	291	28.9	25.4	36.1	8.9	0.7	
	④ 생산직	101	29.7	18.8	38.6	11.9	1.0	
	⑤ 농어업	86	33.7	26.7	29.1	5.8	4.7	
	⑥ 학생	80	47.5	15.0	28.8	6.3	2.5	
	⑦ 주부	238	29.0	23.1	37.0	10.5	0.4	
	⑧ 기타·무직	76	35.5	19.7	27.6	15.8	1.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29.9	23.0	33.3	10.3	3.4	
	② 70~119만원	395	31.6	20.5	38.0	9.1	0.8	
	③ 120~199만원	419	32.7	22.9	33.4	10.5	0.5	
	④ 200만원 이상	200	35.5	20.0	37.0	7.0	0.5	
종교	① 불교	342	31.0	21.9	33.9	11.7	1.5	
	② 기독교	257	32.3	17.9	40.9	7.8	1.2	
	③ 천주교	121	26.4	24.0	38.0	11.6	-	
	④ 유교	27	14.8	25.9	37.0	22.2	-	
	⑤ 무종교	441	35.8	22.7	33.6	7.0	0.9	
	⑥ 기타	10	60.0	10.0	20.0	10.0	-	
성향	① 진보적	364	37.1	23.1	33.0	5.8	1.1	
	② 중도적	328	32.0	23.8	34.1	9.8	0.3	
	③ 보수적	505	29.3	19.0	38.6	11.7	1.4	
거주지역	① 서울	300	32.3	22.3	34.0	11.0	0.3	
	② 경기	234	28.6	22.2	39.7	9.0	0.4	
	③ 강원	43	39.5	27.9	23.3	7.0	2.3	
	④ 충청	120	27.5	25.8	36.7	10.0	-	
	⑤ 호남	155	33.5	22.6	33.5	7.7	2.6	
	⑥ 영남	346	35.5	17.6	36.4	9.0	1.4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31.7	22.3	35.8	9.9	0.3	
	② 중·소도시	340	34.7	18.5	37.1	9.1	0.6	
	③ 읍·면 이하	271	31.4	23.6	33.6	8.5	3.0	

문항 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 수 (명)	①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 정신	② 선거관계 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③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	④ 기 타
성	① 남 ② 여	635 563	50.6 49.2	13.4 12.8	35.3 37.3	0.8 0.7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5	56.0 52.2 47.3 42.8	11.6 11.4 12.2 17.5	32.4 36.1 38.9 38.2	- 0.3 1.5 1.4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32.5 43.6 52.4 54.5	20.8 18.2 12.0 10.2	42.5 38.2 35.1 35.0	4.2 - 0.6 0.2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0 101 86 80 238 77	60.5 51.2 49.7 53.5 37.2 53.8 47.9 42.9	11.3 8.9 15.2 13.9 16.3 8.8 13.9 16.9	27.4 39.4 34.5 32.7 41.9 37.5 37.8 40.3	0.8 0.5 0.7 - 4.7 - 0.4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3 396 419 200	39.9 48.5 51.6 57.5	18.5 13.1 13.4 8.5	38.2 37.9 34.8 34.0	3.5 0.5 0.2 -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1 10	49.4 49.6 47.1 66.7 50.6 40.0	13.2 14.7 10.7 7.4 13.2 10.0	36.3 34.9 41.3 25.9 35.8 50.0	1.2 0.8 0.8 - 0.5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5	50.3 53.0 47.5	12.9 12.5 13.7	36.0 33.5 38.2	0.8 0.9 0.6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0 234 43 120 155 347	50.3 52.6 41.9 54.2 44.5 49.9	12.7 9.4 16.3 12.5 15.5 14.7	37.0 37.2 41.9 33.3 38.1 34.3	- 0.9 - - 1.9 1.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7 340 272	50.6 54.1 43.4	13.3 12.4 13.6	36.1 32.6 40.8	- 0.9 2.2

문항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③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단위 : %)	④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3	33.5 26.5	11.5 14.9	40.2 47.6	14.8 11.0	
연령	① 20대		336	14.3	10.1	56.8	18.8	
	② 30대		316	18.7	14.6	52.5	14.2	
	③ 40대		262	32.1	17.2	40.1	10.7	
	④ 50대 이상		285	60.0	11.2	21.8	7.0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68.3	12.5	10.8	8.3	
	② 중졸		165	43.6	19.4	28.5	8.5	
	③ 고졸		502	28.3	12.7	45.6	13.3	
	④ 대재 이상		411	16.1	10.9	57.2	15.8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17.7	11.3	54.0	16.9	
	② 사무직		203	21.7	12.3	50.2	15.8	
	③ 판매·서비스직		290	33.4	16.2	40.3	10.0	
	④ 생산직		101	25.7	13.9	42.6	17.8	
	⑤ 농어업		86	65.1	9.3	18.6	7.0	
	⑥ 학생		80	16.3	6.3	58.8	18.8	
	⑦ 주부		238	29.4	16.0	43.7	10.9	
	⑧ 기타·무직		77	44.2	7.8	36.4	11.7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3	48.6	11.0	28.9	11.6	
	② 70~119만원		396	29.8	15.7	41.7	12.9	
	③ 120~199만원		419	25.3	11.7	48.7	14.3	
	④ 200만원 이상		200	25.0	13.0	50.0	12.0	
종교	① 불교		342	39.8	13.5	33.9	12.9	
	② 기독교		258	24.4	14.3	48.4	12.8	
	③ 천주교		121	22.3	13.2	49.6	14.9	
	④ 유교		27	59.3	7.4	25.9	7.4	
	⑤ 무종교		441	26.5	12.2	48.1	13.2	
	⑥ 기타		10	30.0	20.0	4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4	19.2	14.3	49.2	17.3	
	② 중도적		328	26.2	11.0	51.5	11.3	
	③ 보수적		505	40.8	13.7	34.5	11.1	
거주지역	① 서울		300	20.7	15.7	50.0	13.7	
	② 경기		234	32.1	14.1	42.3	11.5	
	③ 강원		43	32.6	14.0	46.5	7.0	
	④ 충청		120	33.3	10.8	40.0	15.8	
	⑤ 호남		155	37.4	9.7	36.8	16.1	
	⑥ 영남		347	32.6	12.4	43.2	11.8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7	25.0	14.3	48.0	12.6	
	② 중·소도시		340	31.5	11.8	42.1	14.7	
	③ 읍·면 이하		272	39.7	12.1	36.4	11.8	

문항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슬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응답구분 변수		빈도수 (명)	①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허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 만하다	③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④ 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성	① 남 ② 여	635 564	4.6 2.8	31.2 39.5	41.1 43.4	23.1 14.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6	3.9 1.6 4.2 5.6	39.6 36.4 35.1 28.7	39.3 43.4 41.2 45.1	17.3 18.7 19.5 20.6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6.7 4.8 4.2 1.9	24.2 37.0 37.6 34.8	51.7 41.2 36.7 46.2	17.5 17.0 21.5 17.0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7	3.2 3.0 3.8 5.0 7.0 - 2.5 9.1	33.9 37.9 30.9 34.7 25.6 37.5 41.6 35.1	41.1 43.3 41.9 36.6 45.3 41.3 44.5 39.0	21.8 15.8 23.4 23.8 22.1 21.3 11.3 16.9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9 200	8.0 3.0 3.6 1.5	32.8 42.9 30.3 33.5	40.2 37.4 47.5 41.5	19.0 16.7 18.6 23.5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2 10	3.8 4.3 1.7 3.7 3.8 10.0	38.3 40.3 33.9 22.2 31.2 20.0	40.1 39.1 49.6 44.4 43.2 50.0	17.8 16.3 14.9 29.6 21.7 20.0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6	4.9 4.3 2.4	35.4 36.9 34.0	43.4 42.4 41.1	16.2 16.5 22.5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7	3.0 3.8 7.0 5.0 4.5 3.2	32.2 28.6 51.2 36.7 31.0 41.5	45.8 45.3 37.2 39.2 38.7 40.1	18.9 22.2 4.7 19.2 25.8 15.3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2	2.6 4.7 5.1	34.7 37.1 33.8	44.4 40.3 39.7	18.4 17.9 21.3

문항 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성	① 남 ② 여		634 561	2.2 3.2	57.9 56.9	36.8 37.4	3.2 2.5
연령	① 20대		336	1.8	52.7	42.3	3.3
	② 30대		316	1.9	55.7	38.9	3.5
	③ 40대		262	5.0	61.8	30.2	3.1
	④ 50대 이상		282	2.5	60.6	35.5	1.4
학력	① 국졸 이하		119	4.2	51.3	41.2	3.4
	② 중졸		164	3.7	62.2	32.9	1.2
	③ 고졸		501	3.0	57.7	35.7	3.6
	④ 대재 이상		411	1.5	56.9	39.2	2.4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0.8	56.5	41.9	0.8
	② 사무직		203	1.5	59.1	34.0	5.4
	③ 판매·서비스직		290	2.4	58.6	37.6	1.4
	④ 생산직		101	3.0	51.5	40.6	5.0
	⑤ 농어업		86	7.0	51.2	37.2	4.7
	⑥ 학생		80	1.3	52.5	41.3	5.0
	⑦ 주부		236	3.4	60.2	36.0	0.4
	⑧ 기타·무직		76	3.9	60.5	30.3	5.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1	2.9	50.3	39.8	7.0
	② 70~119만원		396	3.3	56.8	38.1	1.8
	③ 120~199만원		419	1.9	58.7	37.0	2.4
	④ 200만원 이상		200	2.0	61.5	34.0	2.5
종교	① 불교		341	3.2	59.2	34.3	3.2
	② 기독교		258	3.1	59.3	35.7	1.9
	③ 천주교		120	3.3	50.0	43.3	3.3
	④ 유교		27	-	81.5	18.5	-
	⑤ 무종교		440	2.0	55.5	39.8	2.7
	⑥ 기타		10	-	50.0	30.0	20.0
성향	① 진보적		363	2.5	53.4	40.8	3.3
	② 중도적		328	3.0	54.9	38.1	4.0
	③ 보수적		504	2.6	61.7	33.9	1.8
거주지역	① 서울		298	0.7	56.4	41.6	1.3
	② 경기		233	2.6	56.2	35.6	5.6
	③ 강원		43	-	46.5	48.8	4.7
	④ 충청		120	4.2	63.3	30.8	1.7
	⑤ 호남		155	7.7	56.1	31.0	5.2
	⑥ 영남		347	2.0	58.8	37.8	1.4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5	1.5	58.3	37.4	2.7
	② 중·소도시		339	2.9	58.4	35.4	3.2
	③ 읍·면 이하		272	4.8	54.0	38.6	2.6

문항 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의 3)번 또는 4)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사용자	② 근로자	③ 정부	④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성	① 남	253	29.6	2.8	15.0	52.6	
	② 여	224	18.3	2.2	17.4	62.1	
연령	① 20대	153	23.5	2.0	17.0	57.5	
	② 30대	134	26.1	0.7	16.4	56.7	
	③ 40대	87	20.7	3.4	11.5	64.4	
	④ 50대 이상	104	26.0	4.8	18.3	51.0	
학력	① 국졸 이하	53	17.0	1.9	22.6	58.5	
	② 중졸	56	21.4	3.6	17.9	57.1	
	③ 고졸	197	28.4	3.0	16.8	51.8	
	④ 대재 이상	171	22.8	1.8	12.9	62.6	
직업	① 전문·관리직	53	13.2	1.9	13.2	71.7	
	② 사무직	80	37.5	1.3	7.5	53.8	
	③ 판매·서비스직	113	27.4	3.5	15.0	54.0	
	④ 생산직	46	17.4	4.3	26.1	52.2	
	⑤ 농어업	36	25.0	2.8	-	18.9	56.8
	⑥ 학생	37	24.3	-	19.4	52.8	
	⑦ 주부	86	18.6	3.5	18.6	59.3	
	⑧ 기타·무직	27	22.2	-	18.5	59.3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80	26.3	3.8	23.8	46.3	
	② 70~119만원	158	25.3	2.5	15.2	57.0	
	③ 120~199만원	165	23.6	0.6	13.3	62.4	
	④ 200만원 이상	73	21.9	5.5	15.1	57.5	
종교	① 불교	128	22.7	4.7	14.8	57.8	
	② 기독교	97	23.7	3.1	14.4	58.8	
	③ 천주교	56	28.6	1.8	14.3	55.4	
	④ 유교	5	20.0	20.0	20.0	40.0	
	⑤ 무종교	187	23.5	0.5	18.2	57.8	
	⑥ 기타	5	60.0	-	20.0	20.0	
성향	① 진보적	160	25.0	1.3	18.1	55.6	
	② 중도적	138	23.9	2.2	13.0	60.9	
	③ 보수적	180	23.9	3.9	16.7	55.6	
거주지역	① 서울	128	20.3	2.3	16.4	60.9	
	② 경기	96	31.3	1.0	14.6	53.1	
	③ 강원	23	21.7	4.3	26.1	47.8	
	④ 충청	39	35.9	2.6	15.4	46.2	
	⑤ 호남	56	19.6	1.8	19.6	58.9	
	⑥ 영남	136	22.1	3.7	14.0	60.3	
지역규모	① 대도시	235	22.6	3.0	15.3	59.1	
	② 중·소도시	131	26.7	3.1	17.6	52.7	
	③ 읍·면 이하	112	25.0	0.9	16.1	58.0	

문항 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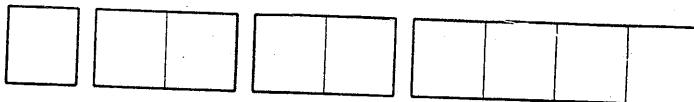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③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④ 기타
성	① 남 ② 여		635 564	69.3 70.2	25.5 23.2	4.3 5.3	0.9 1.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36 316 262 286	76.8 69.3 67.9 63.6	20.8 23.7 24.8 29.0	2.1 5.4 5.7 6.3	0.3 1.6 1.5 1.0
학력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120 165 502 411	58.3 65.5 70.9 73.2	28.3 24.8 24.3 23.4	11.7 7.9 3.8 2.7	1.7 1.8 1.0 0.7
직업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무직		124 203 291 101 86 80 238 77	77.4 70.0 71.5 62.4 67.4 73.8 68.9 61.0	21.8 25.6 22.0 26.7 27.9 23.8 23.1 32.5	0.8 3.9 5.2 9.9 3.5 1.3 5.9 6.5	- 0.5 1.4 1.0 1.2 1.3 2.1 -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② 70~119만원 ③ 120~199만원 ④ 200만원 이상		174 396 419 200	61.5 70.5 72.1 70.5	31.6 23.0 22.7 25.0	4.6 5.3 4.3 4.5	2.3 1.3 1.0 -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종교 ⑥ 기타		342 258 121 27 442 10	64.3 70.2 67.8 77.8 73.1 100.0	29.5 22.9 29.8 7.4 21.5 -	5.3 5.8 1.7 7.4 4.5 -	0.9 1.2 0.8 7.4 0.9 -
성향	① 진보적 ② 중도적 ③ 보수적		364 328 506	72.5 71.6 66.8	22.3 21.3 27.7	3.8 5.8 4.7	1.4 1.2 0.8
거주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호남 ⑥ 영남		301 234 43 120 155 347	71.8 67.5 62.8 69.2 70.3 70.3	24.3 25.2 30.2 24.2 20.0 25.4	3.3 6.0 7.0 6.7 7.1 3.2	0.7 1.3 - - 2.6 1.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이하		588 340 272	70.1 72.4 65.8	25.0 22.1 26.1	3.7 5.0 6.6	1.2 0.6 1.5

문항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단위 : %)

변수		응답구분	빈도수 (명)	① 시집간 딸	②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③ 똑 같다	④ 잘 모르겠다
성	① 남	635	0.2	67.2	29.0	3.6	
	② 여	564	0.2	64.7	29.3	5.9	
연령	① 20대	336	0.3	56.0	39.3	4.5	
	② 30대	316	-	62.7	32.6	4.7	
	③ 40대	262	0.4	67.2	26.3	6.1	
	④ 50대 이상	286	-	80.8	15.7	3.5	
학력	① 국졸 이하	120	-	80.0	16.7	3.3	
	② 중졸	165	-	81.2	10.9	7.9	
	③ 고졸	502	0.2	68.5	26.5	4.8	
	④ 대재 이상	411	0.2	53.3	43.1	3.4	
직업	① 전문·관리직	124	-	56.5	41.1	2.4	
	② 사무직	203	1.0	59.1	37.9	2.0	
	③ 판매·서비스직	291	-	72.2	23.4	4.5	
	④ 생산직	101	-	78.2	16.8	5.0	
	⑤ 농어업	86	-	84.9	9.3	5.8	
	⑥ 학생	80	-	46.3	50.0	3.8	
	⑦ 주부	238	-	65.5	27.3	7.1	
	⑧ 기타·무직	77	-	62.3	29.9	7.8	
가구소득	① 70만원 미만	174	-	74.7	20.1	5.2	
	② 70~119만원	396	-	67.7	26.0	6.3	
	③ 120~199만원	419	0.5	65.2	30.8	3.6	
	④ 200만원 이상	200	-	56.0	40.5	3.5	
종교	① 불교	342	0.3	70.5	23.4	5.8	
	② 기독교	258	0.4	61.6	31.4	6.6	
	③ 천주교	121	-	66.9	28.9	4.1	
	④ 유교	27	-	74.1	22.2	3.7	
	⑤ 무종교	442	-	64.5	32.8	2.7	
	⑥ 기타	10	-	70.0	20.0	10.0	
성향	① 진보적	364	0.5	59.3	35.4	4.7	
	② 중도적	328	-	66.5	28.7	4.9	
	③ 보수적	506	-	70.8	24.7	4.5	
거주지역	① 서울	301	0.3	60.5	33.6	5.6	
	② 경기	234	-	66.2	31.2	2.6	
	③ 강원	43	-	65.1	34.9	-	
	④ 충청	120	-	71.7	24.2	4.2	
	⑤ 호남	155	-	72.3	24.5	3.2	
	⑥ 영남	347	0.3	66.3	26.8	6.6	
지역규모	① 대도시	588	0.2	64.1	31.3	4.4	
	② 중·소도시	340	-	66.2	29.1	4.7	
	③ 읍·면 이하	272	0.4	70.2	24.3	5.1	

## V. 설문지



### 국민법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국민의 법의식수준을 높이고 법령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후원하고 입법정책을 지원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통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택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1994년 4월 1일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장명근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 1 0 - 0 6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 - 0162~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박상철  
선임연구원 최성근  
연구원 배승희

### 설문지 기입요령

1. 이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소의 느낌이나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한 곳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2. 각 문항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타(      )"란에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점선 이하는 통계처리를 위한 공란에 오너 표기하지 마십시오.

법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공평하다
- 2) 민주적이다
- 3) 엄격하다
- 4) 편파적이다
- 5) 권위적이다

2.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가통치를 위하여
-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 3) 사회개혁을 위하여
- 4) 분쟁해결을 위하여

1      2

10	11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 만약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2) 마찬가지일 것이다  
 3) 불편할 것이다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2) 합리적이다  
 3) 물인정하다  
 4) 불쾌하다

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4      5

12	13	14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6.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어머니(내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5) 기타 (자세히 : \_\_\_\_\_)

7.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무조건 들어 준다
- 2) 가능한 한 들어 준다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 4) 무조건 거절한다

.....  
6      7

15	16

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나)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정치참여  
 2) 재산상속  
 3) 취업 및 승진  
 4) 가정에서의 역할  
 5) 기타 (자세히 : \_\_\_\_\_)

9.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2) 치료비를 받는다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  
8-가 8-나 9

17	18	19

법생활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0.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2) 법이 불공평하므로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5) 법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정치인  
 2) 공무원  
 3) 법조인  
 4) 교육자  
 5) 기업인  
 6) 근로자  
 7) 종교인  
 8) 대학생  
 9) 농어민
- .....

10-가 10-나 10-다

20	21	22	23

11.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 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 되고 있지 않다
가) 정치분야				
나) 행정분야				
다) 경제계				
라) 노사관계				
마) 교육계				
바) 교통질서				
사) 행락질서				

12.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친한 사이라서  
 2) 벌칙이 약해서  
 3) 이익이 없어서  
 4) 생활이 바빠서  
 5) 기타 (자세히: \_\_\_\_\_)
- .....

11-가 11-나 11-다 11-라 11-마 11-바 11-사 12-가 12-나

24	25	26	27	28	29	30	31	32

13.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14.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신지요?

-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 3) 약간 불편하다
- 4) 매우 불편하다

15.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당연히 신고한다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13 14 15

33	34	35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시오.)

가)

- 1) 부정부패
- 2) 탈세
- 3) 부동산투기사범
- 4) 환경사범
- 5) 경제사범(매점·매석 등)
- 6) 기타 (\_\_\_\_\_)

나)

- 1) 성폭행
- 2) 조직폭력배
- 3) 마약사범
- 4) 강·절도사범
- 5) 음주운전
- 6) 기타 (\_\_\_\_\_)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
-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6) 기타 (자세히 : \_\_\_\_\_)

17.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 2) 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 4) 학교에서 배워서
  - 5) 사건을 겪고 나서
  - 6)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 .....

16-가 16-나 16-다 17

36	37	38	39

18.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거의 보지 않는다
- 4) 전혀 보지 않는다

19.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한 두 번 있었다
- 3) 전혀 없었다

20. 다음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3)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 4)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 5) 기타 (자세히 : \_\_\_\_\_)

18 19 20-가 20-나

40	41	42	43

2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안본다
- 4)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22.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23.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24.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3)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21      22      23      24

44	45	46	47

25.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 치료비만 받는다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6.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 2) 경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27.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고위공무원
- 2) 변호사
- 3) 판·검사
- 4) 담당 행정공무원
- 5) 경찰관
- 6) 정치인
- 7) 기타 (                  )

.....  
25     26     27

48	49	50

국회 · 행정기관 · 법원 · 검찰 · 경찰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8.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29.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 읽어본 적이 없다

30. 귀하는 면 · 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작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자세히 : \_\_\_\_\_)

28    29    30

51	52	53

31.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 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 되고 있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3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하지 않다

.....  
31-가 31-나 31-다 31-라 31-마 32 33

54	55	56	57	58	59	60

3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2) 소송은 정의와 질서를 찾는 길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
- 3)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4)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 5) 기타 (자세히 : \_\_\_\_\_)

현행법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5.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의식개혁과 높은 준법정신
- 2) 선거관계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 3)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철저한 고발정신
- 4) 기타 (자세히 : \_\_\_\_\_)

36. 현행 민법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2) 2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는 안된다
- 3) 가까운 촌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 4)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조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  
34    35    36

61	62	63

3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2) 혼례허식과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지킬만 하다
- 3)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지키기 어렵다
- 4) 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38.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의 3)번 또는 4)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 1) 사용자
- 2) 근로자
- 3) 정부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37 38-가 38-나

64	65	66

3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 4) 기타 (자세히) \_\_\_\_\_

40.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1) 시집간 딸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3) 똑 같다
- 4) 잘 모르겠다

설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학력은?

- \_\_\_\_\_ 1) 학교에 다닌 적 없다
- \_\_\_\_\_ 2) 국졸 또는 중퇴
- \_\_\_\_\_ 3) 중졸 또는 중퇴
- \_\_\_\_\_ 4) 고졸 또는 중퇴
- \_\_\_\_\_ 5) 전문대졸 또는 4년제 대학중퇴 (재학생포함)
- \_\_\_\_\_ 6) 4년제 대학졸
- \_\_\_\_\_ 7) 대학원 이상

4. 귀하와 귀댁의 한 달 평균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가) 귀 하

- \_\_\_\_\_ 1) 없다
- \_\_\_\_\_ 2) 50 만원 미만
- \_\_\_\_\_ 3) 50 만원 ~ 69 만원
- \_\_\_\_\_ 4) 70 만원 ~ 89 만원
- \_\_\_\_\_ 5) 90 만원 ~ 119 만원
- \_\_\_\_\_ 6) 120 만원 ~ 149 만원
- \_\_\_\_\_ 7) 150 만원 ~ 199 만원
- \_\_\_\_\_ 8) 200 만원 ~ 249 만원
- \_\_\_\_\_ 9) 250 만원 이상

나) 귀 댁

- \_\_\_\_\_ 1) 없다
- \_\_\_\_\_ 2) 50 만원 미만
- \_\_\_\_\_ 3) 50 만원 ~ 69 만원
- \_\_\_\_\_ 4) 70 만원 ~ 89 만원
- \_\_\_\_\_ 5) 90 만원 ~ 119 만원
- \_\_\_\_\_ 6) 120 만원 ~ 149 만원
- \_\_\_\_\_ 7) 150 만원 ~ 199 만원
- \_\_\_\_\_ 8) 200 만원 ~ 249 만원
- \_\_\_\_\_ 9) 250 만원 이상

1      2      3      4-가    4-나

69	70	71	72	73	74

5.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 미혼  
 2) 기혼 (별거·이혼·사별 등 포함)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가톨릭교 (천주교)  
 4) 유교  
 5) 민족종교 (원불교·천도교·증산교·대종교 등)  
 6) 없다  
 7) 기타 (\_\_\_\_\_)

7. 귀하의 주된 성장지는 어느 곳입니까? (만 20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가) 지역

- |                                    |                                    |
|------------------------------------|------------------------------------|
|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 <input type="checkbox"/> 07) 광주·전남 |
| <input type="checkbox"/> 02) 인천·경기 | <input type="checkbox"/> 08) 대구·경북 |
| <input type="checkbox"/> 03) 강원    | <input type="checkbox"/> 09) 부산·경남 |
| <input type="checkbox"/> 04) 충북    | <input type="checkbox"/> 10) 제주    |
| <input type="checkbox"/> 05) 대전·충남 | <input type="checkbox"/> 11) 이북    |
| <input type="checkbox"/> 06) 전북    | <input type="checkbox"/> 12) 해외    |

나) 규모

- 1) 대도시 (특별·직할시)  
 2) 중소도시  
 3) 읍·면 이하
- .....

5      6      7-가      7-나

75	76	77	78	79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 : \_\_\_\_\_)

9. 귀하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 \_\_\_\_\_ 2) 잘 사는 편이다
- \_\_\_\_\_ 3) 중간 정도이다
- \_\_\_\_\_ 4) 못 사는 편이다
- \_\_\_\_\_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0. 귀하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부부가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 \_\_\_\_\_ 2) 가급적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
- \_\_\_\_\_ 3)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귀하는 여성의 흡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괜찮다
- \_\_\_\_\_ 2) 가급적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 \_\_\_\_\_ 3) 안된다

.....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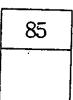
80	81	82	83	84

12. 귀하는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진보적이다
- 2) 중도적이다
- 3) 보수적이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



조사자 : 대학교 학과 학년, 이름 연락처

조사일시 :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조사지역 : 시/도 시/구/군 읍/면/동 리

응답자의 협조도 : 상 - 중 - 하, 방문횟수 :

연구보고 94-3 '94 國民法意識調査研究

1994년 10월 22일 印刷

1994년 10월 27일 發行

發行人 張明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5,000 원

